발 간 등 록 번 호

인사법령

2026. 10.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국가공무원법
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5. 공무원보수규정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8. 공무원 여비 규정
9.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0.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11.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12. 공무원임용령
13. 공무원임용시험령
14. 공무원 징계령
15.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17.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18.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1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20.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1.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23.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2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7.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8. 소청절차규정
2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0. 인사 감사 규정
31. 적극행정 운영규정
32. 전문경력관 규정
3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34. 직무대리규정
35. 직무분석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총괄) 044 - 201 - 8314, 8315
인사혁신처 (복무과 - 복무) 044 - 201 - 8445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임용) 044 - 201 - 8295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채용) 044 - 201 - 8204
인사혁신처 (복무과 - 징계) 044 - 201 - 8434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11., 2020. 1. 29., 2026. 3. 24.>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 12. 11.>
4. 삭제<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2021. 1. 12.>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15. 5. 18.>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2. 11.]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1. 5. 23.,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2010.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8.,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2. 12. 1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 직류(職類) ”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 직무등급 ”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 3. 28.>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 삭제 <2008. 2. 29.>

제8조 삭제 <2008. 2. 29.>

제8조의2 삭제 <2008. 2. 29.>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의4 삭제 <2008. 2. 29.>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③ 삭제<1973. 2. 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08. 3. 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08. 3. 28.>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신설 2021. 6. 8.>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1. 5. 23., 2021. 6. 8.>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1. 5. 23., 2021. 6. 8.>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1.,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5. 5. 18., 2021. 6. 8.>

[제목개정 2008. 3. 28.]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6. 8.>

②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5. 23.]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8. 10. 16.>

1.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
4.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18조(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1. 2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1. 29.>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9.>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29.>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직무 및 인력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

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 3. 28.>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5조 삭제 <1973. 2. 5.>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 3. 28.>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ㆍ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5. 5. 18., 2024. 12. 31.>

[전문개정 2008. 3. 28.]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3. 4.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23. 4. 11.]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5. 5. 18.>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1. 5. 23., 2015. 5. 1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1. 5. 23.]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2., 2012. 12. 11., 2015. 5. 18., 2024.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5. 5. 18.>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3. 22.,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2. 12. 11., 2015. 5. 18.]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2. 12. 11.]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0. 3. 22., 2011. 5. 23., 2012. 10. 22.,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8. 3. 20., 2022. 12. 27., 2024. 12. 31.>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과학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2011. 5. 23.>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4. 1. 7., 2015. 5. 18.>

⑤ 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23.,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24. 12. 31.>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8. 12. 31.>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5(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8. 12. 31.>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②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08. 2. 29.]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0조 삭제 <1981. 4. 20.>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2021. 6. 8.>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

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2026. 4. 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22. 12. 27.>
[본조신설 2014. 1. 7.]

제34조(시험 실시기관)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② 삭제<2004. 3. 11.>
③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④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37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5. 18.>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5. 5. 18.>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18.>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②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개정 2015. 5. 18., 2022. 12. 27.>

1.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2. 10.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5. 18.>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5. 5. 18.>

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작성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3(승진 심사) ①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승진시험 방법) ①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승진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5. 23.>
③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하되,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자, 응시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2023. 4.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신설 2023. 4. 11.>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5. 18., 2023. 4. 11.>

④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3. 4. 11.>

⑤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21. 6. 8., 2023. 4. 11., 2024. 12. 31.>

1.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2.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3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가.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12. 24., 2021. 6. 8., 2023. 4. 11.>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의2 삭제 <1978. 12. 5.>

제43조의3 삭제 <1978. 12. 5.>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장 보수 <개정 2008. 3. 28.>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12. 3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 12. 31.,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장 능률 <개정 2008. 3. 28.>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개정 2015. 12. 24.>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5. 12. 24.]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3조(제안 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4조(상훈 제도)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장 복무 <개정 2008. 3. 28.>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단순위헌, 2018헌마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 3. 28.>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2022. 12. 27., 2024. 12. 31., 2026. 4. 21.>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2. 11.]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2. 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6. 5. 29.>

1. 삭제<1991. 5. 31.>
2. 삭제<1991. 5. 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8. 3. 28.>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5. 5. 18.>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개정 2008. 3. 28.>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2. 11., 2014. 1. 7.>

1. 삭제<2014. 1. 7.>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7.>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개정 2011. 5. 23., 2014. 1. 7.>

⑥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21. 6. 8., 2024. 12. 31., 2026. 6. 2.>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신설 2012. 12. 11., 2020. 1. 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5. 5. 18.>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18. 3. 20., 2021. 6. 8.>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2012. 12. 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2026. 8. 4.>

1. 삭제<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1965. 10. 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 3. 11.>]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② 삭제<2008. 6. 13.>

③ 삭제<1998. 2. 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08. 3. 28.>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2. 10. 22., 2015. 5. 1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에게 징수를 위탁한다.<개정 2021. 6. 8.>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2.,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1. 5. 23.]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 3. 28.>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22., 2018. 10. 16.>

②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2023. 4. 11., 2024. 12. 3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2018. 10. 16.>

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8. 10. 16.>

⑥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8. 10. 16.>

⑦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8. 10. 16.>

⑧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2018. 10. 16.>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1.>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1.>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장 징계 <개정 2008. 3. 28.>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6. 8.>

③ 삭제<2021. 6. 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

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21. 6. 8.>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4.>

[본조신설 2010. 3. 22.]

[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2010. 3. 22.>]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2.>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78조의2에서 이동 <2010. 3. 22.>]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및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6. 8. 4.>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29., 2026. 8. 4.>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및수사기관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1. 29.>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9.>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4.]
[제목개정 2020. 1. 29.]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2015. 12. 24.>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신설 2023. 4. 11.>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2015. 5. 18., 2023. 4. 11.>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8., 2008. 12. 31., 2015. 5. 18., 2021. 6. 8., 2023. 4. 11.>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0. 3. 22.>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9.>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0. 3. 22.]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③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4.>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1., 2026.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 8. 4.>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0. 3. 22.]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장 벌칙 <개정 2008. 3. 28.>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2로 이동 <2014. 1. 14.>]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22., 2014. 1. 14., 2014. 10. 15.>
[전문개정 2008. 3. 28.]
[제84조에서 이동 <2014. 1. 14.>]

제12장 보칙 <개정 2008. 3. 28.>

제85조 삭제 <2022. 12. 27.>

제85조의2(수수료)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부칙 <제1325호,1963. 4.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①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한 소청위원회가 접수하여 미처리중에 있는 소청사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종전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의 채용) 1963년 6월 1일이전에 시행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의 합격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 5. 26. 법1638]

제6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 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5급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특례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원조직법ㆍ감사원법ㆍ교육공무원법ㆍ검찰청법ㆍ원호처설치법 ”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초대소청심사위원의 임기) 초대소청심사위원중 2인은 5년, 2인은 4년 기타 3인은 각각 3년ㆍ2년ㆍ1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제9조 (외무공무원결격사유에 대한 예외)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동 단서에 규정된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1호,1963.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8호,1964. 5.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11호,1965. 10.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부칙 <제2460호,1973.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 직위분류법 " 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 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ㆍ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

부칙 <제3150호,1978.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ㆍ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ㆍ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제3447호,1981. 4.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급	1 급
2 급 갑 류	2 급
2 급 을 류	3 급
3 급 갑 류	4 급
3 급 을 류	5 급
4 급 갑 류	6 급
4 급 을 류	7 급
5 급 갑 류	8 급
5 급 을 류	9 급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에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

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제3518호,1981. 12. 31.>(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 기획조정실장 ” 및 “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 을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부칙 <제3584호,1982.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917호,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017호,1988. 8. 5.>(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 " 을 "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 " 으로 한다.

④ 내지 ⑪생략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 총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 " 를 "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 및 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 " 로 한다.

②생략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84호,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08호,1991. 11. 30.>(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 " 을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 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부칙 <제4763호,1994. 7. 20.>(국회사무처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 국가전문위원 " 을 " 국회수석전문위원 " 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4829호,1994.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제5153호,1996. 8. 8.>(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 ”을 “ 기상청장ㆍ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으로 한다.

③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52호,1997.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5호,1997. 12. 13.>(국회사무처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로 한다.

부칙 <제5527호,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29호,1998. 2. 28.>(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3# 생략

3$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 "을 "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을 " 각부의 차관 "으로, " 행정조정실장 "을 " 국무조정실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 제2항 본문중 " 총무처장관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중 " 총무처 "를 " 행정자치부 "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 총리령 "을 각각 " 행정자치부령 "으로 한다.

부칙 <제5681호,1999. 1. 21.>(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 국가안전기획부 "를 각각 " 국가정보원장 "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09호,1999. 2. 5.>(해난심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 해난심판원 " 을 " 해양안전심판원 " 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부칙 <제5983호,1999. 5.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9호,1999.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2호,2002.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 원장은 " 을 "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 로 하고, 동조제3항중 " 차장은 " 을 "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 로 하며, 동조제4항중 " 기획조정실장은 " 을 "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 로 한다.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 감사위원의 보수 " 를 "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 " 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 ” 를 “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 ” 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 국무위원에, ” 를 “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 로, “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 를 “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로 한다.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 국무위원은 ” 을 “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 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 국제기구ㆍ외국기관ㆍ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 ” 을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 ” 으로 한다.

부칙 <제6788호,2002. 12. 18.>

이 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5호,2003. 2. 4.>(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7187호,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3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 " 를 "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 " 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는 "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 을 " 경우에는 "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제8조중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를 " 중앙인사위원회에 " 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의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하고, 동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은 " 을 " 중앙인사위원회는 " 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제15조중 " 행정자치부장관은 " 을 " 중앙인사위원회는 " 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 을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 " 으로 한다.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 " 행정자치부장관 " 은 " 을 " " 중앙인사위원회 " 는 " 으로 한다.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은 " 을 " 중앙인사위원회는 " 으로 한다.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제8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 를 "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 로 한다.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의 " 를 "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 행정자치부 " 또는 " 행정자치부장관 " 을 인용한 경우에는 " 중앙인사위원회 " 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80호,2005. 1. 27.>(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를 “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7407호,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4호,2005. 7. 28.>(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7796호,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7. 3. 2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 소속 1급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 ” 을 “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 ” 을 “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 을 “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 으로 한다.

제45조중 “ 관리관ㆍ검찰이사관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 1급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 5급 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⑦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 5급 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6급 이상 공무원 ” 을 “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 5급이상의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 5급 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을 “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 3급이상 국가공무원 ” 을 “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 을 “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 2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 ” 을 “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2호중 “ 1급공무원 ” 을 “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2!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 를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 로 한다.
2#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 공무원 ” 을 각각 “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 공무원 ” 을 각각 “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2$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 1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각각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 2급 이상 국가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 2급이상의 공무원 ” 을 “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을 “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2(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 ” 을 “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를 “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로 한다.

3@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 근무한 경력 ” 을 “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3#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 ” 을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 ” 을 “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 1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4호중 “ 2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 ” 을 “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 5급 이상의 공무원 ” 을 각각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 4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 ” 을 “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을 “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 ” 을 “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 직급 ” 을 “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 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 5급 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 를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 로 한다.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5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중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을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3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각각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을 “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부칙 <제8069호,2006. 12. 2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8330호,2007.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3호,2007. 5. 11.>(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2조제5항 " 을 "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 " 으로 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857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 " 를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8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15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 " 중앙인사위원회는 " " 을 " " 행정안전부장관은 " " 으로 한다.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 로 한다.

⑥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 제7조제4항 " 을 " 제28조의6제3항 "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 제7조제4항 " 을 " 제28조의6제3항 "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 를 “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 ” 를 “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 로 한다.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 를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 로, “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의 ” 를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 로 한다.

⑧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 를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 로 한다.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 중앙인사위원회 ” 를 인용한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 ”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직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8996호,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심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가결정은 이 법에 따른 임시결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제9113호,2008. 6. 13.>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9296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3항 및 제4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19호,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8호,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에 대한 특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상, 2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는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부칙 <제10342호,2010.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5호,2011. 3. 29.>(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99호,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3제2항, 제43조,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하고, 제28조,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의 기능10급 공무원은 기능9급 공무원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분야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복수국적자는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임용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8조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④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단서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92호,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89호,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30호,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비 변상 등을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징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조(적격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평정대상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평정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 중 "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단서 중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로 한다.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 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 을 “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 을 각각 “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 개방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도 ” 를 “ 개방형 임용제도 ” 로 한다.
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⑪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로 한다.
⑫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을 “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으로, “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직국가공무원 ” 으로, “ 일반직국가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직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 으로 한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 기능직 국가공무원 ” 을 “ 일반직 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을 “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1(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 를 “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 로 한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2항 중 “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 을 “ 6급 이하 공무원 ” 으로 한다.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단서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을 “ 공무원 ”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로 한다.

2% 지속가능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로 한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을 “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1조 중 “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로 한다.

2&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 대통령실 ”을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5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ㆍ제2항 중 “ 행정안전부 ”를 각각 “ 안전행정부 ”로 한다.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2호,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전에 시행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2202호,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 강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새로 제70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34호,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2호,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6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 중 “ 안전행정부 ”를 각각 “ 인사혁신처 ”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6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88호,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4, 제28조제2항제11호, 제69조제1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부가금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견습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 중인 사람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습근무 중인 사람으

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호 중 " 견습근무 "를 " 수습근무 "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 견습으로 "를 " 수습으로 "로 한다.

부칙 <제13618호,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 제71조제2항제7호, 제72조제10호 및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된 사람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징수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83호,2016. 5. 29.>(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 징병검사 "를 " 병역판정검사 "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2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2호,2018. 3. 20.>(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한다.

제7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⑦부터1& 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857호,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05호,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26조의6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재심사 등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재심사 사건은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칙 <제17893호,2021. 1. 12.>(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894호,2021. 1. 12.>(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237호,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4항ㆍ제5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제7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소청사건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수 및 실비 변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308호,2021. 7. 2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제19147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28조제2항제11호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228호,2023. 3. 4.>(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 국가보훈처장 ”을 “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한다.

4^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341호,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17조의3, 제26조의2, 제32조의4제1항, 제33조제3호ㆍ제4호,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또는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0627호,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

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 ’ 를 포함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 ’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 ’ 를 포함한다]

제3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사ㆍ수사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대하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임용된 사람(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 기술직 ” 을 “ 과학기술직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 기술직공무원 ” 을 각각 “ 과학기술직공무원 ” 으로 한다.

부칙 <제21491호,2026. 3. 2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 검사 ” 를 “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74호,2026. 4.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같은 조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53호,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857호,2026. 8. 4.>(형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 9. 29.>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 ”조사 및 수사기관“ ”을 “ ”조사및수사기관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

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⑭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488호, 2026. 6. 3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 - 201 - 8351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6.>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09. 4. 6.>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25.>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5. 7. 13.>
④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개정 2013. 10. 16., 2014. 11. 19., 2015. 7. 13., 2023. 8. 30.>

⑤ 삭제<2026. 6. 30.>

⑥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5. 7. 13.>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6.>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0. 16., 2013. 12. 4., 2014. 11. 19.>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1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

형 직위 선발시험 ”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1., 2014. 11. 19., 2015. 7. 13., 2023. 1. 3.>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8. 30.>

1.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7. 1., 2015. 7. 13., 2023. 8. 30.>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7. 1., 2014. 12. 16., 2015. 7.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지원 요건,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7. 1., 2014. 11. 19., 2015. 7. 13., 2024. 12. 31.>

[전문개정 2009. 4. 6.]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 선발시험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는 시험
3. 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9. 8.>

1.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20. 9. 8.>

④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0. 9. 8.>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0. 9. 8.>

⑥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 9. 8.>

⑦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7. 13., 2020. 9.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5. 7. 13., 2020. 9. 8.>

[전문개정 2014. 7. 1.]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는 제외한다)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2020. 9. 8.>

② 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 없이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개정 2019. 9. 10., 2020. 9. 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2019. 9. 10.>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9. 9. 10.>

[전문개정 2009. 4. 6.]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개정 2015. 7. 13., 2023. 8. 30.>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 7. 13., 2020. 9. 8.,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4.]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7. 1., 2014. 11. 19., 2020. 9.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5. 7. 13., 2019. 9. 10., 2023. 8. 30.>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2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에 도달하였을 것
3.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였을 것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같은 개방형 직위의 상위 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0. 9. 8.>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았을 것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9. 8.>

[전문개정 2009. 4. 6.]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춘 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4.>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4.>

⑤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이나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

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1. 3.>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6.]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09. 4. 6.>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6.>

③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담당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3. 1. 3.>

④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 경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실무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6. 6. 30.>

⑤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6., 2014. 11. 19., 2023. 1. 3., 2026. 6. 30.>

⑥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1. 3., 2026. 6. 30.>

[전문개정 2009. 4. 6.]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장급직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위(이하 "과장급직위등"이라 한다)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6., 2023. 1. 3., 2026. 6. 30.>

③ 소속 장관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0. 16., 2014. 11. 19., 2019. 9. 10.>

1.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
3. 인사 운영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 공모를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 4. 6.]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7. 1. 10., 2023. 1. 3.>

1. 경력직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승진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연구관 또는 지도관
4.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등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6., 2013. 12. 4., 2023. 1. 3., 2026. 6. 30.>

1.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2.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의 바로 하급 일반직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승진 요건을 갖춘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업무 성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기관 외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 10. 1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6., 2014. 12. 16.>

⑤ 제4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10. 16.>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10. 16.>

[전문개정 2009. 4. 6.]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2023. 1. 3., 2026. 6. 30.>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10. 16., 2023. 1. 3.>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선발시험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등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09. 4. 6.]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임용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하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 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3. 1. 3.>

③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15조제2항제2호의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3. 1. 3.>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 3.>

[전문개정 2009. 4. 6.]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3. 12. 4.>

② 공모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4. 6.]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이 끝난 후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모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3., 2026. 6. 30.>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3., 2026. 6. 30.>

[전문개정 2009. 4. 6.]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16., 2014. 11. 19.>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해야 한다.<개정 2019. 9. 10.>

1. 소속 장관이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4장 공개모집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 2014. 11. 19.>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의 공고 및 연기ㆍ변경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③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한다.<개정 2014. 7. 1., 2020. 9. 8.>

1.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그 기관 외부의 응시자 수가 적은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1. 3., 2026. 6. 30.>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소속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공고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2014. 11. 19., 2024. 12. 31.>

⑥ 소속 장관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의 공고 기한을 달리하거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⑦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16., 2014. 7. 1., 2014. 11. 19., 2024. 12. 31.>

[전문개정 2009. 4. 6.]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30.>

[전문개정 2009. 4. 6.]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①소속 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3. 10. 16.,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5장 보칙 <개정 2009. 4. 6.>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1., 2014. 11. 19., 2026. 6. 30.>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4. 7. 1.]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4. 12. 16.]

부칙 <제19514호,2006. 6. 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방형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원소속복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내지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개방형임용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40호,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로의 임용 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공무원의 공모직위 선발시험 응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공모직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13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임용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ㆍ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또는 심사를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95호,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소속기관 복귀에 관한 특례) 고위공무원단 상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경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소속장관은 그 외무공무원을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까지 생략

4)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 위원회 "를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09호,2009.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②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부칙 <제21717호,2009. 9. 8.>(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2680호,2011. 2. 25.>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7호,2011. 11. 1.>(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 " 을 "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특별채용 "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등 "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 특별채용 "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등 " 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4항제2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 행정안전부 " 를 각각 " 안전행정부 " 로 한다.

⑤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794호,201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방형 직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5항과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시험을 공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94호,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37호,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선발시험을 공고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6조 및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4항제2호,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4호, 제21조제1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1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61호,2014. 1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01호,2015.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선발시험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개방형 직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0076호,2019.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력개방형 직위 임용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을 위한 선발시험 공고를 한 경력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09호,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같은 개방형 직위 상위 직급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실시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시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직위에 대해서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72호,2021. 11. 30.>(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3203호,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모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모 자격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응모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모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응모 자격 및 임용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제2호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91호,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개방형 직위의 지정에 관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개모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공개모집 여부 및 선발시험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71호,202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88호,2026. 6. 3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044 - 201 - 8327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2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2. 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4. 6.>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3.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

인 사람

7.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 제1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09. 2. 27.]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9. 8., 2010. 6. 15., 2017. 4. 18.>

1. 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3. 다음 각 목의 전보

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로의 전보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2. 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27.]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

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8. 3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1.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2. 27.]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30., 2012. 3. 30., 2013. 12. 11., 2016. 1. 7., 2017. 1. 10., 2020. 12. 29., 2022. 12. 27., 2023. 8. 30.>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신설 2011. 8. 30., 2016. 1. 7., 2024. 2. 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기간
2. 법 제28조의5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기간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기간

[전문개정 2009. 2. 27.]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0.>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2. 12. 27., 2023. 8. 30.>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삭제<2023. 8. 30.>

⑤ 삭제<2023. 8. 30.>

[전문개정 2009. 2. 27.]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7. 1. 10., 2017. 7. 26., 2023. 8. 30., 2024. 6. 4.>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비서관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4.>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 보통 ”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27.]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2. 3., 2020. 12. 29., 2023. 6. 27.>

1.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력

3.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4.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5.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4급 이상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 이 경우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7. 그 밖에 기관 간 전보, 전입ㆍ전출 등을 통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9. 10. 22., 2020. 12. 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기 위하여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2.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일한 전문직위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기관의 특성 및 역량평가 응시대상자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12. 24.]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 3. 12., 2010. 6. 15., 2011. 8. 30., 2013. 12. 11., 2016. 1. 7., 2019. 10. 22.>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시험 요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 중인 사람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하되, 제7조에 따른 고위

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위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4.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령 별표 4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목개정 2013. 12. 11.]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본조신설 2013. 12. 11.]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9. 10. 22.>

1. 제13조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3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3.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나.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다.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라.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마.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1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5. 제13조제5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최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8. 30.]

[제목개정 2013. 12. 11., 2016. 1. 7.]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1. 8. 30.]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8. 30.]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을 위한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험 결과의 통보 및 자체 점검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30.]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속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신속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 비용의 과다(過多)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2. 11.]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그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2. 29.>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4. 2. 29.>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2. 29.>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개정 2024. 2. 29.>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신설 2017. 4. 18., 2024. 2. 29.>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2017. 4. 18., 2024. 2.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27.]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27.]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27.]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0.>
[전문개정 2009. 2. 27.]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8. 30., 2013. 12. 11., 2016. 1. 7., 2017. 4. 18., 2017. 7. 26.>

1.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나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경력직 고위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같은 직위에 연임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4. 비서관, 정책보좌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다시 제13조제5호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6.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지방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11., 2016. 1. 7.>

1.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제15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3.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2. 27.]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0., 2013. 3. 23., 2014. 11. 19.>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전문개정 2009. 2. 27.]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27.]

[제목개정 2011. 8. 30.]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개정 2009. 2. 27.>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9. 10. 22., 2022. 12. 27., 2023. 8. 30., 2026. 9. 29.>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4항제4호(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27.]

제19조 삭제 <2022. 12. 27.>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성과평가규정 ”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신설 2016. 1. 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

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09. 2. 27.]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삭제<2023. 8. 30.>
[본조신설 2016. 1. 7.]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을 제5장의 적격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임해서는 아니 되며,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에서 강임된 사람(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날짜 순으로 하되, 강임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날짜의 순서에 따른다.
③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5장 적격심사

제22조 삭제 <2008. 2. 29.>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27.]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4. 11. 19., 2016. 1. 7.>

②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신설 2023. 8. 30.>

[전문개정 2009. 2. 27.]

제25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 7.>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6. 1. 7., 2023. 8. 30.>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4. 4. 1.]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 1. 7., 2023. 8. 30.>

1.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2.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7., 2023. 8. 30.>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8. 30., 2026. 9. 29.>

④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2023. 8. 30.>

[전문개정 2009. 2. 27.]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12. 11.]

부칙 <제19513호,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또는 역량평가를 이수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이 이미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재외공관주재관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역량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제3조 (실ㆍ국장급 공무원 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 을 “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②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 5급이상의 공무원 ” 을 “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 5급이상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④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본문중 “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계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된다.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을 “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각각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 3급 또는 4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 ” 을 “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⑧경찰공무원교육훈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을 “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⑨고도(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 을 “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⑩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2호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각각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 3급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⑪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⑫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 산림청 소속 2급ㆍ3급공무원 ” 을 “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⑬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 직급 ” 을 “ 직급 또는 직위 ” 로 한다.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 직급 ” 을 “ 직급 또는 직위 ” 로 한다.
제13조의2 후단중 “ 계급 ” 을 “ 계급 또는 직위 ” 로 한다.
⑮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1^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 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 2급은 10년 이상 ” 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란을 삭제한다.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하고, 동항 단서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1(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노동부소속 1급공무원 ” 을 “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을 “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을 “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각각 “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 을 “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 3급 이상 ” 을 “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 ” 을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공무원 ” 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 ” 을 “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 ” 을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및 기획ㆍ예산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획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3조의2제3항중 “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 ” 을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 ” 을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 1급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 과학기술혁신본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 중소기업청 소속 1급 공무원 ” 를 “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 ” 을 “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과학기술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ㆍ제1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중 “ 소속 1급공무원 ” 을 “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 별정직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 ” 을 “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을 “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관세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 광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 산업자원부 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 ” 을 “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 후단중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을 각각 “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을 “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3#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 공무원이었던 자 ” 를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의2제4호중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 을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3%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 6급이상의 공무원 ” 을 각각 “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3&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1호중 “ 경찰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을 각각 “ 경찰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3*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 3급이상 공무원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3(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 1급상당 비서관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으로 한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을 “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로 한다.

4!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 2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을 “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4@ 국가보훈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중 “ 국가보훈처 소속 3급 이상인 공무원 ”을 “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제12제1항제1호중 “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을 “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으로 한다.

4#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임용예정계급 2급의 일반직공무원ㆍ지방공무원란 “ 2급 ”을 “ 2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하고, 동표의 임용예정계급 3급의 일반직공무원ㆍ지방공무원란 “ 3급 ”을 “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계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력 및 당해 공무원이 재직한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4$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을 “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 4급이상 공무원 ”을 “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4%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 과학기술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을 “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 소속 2급ㆍ3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ㆍ3급 상당 공무원 ” 을 “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 ” 을 “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9조중 “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을 “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 5급 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4(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 보건복지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3호중 “ 2급 내지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1>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호중 “ 3급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2>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 국방부소속 1급공무원ㆍ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 을 “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 으로, “ 과학기술부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 을 “ 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을 한다.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을 “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1급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중 “ 3급이상 공무원 ” 을 각각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7>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 1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8>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 5급이상의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7급이상의 공무원 ” 을 “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 3급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 장관급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 ” 을 “ 장관급장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을 한다.

<60>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1>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 2급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2>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일반직 3급 내지 7급 공무원 ” 을 “ 3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3>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각각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65>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66>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 ” 을 “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7>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8>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중 “ 중소기업청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을 “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기관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 ” 을 “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중 “ 여성가족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4조의6제3항중 “ 노동부 소속의 4급 ” 을 “ 노동부의 4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71>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72>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 을 “ 그 기관의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 7급이상 공무원 ” 을 “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74>농산종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 농림부소속 2급공무원 ” 을 “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75>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 농촌진흥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76>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77>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중 “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78>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을 “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79>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를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 으로 한다.
<80>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7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8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82>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 건설교통부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83>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 을 “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85>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8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 3급ㆍ4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을 “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89>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1. 보수기술자, 2. 실측ㆍ설계기술자 및 3. 조경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술자의 면제대상자란 가목중 “ 「공무원임용령」 ” 을 각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임용령」 ” 으로 한다.

<90>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 관계공무원 ” 을 “ 3급 관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관계공무원 ” 으로 한다.

<91>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 조달청소속 4급이상 공무원 ” 을 “ 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92>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9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 3급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9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 을 “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가목중 “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을 “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하고, “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 ” 을 “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하며, 동호 나목중 “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 을 “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9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96>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2항중 “ 특허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97>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 산업자원부 소속 1급 공무원 ” 을 “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98>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 3급 이상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 ” 을 “ 법무부, 검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99>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 ” 을 “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 공무원 ” 을 “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10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 1급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1호중 “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01>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 특허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02>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1항중 “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 ” 을 “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으로 한다.

<10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을 “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104>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2조중 “ 보건복지부소속 3급 내지 4급공무원 ” 을 “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 1급공무원 ” 을 “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 1급공무원 ” 을 “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 ” 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 3급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0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상당 상임위원”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3년이상”을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로 한다.

<107>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8>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09>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0>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중”을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13>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114>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 건설교통부소속 3급ㆍ4급 ” 을 “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 법제처의 3급ㆍ4급 ” 을 “ 법제처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15>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9조의3제2항중 “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1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17>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 3급이상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18>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 “ 산림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을 “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19>산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다목중 “ 5년이상 ” 을 “ 5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다목중 “ 3년이상 ” 을 “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0>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을 “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 중소기업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나목、제6조제1항 단서、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각각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3항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5>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 국방부소속의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 ” 을 “ 국방부의 3급、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을 “ 3급、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6>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 법제처소속 4급이상 공무원 ” 을 “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7>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 을 “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8>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5급이상의 공무원 ” 을 “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29>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호중 “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을 “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각각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각각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 1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32>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 소방방재청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 ” 을 “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4항제4호중 “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을 “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3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 소방방재청소속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을 “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 일반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 국가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135>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 법제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36>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 을 “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38>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2급 공무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39>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 3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0>수로업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1>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시ㆍ도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 ” 을 “ 시ㆍ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 3급 또는 4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2>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중 “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 소속 1급공무원 ” 을 “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4>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중 “ 4급 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1급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7>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중 “ 4급이상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8>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 농림부 소속 3급 공무원 ” 을 “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49>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각각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50>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 공무원 ” 을 “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151>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 국무조정실 소속의 1급 공무원 ” 을 “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52>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을 “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153>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 3급이상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54>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55>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 3급 이상 ” 을 “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56>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을 “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 4급 이상 국가공무원 ” 을 “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58>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 1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59>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 기획예산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0>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각각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2>의료기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 4급이상의 공무원 ” 을 “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기획예산처 소속 2급ㆍ3급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4>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1호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6>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 ” 을 “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 ” 을 “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2호중 “ 2급 내지 4급 공무원 ” 을 “ 2급 내지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7>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을 “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8>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을 “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69>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중 “그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7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6>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178>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도에 소속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시、도에 소속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9>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소속의 1급공무원(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8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2>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3호 가목 및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가목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각각 “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184>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 산림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85>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86>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 1급 또는 2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을 한다.
<187>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중 “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을 “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188>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 1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89>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19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중 “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을 각각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19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 정부개혁실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공공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 1급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94>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 을 “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95>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 국가공무원 ” 을 각각 “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 3급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9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중 “ 2、3급의 공무원 ” 을 각각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9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중 “ 중소기업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98>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상당의 국장급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199>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제3호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4호중 “ 3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4호중 “ 3급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0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 “ 4급이상의 공무원 ” 을 “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01>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을 “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로 한다.

<202>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5항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각각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03>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 동일계급의 직원중에서 ” 를 “ 동일계급의 직원(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 로 한다.

<20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노동부소속 1급 공무원 ” 을 “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 ” 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05>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06>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 공정거래위원회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중 “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각각 “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07>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08>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09>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 별정직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210>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ㆍ제14조제1호 및 제15조중 “ 공무원 ” 을 각각 “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로 한다.

제18조중 “ 직급 ” 을 “ 직위 ” 로 한다.

<211>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 그 소속 1급공무원 ” 을 “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 그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12>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13>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 통계청소속의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을 “ 통계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14>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 1급 또는 2급 국가공무원(1급 또는 2급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215>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 국방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 을 “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 을 “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217>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 산업자원부소속 1급공무원 ” 을 “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18>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 3급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19>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중 “ 5급 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20>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중 “ 국무조정실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 을 “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221>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국무조정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을 “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22>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 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을 “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22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중 “ 2급 이상의 공무원 ” 을 “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24>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또는 2급국가공무원(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 을 “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225>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26>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 을 “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27>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 공무원 ” 을 “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228>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 1급 또는 1급 상당이상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229>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 4급이상 공무원 ” 을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30>항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 2급 또는 3급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31>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2>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9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5>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6>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19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3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 소속 2ㆍ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당해 기관 소속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해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을 “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240>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가목중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 ” 을 “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 2급ㆍ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 ” 을 “ 2급ㆍ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조제2호 다목중 “ 1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 ” 을 “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 2급ㆍ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 ” 을 “ 2급ㆍ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 공무원 ” 을 “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부칙 <제19603호,2006. 6. 30.>(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및 제18조제4호중 “ 제8조 ” 를 각각 “ 제17조 ” 로 한다.

부칙 <제19885호,2007. 2. 12.>(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②생략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339호,2007. 10. 23.>

이 영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8호,2007. 11. 12.>(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부칙 <제20711호,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가 행한 협의ㆍ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 협의ㆍ심사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부칙 <제20787호,2008. 5. 21.>(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성과계약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부칙 <제20894호,200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42호,2009. 2. 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44호,2009. 3. 12.>(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후단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1409호,2009. 4. 6.>(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717호,2009. 9. 8.>(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2206호,201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07호,2011.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91호,2012. 3. 3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및 제27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행정안전부 ”를 “ 안전행정부 ”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 행정안전부 소속 ”을 “ 안전행정부 소속 ”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 외교통상부 ”를 “ 외교부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⑩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23호,2013. 12. 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17호,20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적용 제외에 관한 특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3급 공무원
2. 이 영 시행일 전에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4급 공무원
3. 4급 임용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청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5285호,2014. 4. 1.>
이 영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4조의5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6조제2항ㆍ제5항 및 제27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0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844호,2015. 12. 3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71호,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격심사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따른 적격심사의 의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②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1. 이 영 시행 당시 3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2년 미만 재직한 사람

2.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부칙 <제26944호,2016. 2. 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 「공무원 교육훈련법 ”」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으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 연구관ㆍ지도관 ”을 “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4급 이상 공무원 ”을 “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996호,2017.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 대통령경호실 ”을 “ 대통령경호처 ”로 한다.

<35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20호,2017. 7. 26.>(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 정책보좌관 ”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 장관정책보좌관 ”을 각각 “ 정책보좌관 ”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155호,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를 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36호,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57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실시하거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 제2호가목 ”을 “ 제2호 ”로 한다.

부칙 <제33575호,2023. 6. 27.>(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 전단 중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를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 ”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3690호,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실시하거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21조에 따라 선발시험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5호,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보궐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557호,2024. 6.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1.19.>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table>
<tr><td rowspan="3">인적사항</td><td rowspan="2">성명</td><td>한글</td><td></td><td>소 속</td><td></td><td>직 위</td><td></td></tr>
<tr><td>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d>재 직
기 간</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적격심사사유</td><td colspan="7"></td></tr>
<tr><td>적격심사요구의견</td><td colspan="7"></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7">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2. 무보직(無補職) 재직기간 관련 자료</td></tr>
<tr><td></td><td colspan="7">위와 같이 적격심사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적격심사 의결 요구권자)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2.27>

적격심사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의결주문			
의결이유			

년 월 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소청 고충처리팀) 044 - 201 - 8658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 성비위신고업무) 044 - 201 - 850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2020. 12. 31.>
[전문개정 2019. 4. 16.]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4.>
1. 고충상담: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
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피해자의 동의
③ 임용권자등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2.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본조신설 2019. 4. 16.]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1983. 5. 19., 1984. 12. 31., 1985. 12. 31., 2007. 9. 6., 2013. 11. 20., 2019. 4. 16., 2022. 1. 25.>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5. 15.>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신설 2018. 5. 15.>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 청구인 ”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신설 2018. 5. 15.>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⑧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이라 함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

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2007. 9. 6., 2007. 9. 20., 2008. 12. 31., 2009. 11.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30., 2020. 12. 31.>

②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2. 1. 25.>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④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⑦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⑧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본조신설 1983. 5. 19.]

[제목개정 2018. 5. 15.]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0. 3. 10., 2021. 10. 14.>

②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2. 1. 25.>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④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1.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⑦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5. 15., 2022. 1. 25.>

⑧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본조신설 1983. 5. 19.]

[제목개정 2018. 5. 15.]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②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 25.>

③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 1. 25.>

④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1. 25.>

1.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대학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

람은 제외한다)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⑥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1. 25.>

⑦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전문개정 2018. 5. 15.]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 5. 15.]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수석전문관ㆍ전문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ㆍ부전문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신설 1984. 12. 31., 1985. 12. 31., 2006. 6. 12., 2007. 9. 6., 2013. 11. 20., 2017. 1. 10., 2019. 4. 16., 2022. 1. 25., 2026. 6. 30.>

②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③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④「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7. 9. 6.>
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신설 2019. 4. 16.>
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본조신설 1983. 5. 19.]

제3조의7(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② 제1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7항,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 1. 25.>
[본조신설 2019. 4. 16.]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5. 19., 2006. 6. 12., 2019. 4. 16.>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1. 1. 5.>

제5조(보완요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완 요구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완 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고충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4. 12. 24.]

제6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2. 1. 25.>

②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답변 내용을 보충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2024. 12. 24.>

⑤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신설 2022. 1. 25.>

⑦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5., 2022. 1. 25.>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⑧고충심사위원회는 제7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2. 1.

25.>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신설 2024. 12. 24.>

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4. 12. 24.>

[전문개정 2018. 5. 15.]

제9조(증거제출권) ①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참고인의 소환
2. 참고인에 대한 질문
3.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한 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4.]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제3조제7항 전단, 제3조의2제7항 전단, 제3조의3제7항 전단 또는 제3조의4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19. 4.

16., 2022. 1. 25.>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신설 2019. 4. 16.>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4. 16.>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신설 2019. 4. 16., 2022. 1. 25.>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 1. 25.>

[전문개정 2018. 5. 15.]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9. 4. 16.>

④ 인사혁신처장 또는 설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관의 장은 공개 내용에 다른 기관의 이행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 4. 16.>

⑤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4.>

⑥ 제5항에 따른 통보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4. 12. 24.>

⑦ 청구인은 제6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성폭력범죄,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4. 12. 24.>

[전문개정 2018. 5. 15.]

제13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3. 5. 19., 2018. 5. 15., 2022. 1. 25.>

[제목개정 2018. 5. 15.]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 6. 12., 2007. 9. 6., 2013. 11. 20.>

[본조신설 1983. 5. 19.]

제14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5. 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②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4. 16.>]

제15조(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임용권자등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실시 및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실시 요구를 했음에도 임용권자등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직접 조사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성희롱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이하 "피신고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피해자등, 피신고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전문가의 자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나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실시 확인 과정 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인적사항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피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근무 장소의 변경
2. 휴가 사용 권고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조치

⑦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⑧ 인사혁신처장은 조사결과 공직 내 성폭력범죄·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등에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임용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같은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고충처리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고 고충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8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6.>]

부칙 <제10344호,1981. 6.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1호,1983. 5.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604호,1984. 12. 31.>(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 6급이하공무원 ” 을 “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 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생략

부칙 <제11837호,1985. 12. 31.>(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내지 <148>생략

부칙 <제15135호,1996. 8. 8.>(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중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각각 삭제하고,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중 “ 교육부차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으로,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84>내지 <152>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 직급 ” 을 “ 직급 또는 직위 ” 로 한다.

제13조의2 후단중 “ 계급 ” 을 “ 계급 또는 직위 ” 로 한다.

⑮내지 <241>생략

부칙 <제20250호,2007.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4호,2007. 9. 20.>(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 경찰종합학교 ” 를 “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 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 ” 을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842호,2009. 11. 2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경찰종합학교 ” 를 “ 경찰교육원 ” 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을 “ 교육부차관 ” 으로,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 을 “ 교육부 소속 공무원 ” 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⑭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52호,2013. 11. 2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을 “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기능직공무원 ” 을 “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⑦부터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 으로 한다.

<1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연구관ㆍ지도관 ” 을 “ 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35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60호,2018. 3. 3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경찰교육원 "을 " 경찰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891호,2018.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심사 청구된 고충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6호,2019. 4. 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51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경찰공무원법」 제25조 ”를 “ 「경찰공무원법」 제31조 ”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 ”을 “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43호,2021. 10. 1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을 “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371호,2022. 1.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0호,2024.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89호,2026. 6. 3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전문직공무원 ”을 “ 수석전문관ㆍ전문관 ”으로, “ 지도사 ”를 “ 지도사ㆍ부전문관 ”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 - 201 - 8396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9., 2015. 11. 20., 2016. 11. 29., 2026. 9. 29.>

[전문개정 2009. 3. 31.]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09. 3. 31.]

제3조의3 삭제 <2006. 6. 12.>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보수 ” 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 봉급 ” 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 수당 ” 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 승급 ” 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 승격 ” 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 보수의 일할계산 ” 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 연봉 ” 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8. “ 연봉월액 ” 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 연봉의 일할계산 ” 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2.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4조제4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5.]

제2장 봉급 <개정 2009. 3. 31.>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31.]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② 삭제<1998. 12. 31.>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개정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8. 1. 18., 2024. 1. 5., 2025. 1.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신설 2025. 1. 3., 2026. 7. 30.>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④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25. 1. 3.>

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25. 1. 3.>

⑥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개정 2013. 12. 11., 2025. 1. 3.>

[전문개정 2009. 3. 31.]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1. 1. 10.>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정직, 강등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개정 2011. 1. 10., 2026. 1. 2.>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9조의2 삭제 <1990. 1. 15.>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2. 1. 6.]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7급 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4. 7. 16.,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09. 3. 31.>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09. 3. 31., 2013. 3. 23., 2014. 11. 19.>
④ 삭제<1990. 1. 1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개정 2009. 3. 31.>
⑥ 삭제<1990. 1. 15.>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

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2014. 7. 16.]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14. 7. 16.>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④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삭제<2014. 1. 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 4. 30., 2014. 1. 8., 2015. 11. 18., 2017. 1. 6., 2018. 1. 18., 2019. 11. 5.>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2020. 1. 7.>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 7. 4.>

[전문개정 2009. 3. 31.]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1. 1. 10., 2011. 7. 4.,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4., 2017. 1. 6., 2025. 1. 3., 2026. 1. 2.>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6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전문개정 2009. 3. 31.]

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 8., 2017. 1. 6.>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7. 16., 2024. 1. 5.>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1. 5.>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①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7. 1. 6.>

② 삭제<1993. 12. 31.>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3. 31., 2017. 1. 6.>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개정 2009. 3. 31.>

⑤ 삭제<2017. 1. 6.>

[제목개정 2017. 1. 6.]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장 보수지급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 원천징수등 " 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1. 9., 2016. 1. 8., 2019. 1. 8., 2020. 3. 10.>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09. 12. 7.]

제20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2조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6. 1. 8.>

[전문개정 2009. 3. 31.]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4. 1. 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11. 8. 29.>

③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사망으로 제적되거나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 1. 7., 2011. 8.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되거나 전역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또는 전역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0. 1. 7., 2011. 8. 29.>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4. 1. 8.]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4.>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16. 6. 24.>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5. 1. 3.>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 8.>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8.>
[전문개정 2009. 3. 31.]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6.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신설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8만10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만2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위ㆍ중위ㆍ중사 및 하사의 경우 최종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 7., 2018. 1. 18., 2019. 1. 8., 2024. 1. 5., 2025. 1. 3.>
④ 삭제<2010. 1. 7.>
[전문개정 2009. 3. 31.]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30.,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2024. 8. 13.>
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6.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전문개정 2014. 1. 8.]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본조신설 2010. 9. 10.]
[제목개정 2013. 12. 11.]

제5장 수당 <개정 2009. 3. 31.>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2조(겸임수당)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5. 12. 30.>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5. 12. 30.>

[전문개정 2009. 3. 31.]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 9. 10.>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개정 2010. 9. 10.>
[전문개정 2009. 3. 31.]

제5장의2 연봉제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34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

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20. 1. 7., 2026. 1. 2.>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6., 2012. 7. 10., 2013. 3. 23., 2014. 11. 19., 2021. 6. 1.>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개정 2022. 1. 4.>

③ 국립대학의 장이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 연도에만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 변동률과 해당 교원의 신규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개정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1. 10.]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2026. 1. 2.>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90만9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977만2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68만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1,011만9천원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1. 1. 10.]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4. 1. 5.>

[전문개정 2009. 3. 31.]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본조신설 2009. 3. 31.]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 6.>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② 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 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 6., 2026. 1. 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1. 1. 5.>

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4., 2021. 1. 5.>
[전문개정 2009. 3. 31.]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본조신설 2011. 1. 10.]

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본조신설 1998. 12. 31.]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4. 1. 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12. 1.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4. 1. 8.]

제45조 삭제 <2023. 1. 6.>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2016. 6. 24.>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5. 1. 3.>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 8., 2016. 6. 24., 2025. 1. 3.>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8.,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2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24. 1. 5.]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20. 1. 7.>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6. 6. 24., 2020. 1. 7.>

[전문개정 2009. 3. 31.]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 11. 13.>

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전문개정 2007. 11. 13.]

제5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 8., 2017. 1. 6.>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7. 11.>

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3. 31.]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36조제2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그 금액이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개정 2016. 1. 8., 2017. 1. 6.>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에 따른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③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6등급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임용 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④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⑤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기준급은 제65조의 방법에 따라 책정한다.<개정 2017. 1. 6.>

⑥ 제5항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5등급 외무공무원이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6., 2026. 1. 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09. 3. 31.]

제59조(연봉의 조정) ①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

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2023. 7.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3. 7. 11.>

[전문개정 2009. 3. 31.]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 10. 10.>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31.]

제61조(준용)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개정 2010. 9. 10., 2016. 1. 8., 2017. 1. 6.>

②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개정 2016. 1. 8., 2017. 1. 6., 2024. 1. 5.>

④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신설 2006. 6. 12., 2007. 7. 2.>

제6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6., 2017. 7. 26.>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64조(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31.]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977만2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537만5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977만2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개정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3. 31.]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①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 5.>
[본조신설 2006. 6. 12.]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0. 1. 7., 2017. 1. 6., 2017. 7. 26., 2020. 1. 7.>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 1. 7., 2016. 1. 8., 2021. 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6.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1. 1. 5.>

⑤ 성과연봉 등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4., 2021. 1. 5.>

[전문개정 2009. 3. 31.]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24.>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조직의 개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제72조(연봉 감액)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6.>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 6.,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31.]

제8장 보칙 <개정 2009. 3. 31.>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④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1. 5.>
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24. 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전문개정 2009. 3. 31.]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 5., 2024. 8. 13.>

1.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시·도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2. 제20조제1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3. 제28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4. 1. 5.>

[본조신설 2023. 1. 6.]

부칙 <제12026호,198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구분 계급	의사	약사	간호원
3급이상	2호봉	2호봉	2호봉
4급	1호봉	2호봉	2호봉

+-----------+-----------+-----------+-----------+
| 5급 | - | 1호봉 | 1호봉 |
+-----------+-----------+-----------+-----------+

②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 이후 별표 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호봉	잔여기간구분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호봉
1		40		1년미만인 자	34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9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3
2			4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8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2
	1년미만인 자	37		1년미만인 자	31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6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0
3			5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35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9 |
| +-------------------------+-------+| +-------------------------+-------+
| |1년미만인 자 | 28 || |1년미만인 자 | 16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7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5 |
| 6 +-------------------------+-------+| 12 +-------------------------+-------+
| |1년미만인 자 | 26 || |1년미만인 자 | 14 |
+----+-------------------------+-------++----+-------------------------+-------+
|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3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5 || 13 +-------------------------+-------+
| | | || |1년미만인 자 | 12 |
| 7 +-------------------------+-------++----+-------------------------+-------+
| | | || 14 | | 11 |
| |1년미만인 자 | 24 |+----+-------------------------+-------+
| | | || 15 | | 10 |
+----+-------------------------+-------++----+-------------------------+-------+
| | | || 16 | | 9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3 |+----+-------------------------+-------+
| | | || 17 | | 8 |
| 8 +-------------------------+-------++----+-------------------------+-------+
| | | || 18 | | 7 |
| |1년미만인 자 | 22 |+----+-------------------------+-------+
| | | || 19 | | 6 |
+----+-------------------------+-------++----+-------------------------+-------+

			20		5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1
9			21		4
	1년미만인 자	20	22		3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9	23		2
10					
	1년미만인 자	18	24		1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7	25		
11			내지		1
			28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전문대학교원			대학교원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호봉	잔여기간구분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호봉
특3		특3	특1		특1

|특4 | | 특4 |특2 | | 특2 |
+----+----------+------+----+----------+------+
| 1 | | 35 |특3 | | 특3 |
+----+----------+------+----+----------+------+
| | 6월이상 1년 6월 | 34 |특4 | | 특4 |
| 2 | 미만인 자 | | | | |
| +----------+------+----+----------+------+
| | 6월미만인 자 | 33 | 1| | 33 |
+----+----------+------+----+----------+------+
| | 1년이상 1년 6월 | 33 | | 6월이상 1년 6월 | 32 |
| 3 | 미만인 자 | | 2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32 | | 6월미만인 자 | 31 |
+----+----------+------+----+----------+------+
| | 6월이상 1년 6월 | 31 | | 1년이상 1년 6월 | 31 |
| 4 | 미만인 자 | | 3 | 미만인 자 | |
| +----------+------+ +----------+------+
| | 6월 미만인 자 | 30 | | 1년미만인 자 | 30 |
+----+----------+------+----+----------+------+
| | 1년이상 1년 6월 | 30 | | 6월이상 1년 6월 | 29 |
| 5 | 미만인 자 | | 4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9 | | 6월미만인 자 | 28 |
+----+----------+------+----+----------+------+
| | 6월이상 1년 6월 | 28 | | 1년이상 1년 6월 | 28 |

6	미만인 자		5	미만인 자	
	6월미만인 자	27		1년미만인 자	27
	1년이상 1년 6월	27		6월이상 1년 6월	26
7	미만인 자		6	미만인 자	
	1년미만인 자	26		6월미만인 자	25
	6월이상 1년 6월	25		1년이상 1년 6월	25
8	미만인 자		7	미만인 자	
	6월미만인 자	24		1년미만인 자	24
	1년이상 1년 6월	24		6월이상 1년 6월	23
9	미만인 자		8	미만인 자	
	1년미만인 자	23		6월미만인 자	22
	6월이상 1년 6월	22		1년이상 1년 6월	22
10	미만인 자		9	미만인 자	
	6월미만인 자	21		1년미만인 자	21
	1년이상 1년 6월	21		6월이상 1년 6월	20

11	미만인 자		10	미만인 자	
	1년미만인 자	20		6월미만인 자	19
		19		1년이상 1년 6월	19
12			11	미만인 자	
13		18		1년미만인 자	18
14		17	12		17
15		16	13		16
16		15	14		15
17		14	15		14
18		13	16		13
19		12	17		12
20		11	18		11
21		10	19		10

22		9	20		9
23		8	21		8
24		7	22		7
25		6	23		6
26		5	24		5
27		4	25		4
28		3	26		3
29		2	27		2
30		1	28		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0호봉이상의 전임강사"를 "21호봉이상의 전임강사"로, "12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4호봉이상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1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를 "20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25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3호봉이하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5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2304호,1987. 12. 9.>(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 을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2371호,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519호,1988. 9.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3호,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제12630호,1989. 2. 28.>(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 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2734호,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ㆍ" 다음에 "의무ㆍ"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ㆍ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11ㆍ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ㆍ"을 삭제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부칙 <제12902호,1990. 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별표 8](기능직)、[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실제경력	간주경력
1. [별표 3] (일반직등) 및 [별표 4] (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경력	6급경력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7급경력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8급경력
2. [별표 8] (기능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이하 경력	6등급경력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7등급경력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8등급경력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9등급경력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9등급경력
3. [별표 10] (경찰、소방)의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경감、소방경경력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경력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위이하 경력	경위、소방위경력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경력	경사、소방장경력
	경사、소방위의 경장、소방교이하 경력	경장、소방교경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별표 8](기능직)、[별표 9의2](1종、2종 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 1、별표 16、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1급、특 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 11](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 12](전문대학、대학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 1 내지 특 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부칙 <제13048호,1990.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23호,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 문교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제35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중 " 문교부 " 를 각각 " 교육부 " 로 한다.

<76>내지 <148> 생략

부칙 <제13432호,1991. 7. 23.>(경찰위원회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 외교안보연구원장 " 을 "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3559호,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2호 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부칙 <제13623호,1992. 3. 28.>(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1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 ”를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으로 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중앙교육평가원장 ”을 “ 국립교육평가원장 ”으로 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5중 “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 ”를 “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

원 ” 으로 한다.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 3중 “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 ” 를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 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제13752호,1992. 10. 30.>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중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 ” 을 “ 한국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 로 하고, 비고 제2호중 “ 개방대학장 ” 을 “ 개방대학장ㆍ한국예술종합학교장 ” 으로 하며, 비고 제4호중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 을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3774호,1992.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가목중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을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을 “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 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3817호,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ㆍ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3. 6. 28.>

부칙 <제13859호,1993. 2. 24.> (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의 제4호중 " 대학교의 "를 "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로, "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 "으로 한다.

2. 총장에게는 특1호봉(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에게는 특2호봉), 부총장、목포해양대학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 특2호봉,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부여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917호,1993. 6. 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5호,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 " 종전의 봉급액 ", "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 "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4179호,1994. 2. 28.>(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의 제2호중 " 한국체육대학교、 " 다음에 " 목포해양대학교、 "를 삽입하며, " 목포해양대학장、 "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4200호,1994. 4. 7.>(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다음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 을 삽입한다.

부칙 <제14204호,1994. 4. 9.>(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계급란중 " 이등상사 " 를 " 상사 " 로, " 일등상사 " 를 " 원사 " 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4417호,1994. 11. 26.>(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봉급표의 행정부란중 " 정무장관보좌관 " 을 " 정무차관 " 으로 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2>생략

<273>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중 " 경제기획원장관 " 을 각각 " 재정경제원장관 " 으로 하고, 제35조제3항중 " 경제기획원 " 을 " 재정경제원 " 으로 한다.

<274>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41호,1994. 12. 23.>(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 2. 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국립교육평가원, ” 및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 ,국립교육평가원장 ” 과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제5호중 “ 국립교육평가원, ” 을 각각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14502호,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05호,1995. 7. 1.>(지방공무원보수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 중, “ 서울특별시장 ” 및 “ 직할시장,도지사 ” 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중 “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감에게는 ” 을 “ 부총장에게는 ” 으로 한다.

부칙 <제14855호,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17호,1996. 2. 21.>(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의 계급란중 “ 치안정감 ” 을 “ 치안정감 소방총감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4920호,1996. 2. 22.>(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2) 생략

2!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별표11 및 별표15제5호중 " 국민학교 " 를 각각 " 초등학교 " 로 한다.

2@ 내지3@ 생략

부칙 <제14934호,1996. 3. 8.>(공정거래위원회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란의 행정부란란중 " 처장 " 다음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을 삽입하고, "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을 "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부위원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5245호,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6、별표 10、별표 12、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부칙 <제15551호,1997. 12. 27.>(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의 비고란제3호 본문중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 을 " 국사편찬위원회 " 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5667호,1998. 2. 24.>(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의 제2호가목중 " 여수수산대학교 " 를 " 여수대학교 " 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5690호,1998. 2. 2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별표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전문직공무원 " 을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14의 제목중 " 전문직공무원 " 을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 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 비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5715호,1998. 2. 28.>(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 외무부장관 " 을 각각 " 외교통상부장관 "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 " 으로 하고, 제38조제1항중 "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 " 을 " 행정자치부

장관과 예산청장 ” 으로 하며, 제39조제2항중 “ 총무처 ” 를 “ 행정자치부 ” 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 총무처차관 ” 을 “ 행정자치부차관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교육부 및 행정조정실 ” 을 “ 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 및 예산청 ” 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 외무부 ” 를 “ 외교통상부 ” 로, “ 내무부 ” 를 “ 행정자치부 ” 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2,061,000원으로 하고, 공보실장、통계청장、기상청장、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의 차장、청의 차장、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특2급 외교직공무원、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및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봉급월액은 1급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2.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중앙해난심판원장 및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 위원회상임위원 : 1급 19호봉
나.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판원장 및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2급 18호봉
다.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라.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1급상당 : 1급 15호봉, 2급상당 : 2급 12호봉, 3급상당 : 3급 16호봉, 4급상당 : 4급 21호봉
마.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14의1.비고, 별표15의1, 초임호봉란, 별표16의2.가.(1)、(4), 나.(1의2) 및 다.(3), 별표17의1.나.(2)、(3의2)、(4)、(5)및 2.나.(2)、(3)、(4), 별표19의1.나.(1)、(3)、(4의2)、(5)및 2.나.(2)、(3)、(4), 별표27의다.경력란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30의 기관명란중 “ 내무부 ” 를 “ 행정자치부 ” 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5766호,1998. 4. 1.>(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 으로, “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 을 “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 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란의 제1호중 “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 을 “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ㆍ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ㆍ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5808호,1998. 6. 8.>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정부의 대통령직속기관의 직명란중 “ 국가안전기획부차장ㆍ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 ” 을 “ 국가안전기획부차장 ” 으로 하고,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 국무총리비서실장 ” 을 “ 국무총리비서실장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5898호,1998. 9. 25.>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 한국예술종합학교장 ” 을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6077호,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ㆍ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개정 1999.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ㆍ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11호,1999. 3. 31.>(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 을 " 국가정보원직원법 " 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공무원란 및 별표 8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국가안전기획부직원 " 을 각각 " 국가정보원직원 " 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중 "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 을 "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 으로 한다.

별표 31의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국가안전기획부직원 " 을 " 국가정보원직원 " 으로 한다.

⑬내지2* 생략

부칙 <제16218호,1999. 3. 31.>(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6,077호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1항 본문중 "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 을 "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 으로 한다.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ㆍ제2항 후단 및 제56조제1항중 " 예산청장 "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 예산청소속 " 을 " 기획예산처소속 " 으로 한다.

⑪내지 <109>생략

부칙 <제16341호,1999. 5. 24.>(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중 " 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 을 " 법제처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6626호,1999. 12. 28.>(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6678호,1999. 12. 31.>(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16689호,2000. 1.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중 대통령의 월봉급액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 4. 18.>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 -

대통령	4,147,800원
국무총리	3,324,800원
감사원장	2,509,1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2,318,500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2,220,7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특1급 외교직공무원	2,122,800원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구분	월봉급액
처의 차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청의 차장、	
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1,977,400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국회수석전문위원	
특2급 외교직공무원	1,977,400원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특별시·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1,907,100원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판원장·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1,682,200원
1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1,772,800원
2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1,462,300원
3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1,457,2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2,605,000원인 공무원은 2,318,5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2,386,000원인 공무원은 2,122,800원

②제1항의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4.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8.>

부칙 <제16716호,2000. 2. 14.>(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 한국전통문화학교장 " 을 "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총장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6785호,2000.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 를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 " 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 "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 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하고, 동조제3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를 “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 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 차관보, 1급공무원 ” 을 “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 2급 및 3급공무원 ” 을 “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 ” 을 “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부칙 <제16940호,2000. 8.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03호,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 1. 4.>

제3조 (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별표 10、별표 12、별표 13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과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 또는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제17114호,2001. 1. 29.>(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의 제3호중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별표 22의 경력란의 제2호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란의 제6호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의 제3호중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하고, 동란의 제7호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중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중 " 감사원장 " 을 " 감사원장 및 부총리 " 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138호,2001. 2. 27.>(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 경찰대학ㆍ세무대학 " 을 " 경찰대학 " 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7275호,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 계급 " 을 " 계급ㆍ직무등급 " 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 해당직급 " 을 " 해당 직급ㆍ직무등급 " 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 특1급 외교직공무원 " 을 "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을 "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 2급 및 3급공무

원 ” 을 “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 4급 및 5급공무원 ” 을 “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 제2항제9호의2 ” 를 “ 제3항제9호의2 ” 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 ” 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 ” 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 제24조제1항 ” 을 “ 제24조제2항 ” 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 ” 을 “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 외무관리관 ” 을 “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 5급이상 외무공무원 ” 을 “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 을 “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1급 또는 특2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7407호,2001.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2년 1월 1일 현재 4급 내지 9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던 외무공무원은 최초의 승격이 있기 전까지는 9급은 1등급, 8급은 2등급, 7급은 3등급, 6급은 4등급, 5급은 5등급, 과장급이 아닌 4급은 6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②2001년 7월 1일 이후에 직위의 변경이 없었던 과장급인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과장급인 4급은 7등급 또는 8등급, 3급은 9등급,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 1급은 12등급, 특2급 외교통상직은 13등급, 특1급 외교통상직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과장급인 4급 및 2급의 구체적인 보수지급기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책정) ①2001년 1월 1일 현재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중 종전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었던 자의 2002년 연봉은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2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2002년 1월 1일 현재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중 종전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었던 자의 2002년 연봉은 2001년 연봉을 기준으로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연봉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감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책정된 연봉이 해당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며,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책정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4조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0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0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 또는 연봉액에 산입한다.

제5조 (외무공무원의 계급폐지 및 직무등급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02년 1월 1일 현재 다른 법령에서 외무공무원에 관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직무등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계급	직무등급

특1급	14등급
특2급	13등급
1급	12등급
2급	10등급 또는 11등급
3급	9등급
4급	6등급 내지 8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부칙 <제17482호,2002.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교육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17498호,200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0호,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74호,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79호,2003. 1.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7992호,2003. 6. 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8122호,2003.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63호,2003. 12. 1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 국립보건원 "을 " 질병관리본부 "로 한다.

부칙 <제18217호,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337호,2004.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제18582호,2004.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71호,2005. 1.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4호 내지 10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에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8715호,2005. 2. 25.>(공무원임용령)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8814호,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43호,2005. 5. 26.>(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부칙 <제18966호,2005. 7. 27.>(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를 각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113호,2005. 11. 4.>(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9120호,2005.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68호,2006. 1.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1. 27.>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 1. 27.>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ㆍ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ㆍ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

구분	호봉	봉급액	비고
교수 부교수	1~16호봉	[별표12] 해당호봉의 봉급액	
	17~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8.5 퍼센트	
조교수 전임강사	1~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7퍼센트	

②별표 15 제6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9307호,2006. 1. 27.>(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을 "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19521호,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 책정)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기준급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직무등급(하위 직무등급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과거 임용되었던 가장 높은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3등급 또는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20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24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8천 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 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의2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부칙 제5조의 표”를 “부칙 제5조의 표 및 이 영 별표 1의3”으로,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고정된 연봉”을 “고정된 연봉 또는 기준급”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9831호,2007.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 봉급액은 별표 12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061호,2007.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호,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부터 마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고위공무원단 "을 " 고위(감사)공무원단 "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고위공무원단 "을 " 고위(감사)공무원단 "으로 한다.

부칙 <제20379호,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 직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별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1,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480만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9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직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당시보다 하위 직무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위의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나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8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2008년 6월 30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고

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20537호,2008.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7.>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별표 35의 비고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천 338만 2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423만 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423만 6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3조의2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하고, " 기획예산처장관 " 을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6호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 대통령경호실 " 을 " 대통령실 경호처 " 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67조 중 "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 " 를 " 처 " 로 하고,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 기획예산처장관 " 은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 을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 ” 을 “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을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을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을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 대통령경호실 ” 을 각각 “ 대통령실 경호처 ” 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 감사원장 및 부총리 ” 를 “ 감사원장 ” 으로 하고, “ 국정홍보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 을 “ 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 ” 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⑩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797호,2008. 6. 5.>(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 방송통신대학 ” 을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 으로 한다.

② 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0889호,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97호,2008. 7. 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21242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9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2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이하 "종전 가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1천20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24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이하 "종전 다등급"이라 한다) 또는 라등급(이하 "종전 라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72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48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 제20152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 제2037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무급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75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42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1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 또는 종전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30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24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⑥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및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파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 7.>

부칙 <제21391호,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52호,2009. 4. 30.>(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연구관"을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제17조의 제목 “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를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연구실적 ”은 “ 업무실적 ”으로, “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는 “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 ”로 본다.

별표 1 별표 5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5의 제목 “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를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공무원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726호,2009. 9. 11.>(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 중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부칙 <제21870호,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서는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979호,201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4호,201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2617호,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사경력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경력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기승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6,332,700원인 공무원: 5,589,4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6,219,900원인 공무원: 5,094,5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8.>

⑤ 검사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 3. 15.>

⑥ 군인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근속가봉 지급의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만 7천 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만 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4.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신규채용되는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만 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4. 1. 8.>

제7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을 받아 이미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6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9조제2항, 별표 30의3,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신규채용되는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연봉 책정)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부칙 제8조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되는 연도의 연봉은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연봉제 전환 연도의 정기승급일이 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근속가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속가봉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

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부칙 <제22708호,2011. 3. 15.>(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을 "계급"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 ”을 “ 직위해제처분 ”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 ”을 “ 직위해제처분 ”으로, “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 기간을 말한다) ”을 “ 직위해제처분기간 ”으로 한다.

제30조의3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으로 한다.

별표 1 중 별표 9 및 별표 9의2란을 삭제한다.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의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0퍼센트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097호,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을 “ 「국립학교 설치령」 ”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356호,2011. 12. 8.>(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 보육시설종사자 ”를 “ 보육교직원 ”으로, “ 보육시설 ”을 “ 어린이집 ”으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497호,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6,591,700원인 공무원: 5,818,0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6,474,300원인 공무원: 5,302,9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을 “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 ”를 “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 ”로 한다.

부칙 <제23632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인 국립대학 교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2일 당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국립대학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부터 2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처분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2012년 7월 22일 당시 2년

이 경과한 경우에는 2012년 7월 22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2일 당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은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부터 2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처분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2012년 7월 22일 당시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012년 7월 22일)에 158만 2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부칙 <제23943호,2012. 7. 10.>(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4299호,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별표 13의 봉급표상 봉급액이 6,808,600원인 공무원: 6,009,400원
2. 별표 13의 봉급표상 봉급액이 6,687,300원인 공무원: 5,477,4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ㆍ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2)ㆍ3), 다목3) 및 같은 표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ㆍ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ㆍ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ㆍ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ㆍ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가목의 환산율란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 를 “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 로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 를 “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 로 하며, 같은 목 4)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 를 “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22의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 를 각각 “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 제6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 교육과학기술부 ” 를 “ 교육부 ” 로,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을 “ 중앙교육연수원 ” 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 교육과학기술부 ” 를 “ 교육부 ” 로, “ 행정안전부 ” 를 “ 안전행정부 ” 로 한다.

별표 3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 대통령실 경호처 ” 를 각각 “ 대통령경호실 ” 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 감사원장 ” 을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으로,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 을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1^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16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
별정직공무원(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만 해당한다)	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한다)	일반직 6급 공무원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한다)	일반직공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기능2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한다)	일반직 우정직군 3급 공무원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3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한다)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상당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별표 17 제2호가목1), 별표 19 제2호가목1) 및 별표 27 나목1)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30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070호,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승급 제한 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 기간 중 봉급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7조(국제경기대회 근무 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3급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제2항, 제37조제2항, 제66조제2항, 별표 3, 별표 4부터 별

표 6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및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하되,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은 지급한다.

1. 별표 3 또는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2. 별표 5 또는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3.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경무관 또는 소방준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4. 별표 11 또는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5. 별표 12의 봉급표 또는 별표 33 제2호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전문대학장 및 단과대학장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령 이상 군인
7. 별표 1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8.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9. 별표 33 제1호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봉등급 3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10. 별표 35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9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11. 별표 38의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받는 고위공무원

제9조(월 중 면직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직 기간 중의 봉급 감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2월 7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67호,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경력관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경력관 중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다.

제4조(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획정된 호봉은 다음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에 종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봉급액(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이 경우 재획정된 호봉(이하 "변경호봉"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1	2,050,300	1,517,700	1,203,500
2	2,147,500	1,600,100	1,270,200
3	2,245,000	1,683,500	1,337,600
4	2,342,300	1,767,800	1,405,900
5	2,440,100	1,850,400	1,474,800
6	2,537,700	1,933,800	1,543,400
7	2,634,900	2,018,300	1,610,800
8	2,732,100	2,100,100	1,676,900
9	2,827,600	2,177,600	1,740,700
10	2,926,000	2,252,000	1,803,200
11	3,007,900	2,324,300	1,864,600
12	3,090,000	2,384,400	1,918,500
13	3,172,000	2,443,700	1,972,000
14	3,253,300	2,502,000	2,025,200
15	3,335,300	2,560,100	2,076,100
16	3,394,300	2,617,900	2,126,700
17	3,452,600	2,673,500	2,175,400
18	3,510,900	2,726,800	2,223,300
19	3,568,500	2,777,900	2,270,000
20	3,626,200	2,828,300	2,315,400
21	3,683,900	2,878,000	2,360,100
22	3,741,100	2,926,900	2,403,600
23	3,799,000	2,974,800	2,445,800
24	3,857,000	3,025,200	2,490,700
25	3,915,100	3,071,300	2,531,600
26	3,973,900	3,120,700	2,575,800
27	4,034,400	3,169,100	2,619,400
28	4,093,400	3,214,800	2,658,500
29	4,155,200	3,260,200	2,695,700
30	4,217,200	3,305,300	2,730,800
31	4,278,800	3,350,200	2,763,200
32	4,340,200	3,398,000	2,794,300
33	4,401,100	3,440,300	2,824,900
34	4,461,600	3,487,400	2,855,400
35	4,521,800	3,533,900	2,887,400
36	4,582,000	3,575,700	2,917,500
37	4,642,800	3,617,200	2,947,500
38	4,703,600	3,658,700	2,977,500
39	4,763,400		
40	4,802,000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봉급표(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봉급표를 말한다)에서 다른 호봉을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 전단에 따

라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2013년 12월 12일 전에 상위 호봉을 적용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경호봉에서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2013년 12월 12일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2013년 12월 1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획정된 호봉은 제1항의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호봉 재획정 등에 따른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부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반영한 봉급액을 말한다)이 종전의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 보다 적은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ㆍ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 2)ㆍ3), 같은 호 다목3)의 경력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같은 목3)가)의 경력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 3)ㆍ4)ㆍ8)의 경력란,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 안전행정부 ”를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비고 제2호 본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1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41호,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에 대하여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적용할 호봉의 획정은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의 획정 방법에 따른다.

제4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 종전의 봉급액 ”이라 한다)으로 보전받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6655호,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전투경찰대설치법」 "을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 전투경찰순경 "을 " 의무경찰 "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 전투경찰순경 "을 " 의무경찰 "로 한다.

⑦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77호,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 단서 및 제48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호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봉급표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6등급 외무공무원, 군무원 중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7257호,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 파견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대해서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17호,2016. 11. 2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7703호,2016. 12. 30.>(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7769호,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 중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 별표 12, 별표 13,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총장
3. 별표 13 비고 제1호의 대장 및 중장
4. 별표 3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5. 별표 33 제5호 비고 제1호의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 별표 35 비고 제1호의 14등급 외무공무원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정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및 5급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2018년도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제70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제2항 중 " 대통령경호실 "을 각각 " 대통령경호처 "로 한다.

별표 1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 대통령경호실 "을 " 대통령경호처 "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를 " 행정안전부 "로 한다.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 대통령경호실 "을 각각 " 대통령경호처 "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으로 한다.

<3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94호,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6조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7조 및 제8조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부칙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급별 승급액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1.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810만7천원
2.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444만2천원
3.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810만7천원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 호봉	1급	2급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비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14,400원으로 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1급	2급
1	4,057,400	3,774,900
2	4,192,400	3,903,600
3	4,330,900	4,033,800
4	4,472,500	4,165,500
5	4,617,400	4,298,700
6	4,764,100	4,432,400
7	4,913,100	4,567,700
8	5,063,300	4,702,900
9	5,215,500	4,838,900
10	5,368,700	4,975,100
11	5,521,600	5,111,700
12	5,679,500	5,253,000
13	5,838,400	5,395,200
14	5,997,800	5,523,800
15	6,137,000	5,642,500
16	6,260,500	5,751,300
17	6,370,200	5,851,600
18	6,467,800	5,942,900
19	6,555,300	6,027,500
20	6,633,600	6,104,700
21	6,705,800	6,175,100
22	6,770,100	6,239,800
23	6,824,500	6,299,000
24		6,347,400
25		6,393,600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연구관
1	2,395,900
2	2,513,300
3	2,630,600
4	2,747,900
5	2,864,900
6	3,034,300
7	3,202,900
8	3,371,500
9	3,539,300
10	3,707,100
11	3,856,300
12	4,005,600
13	4,152,800
14	4,301,400
15	4,448,300
16	4,591,600
17	4,734,100
18	4,876,900
19	5,018,500
20	5,160,100
21	5,278,200
22	5,395,500
23	5,513,100
24	5,630,200
25	5,747,500
26	5,845,600
27	5,944,900
28	6,043,200
29	6,141,100
30	6,239,500
31	6,315,500
32	6,391,800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지도관
1	2,395,900
2	2,511,700
3	2,627,200
4	2,743,500
5	2,857,500
6	3,009,700
7	3,161,700
8	3,314,300
9	3,465,900
10	3,616,700
11	3,753,100
12	3,888,600
13	4,024,400
14	4,159,300
15	4,293,200
16	4,411,400
17	4,531,400
18	4,650,400
19	4,768,200
20	4,885,800
21	4,990,600
22	5,095,800
23	5,200,400
24	5,305,100
25	5,409,800
26	5,501,200
27	5,592,200
28	5,683,700
29	5,774,300
30	5,866,200
31	5,928,000
32	5,990,200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62,600	21	2,978,200
2	1,610,000	22	3,088,200
3	1,658,100	23	3,197,300
4	1,705,800	24	3,306,400
5	1,754,100	25	3,415,700
6	1,802,300	26	3,525,300
7	1,849,700	27	3,639,600
8	1,897,300	28	3,753,700
9	1,945,500	29	3,873,000
10	1,998,100	30	3,992,700
11	2,049,700	31	4,112,000
12	2,102,300	32	4,231,100
13	2,198,200	33	4,352,100
14	2,294,300	34	4,472,700
15	2,390,200	35	4,593,600
16	2,486,500	36	4,714,000
17	2,581,700	37	4,818,700
18	2,681,200	38	4,923,700
19	2,780,300	39	5,028,800
20	2,879,300	40	5,133,100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76,300	21	3,888,500
2	2,038,500	22	4,008,000
3	2,101,100	23	4,163,900
4	2,163,300	24	4,319,400
5	2,226,000	25	4,474,700
6	2,294,600	26	4,630,000
7	2,363,000	27	4,785,300
8	2,431,800	28	4,940,400
9	2,534,800	29	5,058,500
10	2,638,000	30	5,176,900
11	2,741,400	31	5,294,800
12	2,844,100	32	5,412,900
13	2,946,600	33	5,531,200
14	3,049,400		
15	3,169,800		
16	3,290,000		
17	3,409,600		
18	3,529,400		
19	3,649,800		
20	3,769,0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16,0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14,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956,3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소장	준장	대령
1	5,045,100	4,759,400	3,863,700
2	5,169,800	4,883,100	3,993,600
3	5,294,500	5,006,800	4,123,500
4	5,419,200	5,130,500	4,253,400
5	5,543,900	5,254,200	4,383,300
6	5,668,600	5,377,900	4,513,200
7	5,793,300	5,501,600	4,643,100
8	5,918,000	5,625,300	4,773,000
9	6,042,700	5,749,000	4,902,900
10	6,167,400	5,872,700	5,032,800
11	6,292,100	5,996,400	5,162,700
12	6,416,800	6,120,100	5,292,600
13	6,541,500	6,243,800	5,422,500
14			5,552,400
15			5,682,300
비고 대장: 7,956,300원, 중장: 7,814,400원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929,400
15	7,479,600
14	7,032,000
13	6,630,300
12	6,291,500
11	6,128,100
10	5,935,800
9	5,614,500
8	5,231,900
7	4,901,800
6	4,592,200
5	4,293,300
4	3,992,400
3	3,701,600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224,798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8,154
국무총리	174,274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6,304
부총리 및 감사원장	131,848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4,459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10,428	73,609
2급(상당) 공무원	102,058	68,003

2.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 · 소방정감 공무원	110,428	73,609
치안감 · 소방감 공무원	102,058	68,003

비고: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6,091

4.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2,137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4,671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10,428	73,609
12등급	110,428	71,058
11등급	102,058	68,003
10등급	98,000	65,828
9등급	94,877	63,734

비고: 14등급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가산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4,442	4,402	5,411	6,472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100,576	64,737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단위: 천원)

구 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90,631 ~ 64,737	110,051 ~ 64,737

제6조(국회의원 비서의 봉급액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중에 임용된 국회의원 비서(8급상당)의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

으로 한다.

제7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변경된 직종 및 호봉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급별 최고 호봉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호봉
기능군무원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별정군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군무원만 해당한다)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전문군무경력관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제8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종전 계급이 5급상당인 군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계약군무원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각각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군무원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 직종의 기본연봉을 변경된 직종에서의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과 제40조 본문에 따른 연봉 조정액은 변경되기 전 직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제29478호,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부칙 <제30192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 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47호,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13,432	75,612
2급(상당) 공무원	104,834	69,854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105,369	35,087
지도관	97,421	35,08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 · 소방정감	113,432	75,612
치안감 · 소방감	104,834	69,854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6,773

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4,371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6,703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13,432	75,612
12등급	113,432	72,992
11등급	104,834	69,854
10등급	100,667	67,619
9등급	97,459	65,468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93,097 ~ 66,498	113,045 ~ 66,498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132,996천원 ~ 66,498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00호,2020. 6. 2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0803호,2020. 6. 2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 시간제근무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374호,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1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제나목을 초과하는 금액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59호,2021. 3. 30.>(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1709호,2021. 6. 1.>(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2319호,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6)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27호,2022. 5. 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2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24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980호,2022. 11. 8.>(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213호,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⑥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⑦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⑧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⑨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⑩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⑪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⑫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령 이상의 공무원의 봉급 및 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⑬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⑭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⑮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수석전문관 공무원
3.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4.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5.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
6. 부총장 또는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7. 연봉등급 4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8.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1^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제5조(감봉 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라 감봉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을 감액한다. 다만, 연봉월액을 감액하는 금액이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등에 따른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한다.

부칙 <제33622호,2023. 7. 11.>(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을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ㆍ제2항 중 “ 외교부장관 ”을 각각 “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692호,2023. 8. 3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을 “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 16 중 “ 기술 분야 ”를 각각 “ 과학기술 분야 ”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중 “ 기술 분야 ”를 각각 “ 과학기술 분야 ”로 한다.

별표 19 제2호 중 “ 기술 분야 ”를 “ 과학기술 분야 ”로, “ 기술분야 ”를 “ 과학기술 분야 ”로 한다.

별표 22 제3호 중 “ 기술 분야 ”를 “ 과학기술 분야 ”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798호,2023. 10. 1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3862호,2023. 11. 16.>(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 금오공과대학교 ”를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로, “ 목포해양대학교 ”를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로, “ 한밭대학교 ”를 “ 국립한밭대학교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강릉원주대학교 ”를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로, “ 공주대학교 ”를 “ 국립공주대학교 ”로, “ 군산대학교 ”를 “ 국립군산대학교 ”로, “ 목포대학교 ”를 “ 국립목포대학교 ”로, “ 부경대학교 ”를 “ 국립부경대학교 ”로, “ 순천대학교 ”를 “ 국립순천대학교 ”로, “ 안동대학교 ”를 “ 국립안동대학교 ”로, “ 창원대학교 ”를 “ 국립창원대학교 ”로, “ 한국교통대학교 ”를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로, “ 한국해양대학교 ”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로 한다.

부칙 <제34099호,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충역ㆍ대체역 등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의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제22조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4조(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40조 본문에 따라 2024년도 연봉을 조정할 때에는 최초 연봉 책정 당시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10에 따른 봉급과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4에 따른 봉급과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조정된 연봉은 별표 33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3년 1월 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정 또는 소방령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3.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총경 이상 또는 소방정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제5조(특별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4823호,2024. 8. 1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 경찰간부후보생 ”을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4825호,2024. 8. 1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6호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181호,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일 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82호,2025. 2. 25.>(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중 “ 국립안동대학교 ”를 “ 국립경국대학교 ”로 한다.

부칙 <제35838호,2025. 11. 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 국립통일교육원 ”을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의2제5항, 제58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5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13호,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에서 종전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적용한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2. 2026년 1월 1일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으로 한다.

부칙 <제36147호,2026. 2. 27.>(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를 “ 강원대학교 ”로 한다.

부칙 <제36489호,2026. 6. 3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전보를 ”을 “ 전보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7급 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직을 ”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6501호,2026. 7. 7.>(국무회의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으로 한다.

부칙 <제36547호,2026.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제2조(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6 비고 제2호,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별표 19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 비고 제2호,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별표 19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개정 2026. 9. 29.>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별표 4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경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조사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별표 5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6	지도직공무원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소방간부 후보생,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별표 12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국방대학교·사법연수원·경찰대학·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
별표 13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별표 14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삭제 <1998.12.31>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개정 2026. 1. 2.>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 호봉	1급	2급	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4,656,100	4,191,600	3,781,700	3,241,200	2,896,400	2,389,500	2,317,100	2,162,100	2,133,000
2	4,819,300	4,347,100	3,921,600	3,373,500	3,013,400	2,500,700	2,367,900	2,195,700	2,147,600
3	4,986,600	4,504,700	4,065,700	3,508,000	3,135,000	2,615,200	2,423,800	2,233,800	2,168,000
4	5,157,700	4,663,700	4,210,800	3,645,700	3,261,300	2,732,400	2,485,200	2,276,600	2,194,000
5	5,333,000	4,825,100	4,358,300	3,785,200	3,390,900	2,853,100	2,567,100	2,331,700	2,226,100
6	5,510,400	4,986,500	4,507,200	3,926,200	3,523,000	2,977,100	2,682,600	2,412,900	2,264,600
7	5,690,400	5,150,200	4,658,000	4,068,300	3,657,300	3,101,500	2,798,700	2,519,600	2,308,900
8	5,871,900	5,313,600	4,809,000	4,211,100	3,793,200	3,226,200	2,915,800	2,622,400	2,367,500
9	6,056,100	5,478,200	4,961,400	4,354,500	3,929,600	3,351,300	3,027,100	2,720,300	2,456,700
10	6,241,300	5,642,500	5,113,600	4,497,700	4,066,800	3,468,700	3,133,300	2,813,000	2,542,700
11	6,426,000	5,807,700	5,266,200	4,642,100	4,195,300	3,580,000	3,233,400	2,902,700	2,624,400
12	6,617,100	5,978,600	5,424,200	4,778,100	4,319,000	3,689,600	3,331,900	2,990,300	2,705,900
13	6,809,200	6,150,500	5,571,200	4,905,100	4,436,400	3,792,700	3,425,300	3,074,500	2,783,900
14	7,001,800	6,306,200	5,707,600	5,023,800	4,545,900	3,890,000	3,514,500	3,155,100	2,859,800
15	7,170,100	6,449,600	5,833,400	5,135,500	4,649,400	3,983,600	3,599,900	3,232,400	2,932,300
16	7,319,600	6,581,000	5,950,500	5,240,900	4,746,800	4,071,300	3,680,600	3,307,100	3,002,300
17	7,452,100	6,702,000	6,059,400	5,338,700	4,838,400	4,154,900	3,758,100	3,376,800	3,070,800
18	7,570,100	6,812,700	6,160,700	5,430,100	4,924,800	4,234,100	3,832,100	3,444,300	3,134,500
19	7,675,800	6,914,900	6,254,300	5,515,500	5,006,300	4,309,100	3,902,000	3,509,300	3,197,300
20	7,770,600	7,008,100	6,342,100	5,595,300	5,082,700	4,379,600	3,968,400	3,571,100	3,257,000
21	7,857,800	7,093,400	6,423,300	5,669,800	5,154,500	4,447,600	4,031,800	3,630,200	3,313,400
22	7,935,600	7,171,600	6,498,500	5,739,700	5,222,000	4,511,500	4,091,600	3,686,900	3,367,600
23	8,001,400	7,243,100	6,567,800	5,805,400	5,285,600	4,571,300	4,149,600	3,740,800	3,419,200
24		7,301,700	6,632,800	5,867,300	5,345,200	4,628,500	4,204,500	3,792,900	3,468,800
25		7,357,600	6,685,800	5,923,800	5,401,500	4,682,800	4,256,500	3,842,300	3,516,000
26			6,736,700	5,971,800	5,454,500	4,734,100	4,306,500	3,890,300	3,558,700
27			6,783,800	6,015,900	5,498,400	4,782,800	4,348,700	3,930,200	3,595,600
28				6,058,300	5,540,700	4,823,700	4,388,000	3,968,700	3,631,000
29					5,579,500	4,861,900	4,426,100	4,005,100	3,665,100
30					5,617,200	4,899,800	4,462,400	4,040,300	3,698,400
31						4,934,800	4,496,500	4,074,600	3,731,100
32						4,967,8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6. 1. 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1	2,896,400	2,317,100	2,133,000
2	3,033,800	2,373,300	2,147,500
3	3,171,600	2,441,100	2,168,400
4	3,310,400	2,521,400	2,195,900
5	3,451,900	2,615,300	2,230,200
6	3,590,200	2,735,900	2,271,600
7	3,724,200	2,858,000	2,320,400
8	3,859,700	2,976,900	2,377,200
9	3,996,400	3,080,800	2,468,600
10	4,135,800	3,183,000	2,558,300
11	4,259,700	3,283,500	2,640,500
12	4,380,100	3,373,300	2,713,100
13	4,487,600	3,463,900	2,789,800
14	4,598,300	3,543,000	2,867,900
15	4,714,300	3,622,000	2,942,800
16	4,802,300	3,703,700	3,014,300
17	4,889,400	3,785,800	3,077,800
18	4,967,000	3,859,600	3,142,600
19	5,048,800	3,928,200	3,208,500
20	5,125,200	4,001,300	3,275,600
21	5,207,100	4,075,500	3,338,900
22	5,285,200	4,140,600	3,403,900
23	5,367,100	4,208,700	3,463,400
24	5,451,400	4,279,800	3,527,200
25	5,533,700	4,345,200	3,585,000
26	5,622,100	4,410,700	3,647,900
27	5,707,800	4,479,300	3,707,600
28	5,791,400	4,548,300	3,761,200
29	5,878,600	4,612,500	3,813,800
30	5,960,700	4,676,100	3,863,400
31	6,044,900	4,739,700	3,909,300
32	6,131,800	4,802,900	3,953,200
33	6,217,600	4,867,500	3,994,700
34	6,303,000	4,928,900	4,035,700
35	6,388,100	4,992,500	4,079,000
36	6,473,300	5,051,500	4,121,700
37	6,559,100	5,110,100	4,164,200
38	6,645,200	5,168,900	4,206,700
39	6,729,500		
40	6,783,8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개정 2026. 1.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905,100	4,563,500	4,167,700	3,619,000	3,126,100	2,568,400	2,472,100	2,215,300	2,133,000
2	5,068,300	4,719,000	4,307,600	3,751,300	3,243,100	2,679,400	2,493,100	2,245,500	2,148,600
3	5,235,600	4,876,600	4,451,700	3,885,800	3,364,700	2,794,000	2,539,000	2,290,400	2,174,000
4	5,406,700	5,035,600	4,596,800	4,023,500	3,491,000	2,911,100	2,610,800	2,350,700	2,209,500
5	5,582,000	5,197,000	4,744,300	4,163,000	3,620,600	3,031,800	2,710,600	2,427,500	2,255,500
6	5,759,400	5,358,400	4,893,200	4,304,000	3,752,700	3,155,800	2,826,000	2,522,200	2,312,600
7	5,939,400	5,522,100	5,044,000	4,446,100	3,887,000	3,280,100	2,942,100	2,628,900	2,381,600
8	6,120,900	5,685,500	5,195,000	4,588,900	4,022,900	3,404,900	3,059,100	2,731,700	2,463,400
9	6,305,100	5,850,100	5,347,400	4,732,300	4,159,300	3,530,100	3,170,300	2,829,500	2,552,800
10	6,490,300	6,014,400	5,499,600	4,875,500	4,296,500	3,647,400	3,276,600	2,922,200	2,638,600
11	6,675,000	6,179,600	5,652,200	5,019,900	4,425,000	3,758,800	3,376,800	3,012,000	2,720,500
12	6,866,100	6,350,500	5,810,200	5,155,900	4,548,700	3,868,400	3,475,200	3,099,500	2,802,100
13	7,058,200	6,522,400	5,957,200	5,282,900	4,666,100	3,971,500	3,568,600	3,183,800	2,880,000
14	7,250,800	6,678,100	6,093,600	5,401,600	4,775,600	4,068,800	3,657,900	3,264,300	2,955,600
15	7,419,100	6,821,500	6,219,400	5,513,300	4,879,100	4,162,400	3,743,200	3,341,600	3,028,100
16	7,568,600	6,952,900	6,336,500	5,618,700	4,976,500	4,250,000	3,823,900	3,416,300	3,098,400
17	7,701,100	7,073,900	6,445,400	5,716,500	5,068,100	4,333,800	3,901,400	3,486,000	3,166,800
18	7,819,100	7,184,600	6,546,700	5,807,900	5,154,500	4,412,800	3,975,500	3,553,600	3,230,600
19	7,924,800	7,286,800	6,640,300	5,893,300	5,236,000	4,487,900	4,045,300	3,618,500	3,293,300
20	8,019,600	7,380,000	6,728,100	5,973,100	5,312,400	4,558,500	4,111,700	3,680,400	3,353,200
21	8,106,800	7,465,300	6,809,300	6,047,600	5,384,200	4,626,200	4,175,200	3,739,400	3,409,400
22	8,184,600	7,543,500	6,884,500	6,117,500	5,451,700	4,690,200	4,235,000	3,796,100	3,463,600
23	8,250,400	7,615,000	6,953,800	6,183,200	5,515,300	4,750,100	4,293,000	3,850,000	3,515,100
24		7,673,600	7,018,800	6,245,100	5,574,900	4,807,300	4,347,900	3,902,200	3,564,900
25		7,729,500	7,071,800	6,301,600	5,631,200	4,861,500	4,399,900	3,951,600	3,612,000
26			7,122,700	6,349,600	5,684,200	4,912,900	4,449,900	3,999,600	3,654,600
27			7,169,800	6,393,700	5,728,100	4,961,600	4,492,000	4,039,500	3,691,600
28				6,436,100	5,770,400	5,002,600	4,531,300	4,078,000	3,727,000
29					5,809,200	5,040,800	4,569,300	4,114,300	3,761,200
30					5,846,900	5,078,500	4,605,800	4,149,600	3,794,400
31						5,113,500	4,639,900	4,183,800	3,827,000
32						5,146,4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개정 2026. 1. 2.>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계급	연구관	연구사
1	2,896,400	2,317,100
2	3,038,400	2,391,800
3	3,180,100	2,477,300
4	3,322,000	2,574,400
5	3,463,400	2,684,300
6	3,668,200	2,816,200
7	3,872,200	2,948,500
8	4,075,900	3,080,700
9	4,278,800	3,211,900
10	4,481,600	3,343,400
11	4,662,200	3,442,300
12	4,842,600	3,541,300
13	5,020,600	3,640,700
14	5,200,000	3,739,800
15	5,377,800	3,838,500
16	5,550,900	3,917,400
17	5,723,200	3,995,500
18	5,896,100	4,074,600
19	6,067,000	4,152,500
20	6,238,400	4,231,200
21	6,381,100	4,306,800
22	6,522,800	4,383,100
23	6,665,000	4,459,100
24	6,806,500	4,534,900
25	6,948,400	4,610,300
26	7,067,000	4,662,700
27	7,187,000	4,714,800
28	7,306,100	4,767,300
29	7,424,400	4,817,800
30	7,543,300	4,869,900
31	7,635,200	4,921,800
32	7,727,300	4,967,300
33		5,012,900
34		5,057,600
35		5,102,700
36		5,144,6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개정 2026. 1. 2.>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896,400	2,162,100
2	3,036,700	2,231,300
3	3,176,300	2,307,600
4	3,316,600	2,391,700
5	3,454,600	2,484,100
6	3,638,500	2,585,700
7	3,822,500	2,706,300
8	4,006,900	2,826,000
9	4,190,200	2,945,900
10	4,372,400	3,065,400
11	4,537,300	3,168,300
12	4,701,200	3,270,800
13	4,865,100	3,372,800
14	5,028,200	3,474,300
15	5,190,200	3,574,600
16	5,333,100	3,665,100
17	5,478,300	3,755,400
18	5,622,000	3,844,800
19	5,764,400	3,934,000
20	5,906,500	4,023,700
21	6,033,200	4,106,700
22	6,160,500	4,190,200
23	6,287,000	4,272,700
24	6,413,400	4,355,300
25	6,540,000	4,437,400
26	6,650,700	4,499,400
27	6,760,600	4,562,200
28	6,871,300	4,625,000
29	6,980,800	4,687,500
30	7,092,100	4,749,000
31	7,166,500	4,802,900
32	7,241,800	4,849,900
33		4,897,000
34		4,943,700
35		4,990,600
36		5,034,2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7] 삭제 <1989.6.17>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개정 2026. 1. 2.>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434,000	3,197,100	2,978,700	2,769,500	2,570,600	2,389,500	2,317,100	2,162,100	2,133,000
2	3,564,000	3,322,500	3,099,600	2,887,900	2,685,200	2,500,700	2,367,900	2,195,700	2,147,600
3	3,699,200	3,452,400	3,223,600	3,008,500	2,803,300	2,615,200	2,423,800	2,233,800	2,168,000
4	3,840,400	3,587,400	3,349,300	3,132,300	2,923,900	2,732,400	2,485,200	2,276,600	2,194,000
5	3,985,900	3,726,500	3,477,400	3,256,300	3,048,000	2,853,100	2,567,100	2,331,700	2,226,100
6	4,134,700	3,868,600	3,610,100	3,381,700	3,172,200	2,977,100	2,682,600	2,412,900	2,264,600
7	4,288,400	4,013,000	3,743,800	3,506,500	3,296,800	3,101,500	2,798,700	2,519,600	2,309,900
8	4,443,500	4,160,200	3,880,800	3,632,200	3,421,600	3,226,200	2,915,800	2,622,400	2,367,500
9	4,599,500	4,307,700	4,018,100	3,758,600	3,547,600	3,351,300	3,027,100	2,720,300	2,456,700
10	4,756,200	4,456,200	4,155,300	3,885,400	3,673,700	3,468,700	3,133,300	2,813,000	2,542,700
11	4,914,100	4,604,200	4,292,600	4,012,900	3,791,900	3,580,000	3,233,400	2,902,700	2,624,400
12	5,063,700	4,737,500	4,417,700	4,135,300	3,906,500	3,689,600	3,331,900	2,990,300	2,705,900
13	5,203,300	4,861,700	4,533,600	4,249,600	4,015,500	3,792,700	3,425,300	3,074,500	2,783,900
14	5,333,000	4,979,300	4,644,500	4,357,600	4,118,600	3,890,000	3,514,500	3,155,100	2,859,800
15	5,453,400	5,088,500	4,747,000	4,459,500	4,216,400	3,983,600	3,599,900	3,232,400	2,932,300
16	5,565,600	5,192,100	4,844,600	4,556,300	4,308,700	4,071,300	3,680,600	3,307,100	3,002,300
17	5,669,300	5,287,800	4,936,500	4,647,300	4,396,300	4,154,900	3,758,100	3,376,800	3,070,800
18	5,765,400	5,378,100	5,023,500	4,733,200	4,478,500	4,234,100	3,832,100	3,444,300	3,134,500
19	5,855,100	5,462,300	5,105,200	4,813,600	4,556,000	4,309,100	3,902,000	3,509,300	3,197,300
20	5,938,200	5,541,800	5,182,000	4,890,300	4,630,300	4,379,600	3,968,400	3,571,100	3,257,000
21	6,015,800	5,615,000	5,254,500	4,961,900	4,700,100	4,447,600	4,031,800	3,630,200	3,313,400
22	6,086,900	5,684,800	5,322,400	5,029,400	4,764,900	4,511,500	4,091,600	3,686,900	3,367,600
23	6,146,100	5,749,800	5,387,200	5,092,800	4,826,800	4,571,300	4,149,600	3,740,800	3,419,200
24	6,201,400	5,804,300	5,446,900	5,153,300	4,885,800	4,628,500	4,204,500	3,792,900	3,468,800
25		5,855,300	5,497,700	5,209,600	4,941,800	4,682,800	4,256,500	3,842,300	3,516,000
26			5,545,600	5,256,400	4,993,500	4,734,100	4,306,500	3,890,300	3,558,700
27			5,591,500	5,300,800	5,037,600	4,782,800	4,348,700	3,930,200	3,595,600
28				5,343,800	5,079,400	4,823,700	4,388,000	3,968,700	3,631,000
29				5,383,100	5,118,200	4,861,900	4,426,100	4,005,100	3,665,100
30					5,156,000	4,899,800	4,462,400	4,040,300	3,698,400
31						4,934,800	4,496,500	4,074,600	3,731,100
32						4,967,8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삭제 <2011.7.4>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 삭제 <2011.7.4>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개정 2026. 1. 2.>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1	4,905,100	4,563,500	4,167,700	3,619,000	3,126,100	2,698,600	2,507,700	2,472,100	2,215,300	2,133,000
2	5,068,300	4,719,000	4,307,600	3,751,300	3,243,100	2,814,700	2,567,700	2,493,100	2,245,500	2,155,600
3	5,235,600	4,876,600	4,451,700	3,885,800	3,364,700	2,933,000	2,640,000	2,539,000	2,290,400	2,187,500
4	5,406,700	5,035,600	4,596,800	4,023,500	3,491,000	3,054,900	2,758,200	2,610,800	2,350,700	2,229,200
5	5,582,000	5,197,000	4,744,300	4,163,000	3,620,600	3,178,700	2,879,500	2,710,600	2,427,500	2,281,100
6	5,759,400	5,358,400	4,893,200	4,304,000	3,752,700	3,305,500	3,001,800	2,826,000	2,522,200	2,343,900
7	5,939,400	5,522,100	5,044,000	4,446,100	3,887,000	3,435,100	3,125,400	2,942,100	2,628,900	2,418,400
8	6,120,900	5,685,500	5,195,000	4,588,900	4,022,900	3,565,700	3,249,000	3,059,100	2,731,700	2,505,600
9	6,305,100	5,850,100	5,347,400	4,732,300	4,159,300	3,697,600	3,373,300	3,170,300	2,829,500	2,585,100
10	6,490,300	6,014,400	5,499,600	4,875,500	4,296,500	3,820,800	3,490,700	3,276,600	2,922,200	2,680,900
11	6,675,000	6,179,600	5,652,200	5,019,900	4,425,000	3,937,600	3,600,800	3,376,800	3,012,000	2,762,900
12	6,866,100	6,350,500	5,810,200	5,155,900	4,548,700	4,051,200	3,709,400	3,475,200	3,099,500	2,844,100
13	7,058,200	6,522,400	5,957,200	5,282,900	4,666,100	4,158,400	3,812,400	3,568,600	3,183,800	2,922,200
14	7,250,800	6,678,100	6,093,600	5,401,600	4,775,600	4,261,000	3,909,100	3,657,900	3,264,300	2,998,100
15	7,419,100	6,821,500	6,219,400	5,513,300	4,879,100	4,357,000	4,002,700	3,743,200	3,341,600	3,070,500
16	7,568,600	6,952,900	6,336,500	5,618,700	4,976,500	4,449,500	4,090,100	3,823,900	3,416,300	3,140,600
17	7,701,100	7,073,900	6,445,400	5,716,500	5,068,100	4,535,400	4,173,700	3,901,400	3,486,000	3,209,100
18	7,819,100	7,184,600	6,546,700	5,807,900	5,154,500	4,618,100	4,252,700	3,975,500	3,553,600	3,273,000
19	7,924,800	7,286,800	6,640,300	5,893,300	5,236,000	4,695,400	4,327,900	4,045,300	3,618,500	3,335,700
20	8,019,600	7,380,000	6,728,100	5,973,100	5,312,400	4,768,800	4,399,300	4,111,700	3,680,400	3,395,400
21	8,106,800	7,465,300	6,809,300	6,047,600	5,384,200	4,837,900	4,467,200	4,175,200	3,739,400	3,451,600
22	8,184,600	7,543,500	6,884,500	6,117,500	5,451,700	4,904,700	4,531,200	4,235,000	3,796,100	3,506,000
23	8,250,400	7,615,000	6,953,800	6,183,200	5,515,300	4,965,900	4,592,000	4,293,000	3,850,000	3,557,600
24		7,673,600	7,018,800	6,245,100	5,574,900	5,025,200	4,650,300	4,347,900	3,902,200	3,607,200
25		7,729,500	7,071,800	6,301,600	5,631,200	5,081,100	4,705,700	4,399,900	3,951,600	3,654,200
26			7,122,700	6,349,600	5,684,200	5,134,000	4,756,500	4,449,900	3,999,600	3,697,100
27			7,169,800	6,393,700	5,728,100	5,183,300	4,800,000	4,492,000	4,039,500	3,733,900
28				6,436,100	5,770,400	5,225,600	4,841,900	4,531,300	4,078,000	3,769,300
29					5,809,200	5,264,800	4,881,500	4,569,300	4,114,300	3,803,400
30					5,846,900	5,303,200	4,918,600	4,605,800	4,149,600	3,836,800
31						5,338,600	4,954,300	4,639,900	4,183,800	3,869,200
32						5,372,5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2.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6. 1.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41,500	21	3,600,700
2	2,103,300	22	3,733,600
3	2,166,000	23	3,865,300
4	2,228,500	24	3,997,500
5	2,291,500	25	4,129,400
6	2,354,400	26	4,261,900
7	2,416,600	27	4,400,100
8	2,478,600	28	4,538,000
9	2,495,600	29	4,682,100
10	2,516,700	30	4,826,800
11	2,538,300	31	4,971,100
12	2,585,900	32	5,115,200
13	2,657,500	33	5,261,600
14	2,773,700	34	5,407,500
15	2,889,700	35	5,553,600
16	3,006,200	36	5,699,100
17	3,121,000	37	5,825,700
18	3,241,500	38	5,952,500
19	3,361,200	39	6,079,500
20	3,481,000	40	6,205,7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6. 2. 27.>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379,500	21	4,681,500
2	2,454,300	22	4,825,500
3	2,529,700	23	5,013,100
4	2,604,500	24	5,200,300
5	2,679,900	25	5,387,500
6	2,762,500	26	5,574,300
7	2,844,900	27	5,761,100
8	2,927,700	28	5,948,000
9	3,051,900	29	6,090,300
10	3,176,100	30	6,232,600
11	3,300,500	31	6,374,700
12	3,424,200	32	6,516,900
13	3,547,700	33	6,659,200
14	3,671,200		
15	3,816,100		
16	3,960,900		
17	4,105,100		
18	4,249,300		
19	4,394,200		
20	4,537,6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447,300원
   나.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618,800원
2.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43,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6. 1. 2.>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6,099,000	5,753,700	4,671,200	4,105,800	3,382,700	2,805,000	2,306,700	2,150,400	2,544,300	3,568,100	2,468,000	2,181,500	2,133,000
2	6,249,900	5,903,200	4,828,300	4,262,800	3,536,000	2,922,900	2,385,000	2,240,400	2,665,400	3,682,100	2,577,500	2,252,000	2,154,300
3	6,400,800	6,052,700	4,985,400	4,419,800	3,689,300	3,040,800	2,463,300	2,330,400	2,786,500	3,796,100	2,687,000	2,322,500	2,175,600
4	6,551,700	6,202,200	5,142,500	4,576,800	3,842,600	3,185,400	2,541,600		2,907,600	3,910,100	2,796,500	2,393,000	2,196,900
5	6,702,600	6,351,700	5,299,600	4,733,800	3,995,900	3,330,000	2,619,900		3,028,700	4,024,100	2,906,000	2,463,500	2,218,200
6	6,853,500	6,501,200	5,456,700	4,890,800	4,149,200	3,474,600	2,741,300		3,149,800	4,138,100	3,015,500	2,534,000	2,249,100
7	7,004,400	6,650,700	5,613,800	5,047,800	4,302,500	3,619,200	2,862,700		3,270,900	4,252,100	3,125,000	2,604,500	2,280,000
8	7,155,300	6,800,200	5,770,900	5,204,800	4,455,800	3,763,800			3,392,000	4,366,100	3,234,500	2,706,900	2,310,900
9	7,306,200	6,949,700	5,928,000	5,361,800	4,609,100	3,908,400			3,513,100	4,480,100	3,344,000	2,809,300	2,341,800
10	7,457,100	7,099,200	6,085,100	5,518,800	4,762,400	4,053,000			3,634,200	4,594,100	3,453,500	2,911,700	2,372,700
11	7,608,000	7,248,700	6,242,200	5,675,800	4,915,700	4,197,600			3,755,300	4,708,100	3,563,000	3,014,100	
12	7,758,900	7,398,200	6,399,300	5,832,800	5,069,000	4,342,200			3,876,400	4,822,100	3,672,500	3,116,500	
13	7,909,800	7,547,700	6,556,400	5,989,800	5,222,300				3,997,500	4,936,100	3,782,000	3,218,900	
14			6,713,500	6,146,800	5,375,600				4,118,600	5,050,100	3,891,500	3,321,300	
15			6,870,600	6,303,800					4,239,700	5,164,100	4,001,000	3,423,700	
16									4,360,800		4,110,500	3,526,100	
17									4,481,900		4,220,000	3,628,500	
18									4,603,000		4,329,500	3,730,900	
19									4,724,100		4,439,000	3,833,300	
20									4,845,200			3,935,700	
21									4,966,300			4,038,100	
22									5,087,400			4,140,500	
23									5,208,500				
24									5,329,600				
25									5,450,700				
26									5,571,800				
27									5,692,900				

비고

1. 대장: 9,618,800원, 중장: 9,447,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3. 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500,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650,0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500,000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750,000원, 2학년 900,000원, 3학년 1,200,000원
6. 병: 이등병 750,000원, 일등병 900,000원, 상등병 1,200,000원, 병장 1,500,000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 <개정 2026. 1. 2.>

헌법연구관 ·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9,586,300
15	9,042,400
14	8,501,100
13	8,015,800
12	7,606,000
11	7,408,400
10	7,176,100
9	6,787,700
8	6,325,100
7	5,926,200
6	5,551,500
5	5,190,400
4	4,826,500
3	4,475,100
2	4,124,400
1	3,660,3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개정 2024. 1. 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 8 조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 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그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이 표에서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2)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별표 17에 따라 경력을 연구관·연구 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9에 따라 경력을 지도관·지도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 지도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4. 삭제 <2011.7.4>		
5. 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6.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7.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합산·조정한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으로 진급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호봉으로 한다. 1. 「군인보수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군인보수법」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군인보수법」 제9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7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의2] <개정 2013.12.11>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실제경력		간주경력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및 별표 4(공안업무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 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 7급 공무원의 8급 이하 경력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2.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기능1급 이하 기능5급 이상 공무원의 기능6급 이하 경력 기능6급 공무원의 기능7급 이하 경력 기능7급 공무원의 기능8급 이하 경력 기능8급 공무원의 기능9급 이하 경력 기능9급 공무원의 기능10급 경력	기능6급 경력 기능7급 경력 기능8급 경력 기능9급 경력 기능9급 경력
3.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상 공무원의 경감 이하 경력 소방총감 이하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경력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위 이하 경력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 이하 경력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 이하 경력	경감 경력 소방경 경력 경위·소방위 경력 경사·소방장 경력 경장·소방교 경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개정 2026. 7. 30.>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3)의 경력: 100퍼센트 ·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9)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9)의 경력: 100퍼센트 ·9)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 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호가목4)에 따른 경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개정 2026. 7. 30.>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 경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만 해당한다)·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사경	1) 전문·특수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50퍼센트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1986년 이후의 지도 분야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

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8] 삭제 <1990.1.15>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9] <개정 2026. 7. 30.>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 · 경영 · 연구 ·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마) 국 ·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 · 지도직 · 특정직 ·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 · 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전문 · 특수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50퍼센트
	다) 법인 · 단체 ·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 분야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병역법」에 따른 예술 · 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 · 경영 · 연구 ·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국 ·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0] 삭제 <2000.1.8>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1] 삭제 <1990.1.15>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개정 2025. 1.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은 제외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이내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80퍼센트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이내
	3)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4)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70퍼센트 이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60퍼센트 이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10)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40퍼센트 이내
	11)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0퍼센트 이내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개정 2021. 1. 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산 정 공 식
(총수학연수－16)＋가산연수＝

비고

1. 이 표 중 총수학연수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말하며, 법정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동등 자격과 제5호의 구 학력대비표에 따른 동등 자격을 포함한다.
2.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2년
      2)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3) 1), 2) 외의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교사 양성기관의 1년 이상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구 관립학교 본과 3학년 및 같은 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며, 구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
5. 구 학력대비표

해당학력	구학력
사범대학 졸업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대학 졸업	1. 고등사범학교(4년제) 졸업 2. 대학고등사범부(4년제) 졸업
2년제 교육대학 졸업	1. 제1종 교원시험 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2년제 사범대학 졸업	1. 고등사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2. 1945년 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3. 1963년 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전문대학 졸업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2.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 합격 3.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이상 2년 미만 수료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5. 관립사범학교 연습과 1년 수료 6. 1963년 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사범학교 졸업	1. 제2종 교원시험 합격 2.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미만 수료
고등학교 졸업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2. 제3종 교원시험 합격 3.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고등학교 1년 수료	1945년 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6. 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 <개정 2022. 5. 9.>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구 분 \ 학력별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대학 교수, 전문대학 교수	−10	−13
대학 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 7	−10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 4	− 7
대학 조교, 전문대학 조교	0	− 2

비고

1. 이 표 중 (+)는 가산연수를, (−)는 감산연수를 의미한다.
2. 조교 외의 대학 교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람의 초임급 산정을 할 때 대학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는 15년을,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학 부교수는 12년을, 대학 조교수와 전문대학 조교수는 9년을 각각 감산한다.
3.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과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 부교수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초등학교 졸업자는 17년을, 중학교 졸업자는 14년을, 고등학교 졸업자는 11년을 각각 감산한다.
4. 이 표의 학력에는 별표 23에 규정된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
5. 대학에는 교육대학(종전의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종전의 개방대학을 포함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포함하고,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6.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이 표에 표시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개정 2009.3.3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 격 별	기산호봉	비 고
정교사(1급)	9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정교사(2급)	8	
준교사	5	
전문상담교사(1급)	9	
전문상담교사(2급)	8	
사서교사(1급)	9	
사서교사(2급)	8	
실기교사	5	
보건교사(1급)	9	
보건교사(2급)	8	
영양교사(1급)	9	
영양교사(2급)	8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6] <개정 2012.2.28>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

대학·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
교수	15
부교수, 장학관, 교육연구관	12
조교수	9
조교	2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개정 2014.11.19.>

군인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호봉 획정 대상별 환산율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가. 군인경력	1)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2)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8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3)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8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4)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8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 「군인보수법」 제9조제4호에 따른 해당 신분의 임용 전 군 교육기간. 다만, 환산된 경력연수는 해당 신분의 경력으로 본다.	5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나. 군인 외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80퍼센트	90퍼센트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 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6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
다. 유사경력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6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 <개정 2018. 1. 18.>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가.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나.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 봉급표)를 적용받고 전보하는 공무원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1	1	1	1	14	9	14	9	27	19	27	19
2	1	2	1	15	10	15	10	28	20	28	20
3	1	3	1	16	10	16	10	29	21	29	21
4	1	4	1	17	11	17	11	30	22	30	22
5	2	5	2	18	12	18	12	31	23	31	23
6	3	6	3	19	12	19	13	32	24	32	24
7	4	7	4	20	13	20	14	33	25	33	25
8	5	8	5	21	14	21	15	34	25	34	25
9	5	9	6	22	15	22	16	35	26	35	26
10	6	10	7	23	16	23	16	36	27	36	27
11	7	11	7	24	17	24	17	37	28	37	28
12	8	12	8	25	17	25	18	38	29	38	29
13	8	13	8	26	18	26	19				

다.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1	1	13	9	25	15

2	1	14	9	26	15
3	2	15	10	27	16
4	3	16	10	28	16
5	4	17	11	29	17
6	5	18	11	30	17
7	6	19	12	31	18
8	6	20	12	32	18
9	7	21	13	33	19
10	7	22	13	34	19
11	8	23	14	35	20
12	8	24	14	36	20

라.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1	1	13	7	25	14
2	1	14	8	26	14
3	1	15	9	27	15
4	2	16	9	28	15
5	3	17	10	29	16
6	3	18	10	30	16
7	4	19	11	31	17
8	5	20	11	32	17
9	5	21	12	33	18
10	6	22	12	34	18
11	6	23	13	35	19
12	7	24	13	36	19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이 획정된 공무원이 승진 전 계급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3.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가.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또는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1) 1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
2) 2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
3) 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
4) 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

나. 다군 8호봉·12호봉·15호봉·18호봉·24호봉·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12호봉·15호봉·22호봉·26호봉·3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

다. 다군 9호봉·13호봉·16호봉·19호봉·25호봉·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13호봉·16호봉·23호봉·27호봉·3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나.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9] <개정 2017. 1. 6.>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국가정보원 전문관
• 6호봉에서 7호봉으로 승급할 때 •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승급할 때 • 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할 때 •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승급할 때 • 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할 때 • 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승급할 때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개정 2022. 5. 9.>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보수 지급일	기관명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17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
20일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일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개정 2026. 1.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3,190,5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628,6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548,8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78,3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46,3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3] <개정 2013.12.16>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액

지급 시기	지 급 액
11월	·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봉급월액(봉급표상 봉급월액이 6,332,700원 및 6,219,9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전문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구 분		산 입 방 식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전년도 봉급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별표 32, 별표 33의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가목,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 × 0.53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별표 33의 제3호나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8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 <개정 2026. 1. 2.>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2.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고: 별표 3의 비고 각 호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 및 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 <개정 2026. 7. 7.>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71,772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54,932
국무총리	210,690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52,696
부총리 및 감사원장	159,401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50,467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개정 2026. 9. 29.>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33,504	88,993
2급(상당) 공무원	123,385	82,217
3급(상당) 공무원	114,705	77,054
4급(상당) 공무원	104,933	60,991
5급(상당) 공무원	86,520	42,099

비고

1.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8,426천원으로 한다.
4.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7,125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114,705	57,125
전문관 공무원	86,520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101,104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24,015	42,099
지도관 공무원	114,661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 · 소방정감 공무원	133,504	88,993
치안감 · 소방감 공무원	123,385	82,217
경무관 · 소방준감 공무원	114,705	77,054
총경 · 소방정 공무원	104,933	63,274
경정 · 소방령 공무원	86,520	43,492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31,416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9,300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0,277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2,072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0,490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3,801	53,316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1,945	41,288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8,922	33,075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8,820	26,945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8,557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69,663
나	86,606	57,708
다	70,782	50,272
라	62,096	44,296
마	54,67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개정 2025. 1. 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연봉등급 / 직무분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일반직공무원 등(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공무원	12등급	10등급 · 11등급	9등급	6등급 ~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구직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공무원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도사			
전문 경력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전문 경력관 나군		전문 경력관 다군	
경찰 공무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 공무원	소방 정감	소방감	소 방 준 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우정 1급·2급	우정 3급~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비고: 위의 연봉등급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분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등급에 걸쳐 있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의2] <신설 2021. 1. 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S등급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대상인원 및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39조제4항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5] <개정 2026. 1. 2.>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33,504	88,993
12등급	133,504	85,910
11등급	123,385	82,217
10등급	118,482	79,586
9등급	114,705	77,054
8등급	105,345	70,767
7등급	102,007	68,528
6등급	101,353	57,125
5등급	86,520	42,099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6] <신설 2001.11.13>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명)	승격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7배수
2	결원 1인당 5배수
3 ~ 5	결원 1인당 4배수
6 ~ 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20인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35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7] <개정 2026. 1. 2.>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6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8,909	4,397	5,375	5,327	6,545	7,827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8] <개정 2026. 1. 2.>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121,592	78,266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9] <개정 2026. 1. 2.>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109,572 ~ 78,266	133,050 ~ 78,266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78,266천원부터 156,529천원까지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0] <개정 2020. 1. 7.>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

1.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제외)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가 등 급	나 등 급
연간금액	13,000	7,000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가 등 급	나 등 급
연간금액	6,100	4,6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1] <신설 2021. 1. 5.>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

평가등급(지급등급)	지급액
매우우수	성과연봉 기준액의 1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우수	성과연봉 기준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보통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미흡 및 매우미흡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86호, 2026. 3. 1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 044 - 201 - 84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1. 10.>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평가 시기)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제1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1. 8.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의2(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소속 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6조의3(평가자의 교육 등) ①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개정 2008. 5. 21.>

제7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ㆍ전문관에 대한 근무성적평

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7. 1. 10., 2026. 6.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의2(평가항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조직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평가 방법)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평가 대상 공무원의 자질·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④ 제3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신설 2015. 12. 30.>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흡 및 매우미흡의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평가의 예외)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소속 장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파견,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평가 단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부전문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1., 2026. 6.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9.,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신설 2015. 12. 30.>

③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④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⑤ 제7조 단서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③ 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개정 2015. 12. 30.>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5.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原)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개정 2013. 12. 11.>

⑦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개정 2015. 12. 30.>

1. 같은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2.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다수의 세부 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3.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결과에 따라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⑥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제20조(성과면담 등)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③ 삭제<2009. 12. 31.>

④ 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0.>

⑥ 소속 장관은 평가자로 하여금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면담 및 의견교환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14. 11. 19., 2015. 12. 30.>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개정 2013. 12. 30.>

1. 평가자
2. 확인자
3.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평가 단위 확인자”라 한다)

② 삭제<2026. 6. 23.>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 12. 3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 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단위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⑥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절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13. 12. 11.>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6.>
②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개정 2013. 12. 16.>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목표달성도를 직접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받은 평가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12. 11.]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6.>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13. 12. 11.]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12. 31.]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12. 31.]

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6. 3. 17.>

1.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12. 30., 2014. 11. 19.>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8조(다면평가)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개정 2009. 12. 31.>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2013. 12. 11.>

③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공무원 또는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요구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본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과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이상으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 이하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2015. 12. 30., 2022. 12. 27., 2024. 12. 24.>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이하 우정7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8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12. 11.>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12. 31.]

부칙 <제19187호,2005.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경력평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3조 내지 제27조ㆍ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종전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경력평정점ㆍ훈련성적평정점 및 가점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정점을 반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ㆍ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를 "경력평정에"로 한다.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평정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지 <241>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로 한다.

⑪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787호,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중 “ 성과계약평가 ”를 각각 “ 성과계약등 평가 ”로 한다.

부칙 <제21945호,200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01호,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1&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20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받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 점수, 근무성적평가 점수, 경력평정점 및 가점평정점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이하 "승진임용등"이라 한다)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전직임용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항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전담직위 해제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전담직위 해제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제1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039호,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면담 등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인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도를 근무성적평정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71호,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장관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동일한 전문직위에서의 총 근무기간에 이 영 시행 전의 해당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819호,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자의 교육 및 성과면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및 제20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방식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16년 7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373호,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49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3년 7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09호,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1월 31일 및 202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2026년 1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186호,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관련 업무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장관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기간에 이 영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부칙 <제36444호,2026.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89호,2026. 6. 3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 전문직공무원 ”을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ㆍ전문관 ”으로 한다.

제12조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을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부전문관 ”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 - 201 - 8399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 수당등 ” 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 재외공무원 ”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 8.>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상여수당 <개정 1993. 12. 31.>

제5조 삭제 <1993. 12. 31.>

제5조의2 삭제 <1991. 12. 31.>

제6조 삭제 <2006. 1. 12.>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2020. 6. 23., 2025. 7. 7., 2026. 9. 29.>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3 삭제 <1992. 12. 31.>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2024. 8. 13.>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7. 1. 6.>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text{(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4. 1. 5.>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 5.>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1. 8., 2023. 9. 19., 2026. 1. 2.>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9. 19.>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6. 1. 8., 2023. 9. 19.>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23. 9. 19.>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8., 2023. 9. 19.>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⑫ 제11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1. 1. 5., 2023. 9.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8.]

제8조 삭제 <2001. 1. 4.>

제9조 삭제 <2001. 1. 4.>

제3장 가계보전수당 <개정 1988. 12. 31.>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개정 2010. 7. 26.,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0. 1. 7., 2010. 5. 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1. 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 1. 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2010. 1. 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0. 1. 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② 재외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1. 1. 5.>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해당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학비를 이미 낸 후 해당 취학 자녀가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신설 2021. 1. 5.>

⑥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2021. 1. 5.>

⑦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1. 7., 2021. 1. 5.>

⑧ 소속 장관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무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5.>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8. 25., 2022. 1. 4., 2024. 1. 5.,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2022. 1. 4.>

③ 삭제<2025. 1. 3.>

④ 삭제<2025. 1. 3.>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2024. 6. 28., 2025. 1. 3., 2026. 1. 2., 2026. 9. 22.>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 12., 2025. 1. 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2., 2017. 9. 5., 2025. 1. 3., 2026. 9. 22.>

⑨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 12., 2025. 1. 3.>

[전문개정 2011. 1. 10.]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6. 11. 29., 2024. 8. 13.>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ㆍ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4. 8. 13., 2025. 1. 3.>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개정 2005. 2. 25.>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10., 2020. 6. 23., 2020. 8. 25., 2024. 8. 13., 2025. 1. 3., 2026. 1. 2.>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6. 23.>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text{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 시간}}{40\text{시간}}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전문개정 2016. 1. 8.]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개정 1998. 12. 31.>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5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라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위, 소위, 중사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5. 1. 3., 2026. 1. 2.>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

다.<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2026. 9. 22.>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2., 2026. 9.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2026. 9. 22.>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점검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3. 1. 6., 2026. 9.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2. 1. 6.>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 9.]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2. 1. 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8. 22.]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등)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2026. 1. 2.>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3. 1. 9., 2017. 1. 6., 2021. 1. 5.>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9.>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중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3의2에 따라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초과근무보전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상한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2026. 9. 22.>

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
2. 그 밖에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⑤ 제4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을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26. 9. 2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6. 9.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26. 9. 22.]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신설 2001. 1. 4.>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2026. 1. 2.>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2 삭제 <2011. 1. 10.>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 지급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4 삭제 <2011. 1. 10.>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

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2., 2016. 1. 8., 2020. 3. 10., 2020. 12. 31., 2024. 1. 5., 2026. 9. 29.>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2. 1. 6., 2016.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2017. 1. 6.,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11. 1. 10.>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되,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호 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0. 1. 7., 2019. 1. 8., 2026. 1. 2.>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0. 7. 26., 2010. 10. 18., 2013. 3. 23., 2013. 12. 11., 2014. 1. 8., 2014. 7. 16., 2017. 1. 6., 2017. 7. 26., 2019. 1. 8., 2020. 3. 10., 2020. 8. 25., 2021. 1. 5., 2021. 3. 30., 2024. 1. 5., 2025. 1. 3., 2025. 10. 1., 2026. 9. 22.>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

3호바목의 3)(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지식재산처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ㆍ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2010. 1. 7.>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11)다)(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8)(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3. 별표 11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마목4)의 수당

14. 별표 11 제3호바목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바목11)가)(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별표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1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1. 1. 10.>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 근무자가 비행임무를 목적으로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2)·3)란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9. 3. 31., 2010. 1. 7., 2010. 7. 26.,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1. 1. 5., 2025. 1. 3.>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1. 1. 10., 2017. 1. 6., 2020. 1.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0. 1. 7.>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 12. 11., 2020. 8. 25.>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 1. 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1. 1. 10., 2022. 1. 4.>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신설 2017. 1. 6., 2020. 1. 7.>

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4.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8. 29.>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11. 8.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1. 8. 29.]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1. 7. 4.,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5. 1. 12.,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2024. 8. 1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2. 11., 2013. 12. 16., 2020. 6. 23.]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17)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21. 1. 5., 2022. 1. 4., 2024. 1. 5.>

② 삭제<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2. 1. 4.>

[본조신설 2010. 9. 10.]

[제목개정 2013. 12. 11.]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 10.,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24. 1. 5.>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영을 시ㆍ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2023. 9. 19., 2025. 1. 3.>

1.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삭제<2024. 1. 5.>
[본조신설 2020. 3. 10.]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4.]

부칙 <제10957호,1982.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ㆍ소방공무원수당규정ㆍ교육공무원수당규정ㆍ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ㆍ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	월수당지급액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항공수당 지급대상자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2,000원이하	16,000원이하	12,000원이하	10,000원이하
2.통신기술 업무수당			25,000	25,000	22,500	16,000	13,000	10,000

지급대상자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3.해운항만 청인천갑문 관리기술직 공무원			25,000	25,000	22,000	16,000	13,000	10,500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1033호,1983.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 10. 8.>

②삭제 <1983. 7. 1.>

부칙 <제11165호,1983.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ㆍ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3. 10. 8., 1984. 10. 4.>

부칙 <제11246호,1983.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45호,1984.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16호,1984.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09호,1984. 12. 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7호,1985. 8. 12.>(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 중앙교육연수원 "을 "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 "으로, " 학술원 사무국、예술원사무국 "을 " 학、예술원사무국 "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759호,1985. 9.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1848호,1986. 1.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12. 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부칙 <제12027호,1986. 12. 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3호,1987. 4. 1.>(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2187호,1987. 6.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2372호,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499호,1988.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5호,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2734호,1989. 6. 17.>(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 상사 " 를 " 일등상사 · 이등상사 " 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 물리 · " 다음에 " 의무 · " 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 연구 · 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을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 의사 · 약사 · 간호사로서 " 를 "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 " 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의사 " 를 " 의무직렬공무원 " 으로, " 약사 " 를 " 약무직렬공무원 " 으로, " 간호사 " 를 " 간호직렬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 · 별표6 · 별표7 · 별표11 ·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 별표7 · " 을 삭제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할

부칙 <제12903호,1990. 1. 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 · 제15조 내지 제17조 · 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 ·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 · 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910호,1990. 1. 30.>(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 사무관대우로 선발된 " 을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 으로 한다.

부칙 <제13049호,1990. 7.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3188호,1990. 12. 27.>(기상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중앙기상대 " 를 " 기상청 " 으로 한다.

부칙 <제13208호,1990. 12. 31.>(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 " 을 "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 " 으로 한다.

4)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통신、정밀측정、기계、금속、탄약、병기、공병차량、함선、항공、의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제13212호,1990. 12. 31.>(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국방대학원ㆍ사관학교 "를 " 국방대학원ㆍ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 "로 한다.

부칙 <제13224호,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 문교부령 "을 " 교육부령 "으로 한다.

<72>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63호,1991.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0호,1991. 12. 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제13623호,1992. 3. 28.>(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 "를 "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 "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 <제13818호,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3870호,1993. 3. 6.>(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 "을 "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 "으로 한다.

⑤내지 <188>생략

부칙 <제14096호,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 "를 " 장기근속수당의 "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 "를 "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 연 지급액 "을 각각 " 1기분 지급액 "으로 한다.

부칙 <제14204호,1994. 4. 9.>(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군무원란 중 " 일등상사、이등상사 "를 " 원사、상사 "로 한다.

부칙 <제14430호,1994. 12. 19.>(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0>생략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경제기획원장관 "을 "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 2, 5호 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 경제기획원장관 "을 "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 경제기획원장관 "을 "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한다.

<272>내지 <327>생략

부칙 <제14503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 장기근속수당 " 을 "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 장기근속수당 " 을 "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장기근속수당 " 을 "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부칙 <제14548호,1995. 3. 23.>(소년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 소년감별소 " 를 " 소년분류심사원 " 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4856호,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4920호,1996. 2. 22.>(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1(생략

2)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별표 11 제2호나목、바목、사목 및 별표 13중 " 국민학교 " 를 각각 " 초등학교 " 로 한다.

2! 내지3@ 생략

부칙 <제14997호,1996.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35호,1996. 8. 8.>(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 내무부장관 " 을 각각 "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 9라) 및 을종란 (나)중 " 해운항만청 " 을 각각 " 해양수산부 " 로 하고, 동표의 제12호 갑종란(다)중 " 해양경찰대 " 를 " 해양경찰청 " 으로 한다.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중 " 수산청、해운항만청、수로국 " 을 " 해양수산부 " 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수산청 " 을 " 해양수산부 " 로 하며, 동표의 제4호바목중 지급대상란중 " 농림수산부 " 를 " 농림부 " 로 한다.

⑩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46호,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1호,1997. 12. 27.>(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2) 단서중 "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 " 을 " 국사편찬위원회 " 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제15690호,1998. 2. 2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 전문직공무원규정 "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 비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3 지급대상란중 " 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15805호,1998. 6.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구분 \ 해당공무원	기말수당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기말수당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를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1급 내지 3급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적용받는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특1급 외교직공무원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비고란중 제1호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제외한다)·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1급 내지 3급 공무원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적용을 받는			전원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특3호봉·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1급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대장·중장	·소장 내지 중령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부칙 <제15994호,1998. 12. 31.>(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 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 "를 각각 " 사관학교 "로 한다.

부칙 <제16078호,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대상공무원	지급액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ㆍ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ㆍ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ㆍ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ㆍ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ㆍ중장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 공무원 ㆍ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ㆍ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ㆍ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기말수당액의 92.5퍼센트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대령	

부칙 <제16211호,1999. 3. 31.>(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내지2*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109>생략

부칙 <제16626호,1999. 12. 28.>(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제16690호,2000. 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6785호,2000. 4. 18.>(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 를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 " 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 "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 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7104호,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 을 “ 정근수당 ” 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 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 를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 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부칙 <제17108호,2001. 1. 27.>(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 " 을 "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 " 을 "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7114호,2001. 1. 29.>(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 교육부령 " 을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의 단서 및 제3호 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 교육부 " 를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군인, 경찰ㆍ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본부장 " 을 " 감사원장, 부총리, 장관(급), 처장, 본부장 " 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38호,2001. 2. 27.>(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나목 1)란 및 5)란과 동호 사목 3)란중 " 경찰대학ㆍ세무대학 " 을 각각 " 경찰대학 " 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7158호,2001. 3. 27.>(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 하사관후보생 " 을 " 부사관후보생 "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 하사관 " 을 각각 " 부사관 " 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②내지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356호,2001.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8호,2001. 11. 13.>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83호,2002.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71호,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75호,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0호,2003. 1.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 아목 및 제4호 마목ㆍ사목ㆍ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45호,2003. 3. 25.>(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7993호,2003. 6. 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2호,2004. 1. 9.>(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부칙 <제18219호,2004.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75호,2004.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⑫생략

부칙 <제18672호,2005.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15호,2005. 2. 25.>(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 필수실무요원 ” 을 “ 필수실무관 ” 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 특수근무수당 ” 을 “ 특수근무수당 등 ” 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8815호,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43호,2005. 5. 26.>(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8966호,2005. 7. 27.>(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972호,2005. 7. 27.>(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단기사관학교 "를 각각 " 육군3사관학교 "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9113호,2005. 11. 4.>(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121호,2005.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69호,2006.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22호,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7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4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ㆍ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중 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586호,2006. 6. 30.>(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 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 "를 "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 "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832호,2007.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57호,2007. 2. 1.>(군인사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을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 "으로 한다.

부칙 <제20079호,2007. 6. 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 중 " 축산연구소 "를 " 축산과학원 "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0153호,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 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68호,2007. 7. 18.>(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0380호,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9등급 공무원 중 종전에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9등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20402호,2007. 11. 30.>(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538호,2008.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령 "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 으로,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령으로 " 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 산업자원부 " 를 " 지식경제부 " 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 해양수산부 " 를 각각 " 국토해양부 " 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 정보통신부 " 를 "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 정보통신부 " 를 "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 로, " 과학기술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 과학기술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 " 을 "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 " 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하고, 같은 목의 지

급대상란 5) 중 “ 보건복지부 ”를 “ 보건복지가족부 ”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 국정홍보처 ”를 “ 문화체육관광부 ”로, 같은 란의 3) 중 “ 행정자치부 ”를 “ 행정안전부 ”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 ”를 “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 ”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 해양수산부 ”를 “ 농림수산식품부 ”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 재정경제부 ” 및 “ 국세심판원 ”을 각각 “ 조세심판원 ”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를 “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정보통신부 ”를 각각 “ 지식경제부 ”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 대통령경호실 ”을 “ 대통령실 경호처 ”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 부총리, 감사원장 ”을 “ 감사원장 ”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⑫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875호,2008. 6. 2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897호,2008. 7. 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의 지급대상란 2) 단서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1057호,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의2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7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부칙 <제21078호,2008. 10. 8.>(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243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이 영 시행 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급보조비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급보조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규정된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임용되어 있거나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나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인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재외근무수당 지급표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구분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마지역 | 바지역 | 사지역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계급ㆍ직무등급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3,156	3,350	3,546	3,703	3,897	4,091	4,247	4,404	4,560	4,75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2,758	2,927	3,098	3,235	3,405	3,574	3,711	3,848	3,984	4,154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2,519	2,673	2,830	2,955	3,109	3,264	3,389	3,514	3,639	3,794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2,295	2,436	2,579	2,693	2,834	2,975	3,089	3,203	3,316	3,457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라스팔마스,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이스탄불	스페인,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터키,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계급ㆍ	(싱가포르달러)	(엔)	센다이, 오사카,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포르투칼,	(유로)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직무등급			후쿠오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히로시마(엔)		(유로)		(유로)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로)	
13등급, 고위공무원단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3,856	3,932	4,008	4,163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479	506,395	464,540	2,469	2,962	3,365	3,432	3,498	3,632
나등급), 12등급, 준장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3,068	3,130	3,191	3,314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2,798	2,853	2,908	3,019
마등급), 9등급, 중령									

└──────────────────────┴──────────┴──────┴──────────────┴──────────────┴──────────────┴──────────┴──────────┴──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2)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액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감액(증액)률	2%이상	4%이상	6%이상	8%이상	10%이상	12%이상	14%이상	16%이상	18%이상	20%이상
계급ㆍ직무등급	4%미만	6%미만	8%미만	10%미만	12%미만	14%미만	16%미만	18%미만	20%미만	22%미만
13등급, 고위공무원단	58	117	175	233	291	350	408	466	524	583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1	101	152	203	253	304	355	405	456	507
나등급), 12등급, 준장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6	92	138	184	230	276	323	369	415	461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2	84	126	168	210	251	293	335	377	419
마등급), 9등급, 중령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 또는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었던 공무원 및 2급, 외무공무원 10、11、13등급, 소장、대령의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제1항 재외근무수당지급표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재외근무수당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외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11 제5호가목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란 중 가)의 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21385호,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52호,2009. 4. 30.>(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국가정보원 직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이하 및 전문관

별표 2의3 제2호란 중 “ 지도관 ”을 “ 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 대위 ”를 “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으로 한다.

별표 11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외직	가. 재외	재외공관	1) 지급액
분야	근무	에 근무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수당	하는 재
				외공무원

		구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계급、직무등급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1급, 고위공무원 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2·3급,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고위공무원										
			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급,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5급, 5등급,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대위,										
			국가정보원										

| | | | 전문관 | | | | | | | | |

| | | | 6급, 4등급 | 1,737 | 1,844 | 1,952 | 2,038 | 2,145 | 2,252 | 2,338 | 2,424 | 2,510 | 2,617 |

| | | | 7급, 3등급 | 1,594 | 1,692 | 1,791 | 1,870 | 1,968 | 2,066 | 2,145 | 2,224 | 2,303 | 2,401 |

| | | | | 나) 현지화 지급국(월 지급액)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계급ㆍ	브루나이	요코하마	니가타, 삿포로,		(파운드)	슬로바키아,
				직무등급	(싱가포르달러)	(엔)	센다이, 오사카,		체코, 헝가리,
							후쿠오카,		루마니아,
							히로시마(엔)		불가리아,
									세르비아

| | | | | | | | | (유로) | | | | | | |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 3,800 | 349,756 | 322,224 | 1,712 | 2,053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6급, 4등급 | 3,452 | 319,161 | 292,687 | 1,555 | 1,874 |

| | | | 7급, 3등급 | 3,167 | 291,050 | 268,520 | 1,427 | 1,711 |

| | | | 구분 | 스페인, | 터키, | 아일랜드, | 핀란드 | 덴마크 |

| | | | 계급ㆍ | 라스팔마스, | 이스탄불 | 오스트리아, | (유로) | (크로네) |

| | | | 직무등급 | 그리스, | (유로) | 프랑크푸르트, |

| | | | | 포르투갈, | | 교황청, 벨기에, |

| | | | | 크로아티아 | | 이탈리아, 밀라노, |

					(유로)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급, 고위공무원단	3,611	3,682	3,753	3,898	30,051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2ㆍ3급,	2,933	2,992	3,050	3,167	24,40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1	2,602	2,653	2,753	21,292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28	2,375	2,421	2,513	19,366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구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계급ㆍ	(크로네)	(크로나)	제네바	밴쿠버,	시드니	오클랜드

			직무등급			(프랑)	몬트리올,	(달러)	(달러)
							토론토		
							(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급,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2ㆍ3급,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급, 6등급부터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8등급까지, 소령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구분	대만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중국, 상하이 (런민비)
계급 직무등급	(달러)		(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39,181	25,314	26,43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112,997	20,609	21,519
4급, 6등급부터	98,258	17,877	18,669

			8등급까지, 소령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89,582	16,375	17,099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등급	1급	2급	3급
구분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서반아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 - 인도네시아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두(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덴	월 400달러 이하	월 350달러 이하	월 300달러 이하

| | | | 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 | | |
| | | | 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 |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모국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중등교육을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
			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

			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
			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 | | | | 6급, 4등급 | 31 | 63 | 94 | 126 | 157 | 189 | 220 | 252 | 283 | 315 |
| | | | | 7급, 3등급 | 29 | 57 | 86 | 114 | 143 | 172 | 200 | 229 | 257 | 286 |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감액(증액)률(%) = $\frac{\text{나} - \text{가}}{\text{가}} \times 100$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별표 15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 |
| 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③ 생략

부칙 <제21717호,2009. 9. 8.>(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920호,2009. 12. 30.>(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 "을 "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21980호,201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90호,2010. 7. 21.>(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제18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 공익수의사 "를 각각 " 공중방역수의사 "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22301호,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을 "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현업작업 장려수당 "을 "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 "으로 한다.

부칙 <제22341호,2010. 8. 1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를 각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374호,2010. 9. 1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2454호,2010. 10. 18.>(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 산림항공관리본부 ”를 “ 산림항공본부 ”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 산림항공관리본부 ”를 각각 “ 산림항공본부 ”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 산림항공관리본부 ”를 “ 산림항공본부 ”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 산림항공관리본부 ”를 “ 산림항공본부 ”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2618호,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삭제 <2018. 1. 18.>

부칙 <제22962호,2011. 6. 7.>(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6)의 가) 중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을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로 한다.

③부터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인 (중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직공무원

별표 2의3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2호 전단 중 "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을 " 기능직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 12 지급대상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5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099호,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의5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3499호,2012.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를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로, “ 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각각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 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 ”을 “ 기능6급 및 경감 ”으로 한다.

⑧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48호,2012. 8. 22.>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00호,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 국토해양부 ” 를 각각 “ 해양수산부 ” 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 농림수산식품부 ” 를 “ 농림축산식품부 ” 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 지식경제부 ” 를 “ 산업통상자원부 ” 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 국토해양부 ” 를 “ 국토교통부 ” 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
1.기술 분야	기술정 보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영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5급·기능5급·5등급·경정·소방 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 6급·7급·기능6급·기능7급·3등 ·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 8급·기능8급·2등급·경사·소방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 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 나)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 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 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 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 는 운전장에게는 월 10,000원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 라)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월 50,000원 이하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	월 30,000원 이하

<img id="13447490"></img><img id="13447491"></img><img id="13447492"></img><img id="13447493"></img><img id="13447494"></img><img id="13447535"></img><img id="13447536"></img><img id="13447537"></img><img id="13447538"></img><img id="13447539"></img><img id="13447540"></img><img id="13447523"></img><img id="13447541"></img><img id="13447512"></img><img id="13447513"></img><img id="13447514"></img><img id="13447515"></img><img id="13447516"></img><img id="13447517"></img><img id="13447518"></img><img id="13447519"></img><img id="13447520"></img><img id="13447521"></img><img id="13447522"></img><img id="13447524"></img><img id="13447525"></img><img id="13447526"></img><img id="13447542"></img><img id="13447543"></img>

별표 13의 비고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 감사원장 ” 을 “ 감사원장, 부총리 ” 로, “ 처장, 본부장 ” 을 “ 처장 ” 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1*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18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ㆍ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봉급ㆍ연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ㆍ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1 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11 또는 별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072호,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25469호,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수당 등의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제13호·제14호, 별표 11 제3호라목 및 별표 1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 시、도 ”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1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바목, 같은 호의 을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다목 중 “ 해양경찰청 ”을 각각 “ 국민안전처 ”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자목 중 “ 해양경찰청 정비창 ”을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 안전행정부 ”를 각각 “ 행정자치부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호 라목의 지급대상란의 1),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 같은 호 바목17)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나)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의 나)(2)(나)부터 (라)까지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 관세청、문화재청、해양경찰청 ”을 “ 국민안전처、관세청、문화재청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 해양경찰청 ”을 각각 “ 국민안전처 ”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다) 외의 부분 중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을 “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중 “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을 “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2) 중 “ 해양수산부 소속 해상교통관제사

”를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 중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별표 1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4호 및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48호,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칙 <제26596호,2015. 10. 20.>(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다) 중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를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 전투경찰순경 ”을 “ 의무경찰 ”로 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78호,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목의 개정규정 중 “ 의무경찰대 ”는 2016년 1월 24일까지 “ 전투경찰대 ”로 본다.

부칙 <제27220호,2016. 6. 14.>(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를 “ 징병검사전담의사 ”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 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을 “ 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7258호,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17호,2016. 11. 2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 ”를 각각 “ 경찰대학생 ”으로 한다.

⑤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7620호,2016. 11. 29.>(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 징병검사전담의사 ”를 각각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7703호,2016. 12. 30.>(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 「경찰공무원임용령」 ”을 “ 「경찰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7770호,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의6, 제19조제3항 제16호ㆍ제13항, 별표 11 제3호자목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중 전문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 전문관 ”을 “ 전문직위 전문관 ”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 전문관 ”을 “ 전문직위 전문관 ”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171호,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 미래창조과학부 ”를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나목, 같은 호의 병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중 “ 국민안전처 ”를 각각 “ 해양경찰청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의 3) 중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중 “ 행정자치부 ”를 “ 행정안전부 ”로, “ 미래창조과학부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 ”을 “ 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가) 및 같은 란 7)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및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2)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13)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 공무원란 중 “처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84호,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95호,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7,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중 군무원 직종 변경과 관련된 수당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및 연봉 보전 대상 군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봉급 및 연봉이 보전된 군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 및 연봉을 기준

으로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군무원이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되어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8870호,2018. 5. 8.>(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 을종란의 바목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030호,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⑥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182호,2018. 9. 18.>(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 ”를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450호,2018. 12. 3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를 “ 장애인 ”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479호,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48호,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60호,2020. 6. 9.>(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0호,2020. 6. 2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0803호,2020. 6. 2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 시간제근무 ”를 “ 시간선택제근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 ”를 “ 시간선택제근무 ”로 한다.

부칙 <제30971호,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51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를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를 “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1376호,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59호,2021. 3. 30.>(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1589호,2021. 3. 30.>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67호,2021. 11. 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3호,2021. 12. 16.>(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321호,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32485호,2022. 2. 22.>(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 국립문화재연구소 ”를 “ 국립문화재연구원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2627호,2022. 5. 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 단서 중 “ 교육부 ”를 “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 ”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215호,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33692호,2023. 8. 3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 중 “ 기술직군 ”을 각각 “ 과학기술직군 ”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733호,2023.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34101호,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283호,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05호,2024. 5. 1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가목,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및 차목 중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를 각각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 국립문화재연구원 ”을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대상란 중 “ 문화재청 ”을 “ 국가유산청 ”으로 한다.

③부터2(까지 생략

부칙 <제34618호,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23호,2024. 8. 1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경찰간부후보생 ”을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 경찰간부후보생 ”을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한다.

부칙 <제34825호,2024. 8. 1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 「소방공무원임용령」 ”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182호,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38호,2025. 7.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을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696호,2025. 8. 5.>(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하목 중 “ 유해화학물질 ”을 각각 “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8호,2025. 11. 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 국립통일교육원 ”을 각각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23조제3항, 별표 10 비고 제1호, 별표 10의2 비고, 별표 11 제3호가목3)가)(2), 같은 목 4)가)(2), 같은 호 라목4)나), 같은 호 바목13)나),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별표 13 비고 및 별표 15 비고 제7호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5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15호,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00호,202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88.12.3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 3.>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군인 제외)	군인(하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30,000원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26. 9. 29.>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6급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군인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군무원	6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1급 이하 및 전문관
경호공무원	1급 이하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전체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개정 2018. 1. 18.>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적용대상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	치안정감·소방정감	치안감·소방감	경무관·소방준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	35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30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26호봉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3호봉	12호봉	12호봉	12호봉	9호봉	5호봉	중위 2호봉	20호봉	12호봉	12호봉	5호봉	2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개정 2019. 1. 8.>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 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평가 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하지 않음

비고: 소속 장관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6. 9. 29.>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6급 이하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연구사 ·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공무원	전체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1. 1. 5.>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9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5항 관련)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25. 1. 3.>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table>
<tr><th>적용범위</th><th colspan="2">부양가족</th><th>월 지급액</th><th>비고</th></tr>
<tr><td rowspan="5">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td><td colspan="2">배우자</td><td>40,000원</td><td rowspan="5"></td></tr>
<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td>20,000원</td></tr>
<tr><td rowspan="3">자녀</td><td>첫째자녀</td><td>50,000원</td></tr>
<tr><td>둘째자녀</td><td>80,000원</td></tr>
<tr><td>셋째 이후 자녀</td><td>120,000원</td></tr>
<tr><td rowspan="2">2. 재외공무원</td><td colspan="2">배우자</td><td>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td><td rowspan="2">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가산금) 부양가족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td></tr>
<tr><td colspan="2">자녀 1명당</td><td>60달러</td></tr>
</table>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5. 1. 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국외학교	지급액
1. 유치원(제11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국외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2. 초등학교·중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3. 고등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 위 표의 국외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국외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 또는 전쟁·내전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

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냐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한다.

2. 재외공무원이 위 표가 적용되는 재외공관으로 전임(轉任)할 때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국외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아오던 자녀(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인 자녀로 한정한다)가 학업의 연속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그 국외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며, 해당 자녀가 그 국외학교에 취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국외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거나 취학하게 되는 그 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위 표를 적용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 <개정 2023. 1. 6.>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적용 범위	월 지 급 액	비 고
1. 군 인	160,000원	
2.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22. 1. 4.>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대상 \ 급지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비고 1.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시·도소방공무원 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재외공무원	1·2·3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장·준장·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2,500달러	1,500달러	800달러	
	4·5·6·7급,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2,300달러	1,400달러	720달러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군인·군무원·의무경찰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상사·중사·하사, 3급부터 9급까지의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나군·다군	갑지역·을지역: 60,000원 (가산금: 서해 5개도서 6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 의무경찰	갑지역: 25,000원 을지역: 20,000원 (가산금: 서해 5개도서 4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			
	비고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불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			

	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개정 2021. 1. 5.>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 가지역: 39점 이상 · 나지역: 31점 이상 38점 이하 · 다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 라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미만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 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급구분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가지역 : 31점 이상 · 나지역 : 23점 이상 30점 이하 · 다지역 : 15점 이상 22점 이하 · 라지역 : 14점 이하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 사용	상시 급수 지원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1명		

	10명 이하	4명 이하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말한다),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한다)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과 접촉하는 지역

가 지 역	비무장지대
나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다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라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과 접촉하는 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적과 접촉하는 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개정 2016.1.8.>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본문 관련)

등 급	월 지 급 액
갑 종	60,000원
을 종	50,000원
병 종	40,000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6. 9. 2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 부문	갑종	을종	병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가. 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마.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검색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다.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방제선(「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방제선으로 한정한다)에 승무하여 해양오염 방제작업, 예방 및 단속활동, 선박점검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사체 검사)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연구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시약·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

		·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씨가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관리 등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각 부문	가.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나.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다.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마.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마약류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다.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감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바.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落盤: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절벽·바위산·낭떠러지에서 실족·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공기 급유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	가.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바.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해양경찰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경찰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자.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차.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림토목, 벌목·집재, 조림·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가공, 보호, 양묘 등의 산림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카.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

		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가유산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국가유산 연구 및 보존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항공기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항공기에 동승 근무하는 항공기 검사공무원 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에서 원전 관련 시설 및 방사능 방재분야 안전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파.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대응·복구·조사하는 사람 또는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실험, 연구 및 훈련을 하거나 취급 시설을 점검하여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따르는 사람 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터널 등 국도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너.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더.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에 따른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	사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타.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 협의, 안전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공무원 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위험기상·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관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구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머.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통관우체국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어.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불출석 피고인 등에 대한 소재확인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속영장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비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000원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위 표 제1호 갑종란의 나목
2. 위 표 제5호 갑종란
3. 위 표 제6호 갑종란의 가목·나목·라목 또는 마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개정 2026. 1. 2.>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

등 급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액
갑 종	가. 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다.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라.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7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 종	가.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레펠·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해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훈련한 사람 나.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다. 반기에 6회 이상 재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월봉급액의 5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병 종	가.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라.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바.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사.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아.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3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1.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해군(UDT, SSU)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특수잠수, 심해잠수) 중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2] <개정 2026. 1. 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단서 관련)

등 별	지 급 대 상	월 지 급 액
갑 종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0,000원 이하
을 종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6. 각 부문의 병종란 중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바.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40,000원 이하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개정 2026. 9. 2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 분야	기술정보 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경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과·정보통신경과·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과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 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중기(重機)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	가) 지급액 (1)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2)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3)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4)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5)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과학기술직군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중 6·7급 및 소방경·소방위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9급 및 소방장 이하에게는 월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20,000원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월 50,000원 이하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30,000원 이하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가) 지급액 (1)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3)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1)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25,000원 이하 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15,000원 이하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10,000원 이하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1)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직공무원	가)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나)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감정 및 연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원 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35,000원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원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국립법무병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가) 지급액 (1) 5급(5급 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2) 6급(6급 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나) 지급방법 (1)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6)의 해당자 (가)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나)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원 (2) 7)의 해당자 : 월 20,000원 (3) 8)의 해당자 (가)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나) 위관, 5급·6급, 전문군무경력관 가군·나군: 월 20,000원 (다) 부사관, 7급 이하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월 15,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가) 지급액 구분 / 월지급액 원장 /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 / 110,000원 부장 / 100,000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 8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	1)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	월 20,000원 (비고)

	수당	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월 60,000원
		3) 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다. 교직수당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	월 250,000원

		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월 50,000원 (비고)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월 150,000원
		3)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未感兒)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지급액) (1) 가)의 해당자: 월 120,000원 (2)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3) 다)부터 마)까지의 해당자: 월 50,000원 (4) 바)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월 200,000원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지급액) 호봉별 / 월 지급액 31 ~ 40 / 50,000원 22 ~ 30 / 45,000원 14 ~ 21 / 40,000원 9 ~ 13 / 35,000원 5 ~ 8 / 30,000원 1 ~ 4 / 25,000원 (비고)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위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40,000원
		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	(1) 겸임교장: 월 100,000원 (2) 겸임교감: 월 50,000원

		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교감	
		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가) 지급액: 월 40,000원 나) 교육경력 외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법」(법률 제6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총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는 가)의 지급액에 월 50,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금만 적용한다. 다) 지급방법: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월 30,000원
		10)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월 30,000원
3. 특수업무분야	가. 선박 및 항정 등 근무수당	1) 교육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관세청·국가유산청·기상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1)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2) 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3) 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4) 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5) 가산금 (가)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단정 등을 이용해서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가) 지급액

(1) 경찰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정 이상	172,000원	123,000원
경감	141,000원	101,000원
경위	133,000원	95,100원
경사	122,000원	87,800원
경장	112,000원	80,500원
순경	92,000원	65,800원
의무경찰	20,000원	20,000원

(2)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

계급	월 지급액
소방령 이상	65,000원
소방경	50,000원
소방위	37,000원
소방장	34,000원
소방교	30,000원
소방사	21,000원
전문경력관 가군	65,000원
전문경력관 나군	34,000원

(3)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급	32,000원 이하
7급	25,000원 이하
8급	2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

			원(시·도소방공무원인 함정장에게는 월 10,000원으로 한다)을 가산 지급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 및 가산금 나) 외에 추가로 월 7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가) 특수함승무원: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그 밖의 함정승무원: 월봉급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월봉급액의 55%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나. 항공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인 경찰·소방공무원과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 분</th><th>조종사</th><th>정비사·전탐사</th></tr><tr><td>경정, 소방령, 5급 이상</td><td>631,700원</td><td>313,400원</td></tr><tr><td>경감, 소방경, 6급(3년 이상)</td><td>505,300원</td><td>279,100원</td></tr><tr><td>경위, 소방위, 6급(3년 미만)</td><td>404,200원</td><td>217,800원</td></tr><tr><td>경사, 소방장,</td><td>323,400원</td><td>196,000원</td></tr></table>

7급			
경장, 소방교, 8급	258,600원	184,200원	
순경, 소방사, 9급	205,900원	174,200원	
전문경력관 가군	631,700원	313,400원	
전문경력관 나군	410,900원	230,900원	
전문경력관 다군	232,200원	179,200원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가)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월 50,000원 나) 6·7급 및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월 40,000원 다) 8·9급 및 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5) 삭제 <2024. 1. 5.>	
다. 외무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가) 지급액

	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 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및 준사관·부사관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군무원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7)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 9)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중인 사람, 잠수함 승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승무유지훈련을 한 사람 10) 비행부대 외의 부대	(1)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 3)의 해당자: 월 180,000원 이하 (4) 4)의 해당자: 월 270,000원 이하 (5)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 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수당에 준하는 금액 (7) 7)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 (8) 8)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 (9) 9)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 (10) 10)의 해당자: 월 8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기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계급·직무등급 /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 3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 50,000원 나)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6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월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계급·직무등급 / 월 지급 상한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 6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 4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 3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 / 150,000원

			하의 소방공무원
			(비고) 1.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4)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 400,000원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원) 의무직렬 공무원 / 약무직렬 공무원 / 간호직렬 공무원 지역별 / 자격 / 금액 가(군지역): 전문의 950,000, 일반의 850,000 나(다·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 850,000, 일반의 750,000 다(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전문의 750,000, 일반의 650,000 라(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 700,000, 일반의 600,000 약무직렬 공무원: 140,000 간호직렬 공무원: 100,000

		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나) 가산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의무경찰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국립법무병원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국립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약무직렬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월 50,000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	월 250,000원

		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월 100,000원
		5)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table>
<tr><td></td><td></td><td>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간호조무군무원을 포함한다)</td><td>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td></tr>
<tr><td></td><td>바. 특수직무수당</td><td>1)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영화·공연무대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d>가)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나) 6급(6급 상당 포함) 및 7급(7급 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다) 8급(8급 상당 포함) 이하: 월 20,000원 이하</td></tr>
<tr><td></td><td></td><td>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마) 경찰청 소속 경비부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td><td>(1) 가)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나) 해당자: 월 20,000원 이하
(3) 다)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4) 라) 해당자: 112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able><tr><th>출동시간</th><th>출동사건</th></tr><tr><td>06시부터 22시까지</td><td>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등 처리</td></tr><tr><td>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td><td>주요범죄 사건 등 처리</td></tr></table>(비고) 출동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마)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td></tr>
</table>

		상시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3)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나) 소속 장관이 가)의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공무원. 다만,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1)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2) 나)의 해당자: 월 30,000원 이하 (3) 가산금 소속 장관은 가)의 해당자 중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액·지급기준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130,000원 이하 나) 3급 및 4급: 월 115,000원 이하 다) 5급: 월 100,000원 이하 라) 6급 이하: 월 60,000원 이하
		5) 계호(戒護)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	(1) 지급액 월 1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한센병·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징벌·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나)의 지급대상자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전문경력관(전산업무담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가) 5급 이상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나) 6급 이하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월 30,000원 이하
		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	(1) 가)의 해당자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찰 공무원 및 철도경찰직 공무원과 형사법무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4급 이하의 과학기술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전문경력관

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라) 과학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마)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의 명을 받아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무,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와 「공소청법」

계급	월 지급액
4급 이상	200,000원
5급 이하 7급 이상	150,000원
8급 이하	100,000원

(2)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마)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형사법무직 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10)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지급액) 가) 고위공무원단: 월 100,000원 나) 3급 또는 4급: 월 90,000원 다) 5급: 월 80,000원 라) 6급(심사관): 월 60,000원 마) 6급이하(심사관보):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자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발령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1) 소방청과 소방기관,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화재조사 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근무자 중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시·도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	(1) 가), 나) 또는 마)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가산금 (가) 가)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라)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구조구급을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각각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의 해당자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나)의 해당자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나)와 (다)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

		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 업무담당자로 한정한다) 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라)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해양경찰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응급구조사 및 파출소 잠수·구조요원으로 한정한다) 마)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나 같은 법 제50조의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등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조정 및 지휘·통제·지원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	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원	
		1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서 공동위원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나)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월 600,000원 이하 다) 5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0원 이하 라) 6급(상당), 7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400,000원 이하 마) 8급(상당), 9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0원 이하
		13)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30퍼센트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월 360,000원
		15) 경찰청에서 검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이하
		16) 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17)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	월 50,000원

		원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	
		19)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40%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20)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일 16,000원을 지급하되, 월 1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2)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지급대상자 중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공항의 교통량과 업무 난이

<table>
<tr><td></td><td></td><td></td><td>도 등을 고려하여 (1)의 가산금 지급대상자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td></tr>
<tr><td></td><td></td><td>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td><td>가) 지급액: 월 80,000원
나) 가산금
(1) 소속 장관은 업무의 양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소속 장관은 동일한 직위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과 (2)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td></tr>
<tr><td></td><td></td><td>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독성 및 마약 분야의 감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약사 면허가 있는 공무원</td><td>월 200,000원</td></tr>
<tr><td></td><td>사. 중요직무급</td><td>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td><td>가) 지급상한액
<table><tr><th>지급대상</th><th>월 지급 상한액</th></tr><tr><td>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td><td>300,000원</td></tr><tr><td>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td><td>200,000원</td></tr><tr><td>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td><td>150,000원</td></tr><tr><td>6급(상당) 이하 공무원</td><td>100,000원</td></tr></table>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td></tr>
<tr><td></td><td>아. 우수대민공무원수당</td><td>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td><td>가) 지 급 액: 월 20만원
나)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td></tr>
<tr><td></td><td>자. 전문직무급</td><td>「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td><td>가) 지급액 및 근무기간 산정
(1) 지급액</td></tr>
</table>

근무기간	월 지급액		
	수석전문관	전문관	부전문관
1년 미만	310,000원	250,000원	165,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335,000원	280,000원	185,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400,000원	350,000원	245,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525,000원	460,000원	365,000원
4년 이상 7년 미만	680,000원	620,000원	515,000원
7년 이상	835,000원	780,000원	670,000원

비고

부전문관에서 전문관, 전문관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시 전문직무급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2) 근무기간 산정

(가) 근무기간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또는 부전문관으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채용을 포함한다)되어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 계산 시 포함되는 기간은 전문직무급 지급액의 근무기간 계산 시에도 합산한다.

나) 가산금

전문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위 가)에 따라 산출한 전문직무급 월 지급액에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의 계산에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 계산 시 포함되는 기간을 합산한다.

4. 재외직 분야

가. 재외근무수당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구분 / 계급·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4,102	4,339	4,510	4,701	4,938	5,162	5,343	5,533	5,723	5,96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544	3,746	3,893	4,046	4,237	4,440	4,591	4,754	4,916	5,12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	3,031	3,201	3,304	3,442	3,600	3,771	3,896	4,033	4,170	4,341

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공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665	2,813	2,893	3,011	3,147	3,294	3,403	3,520	3,641	3,787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463	2,599	2,666	2,774	2,899	3,033	3,131	3,240	3,350	3,484
6급, 4등급	2,261	2,384	2,440	2,539	2,650	2,772	2,861	2,959	3,058	3,181
7급, 3등급	2,097	2,209	2,254	2,345	2,446	2,558	2,638	2,730	2,819	2,932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구분 / 계급·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싱가포르 달러)	일본, 요코하마(엔)	고베, 나고야,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유로)
14등급	7,177	665,697	608,550	3,715	3,99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6,136	567,447	520,213	3,232	3,40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5,054	466,263	428,483	2,738	2,801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4,385	405,260	371,729	2,428	2,488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4,016	369,611	340,516	2,257	2,226
6급, 4등급	3,648	337,279	309,302	2,087	2,082
7급, 3등급	3,347	307,572	283,763	1,948	1,856

구분 / 계급·직무등급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535	4,690	4,718	4,899	37,77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869	4,000	4,022	4,178	32,201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180	3,333	3,307	3,433	26,466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766	2,898	2,877	2,985	23,08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524	2,646	2,624	2,724	20,998
6급, 4등급	2,307	2,416	2,397	2,487	19,166
7급, 3등급	2,103	2,202	2,185	2,266	17,473

구분 / 계급·직무등급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14등급	45,565	46,626	8,463	6,110	6,602	8,85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	38,841	39,745	7,215	5,214	5,631	7,555

13등급, 소장·준장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1,906	32,673	5,927	4,288	4,693	6,212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7,745	28,402	5,154	3,731	4,084	5,407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5,295	25,928	4,698	3,405	3,729	4,935
6급, 4등급	23,083	23,666	4,287	3,107	3,405	4,507
7급, 3등급	21,055	21,568	3,911	2,837	3,105	4,111

구분 / 계급·직무등급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다롄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74,955	32,168	33,59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49,137	27,500	28,716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122,516	22,957	23,97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직위)	106,535	19,913	20,79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97,129	18,241	19,047
6급 4등급	88,628	16,568	17,299
7급 3등급	80,846	15,201	15,872

구분 / 계급·직무등급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나, 댈러스, 필라델피아 (달러)	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달러)	호놀룰루 (달러)
14등급	4,748	4,975	5,149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4,084	4,279	4,42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공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395	3,556	3,674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969	3,107	3,21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735	2,861	2,954
6급, 4등급	2,498	2,615	2,698
7급, 3등급	2,308	2,413	2,488

비고

1.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따른다.
2. 위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 등급	1급	2급	3급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디(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 900달러 이하	월 600달러 이하	월 450달러 이하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부장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계급·직무등급 \ 감액(증액)율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장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감액(증액)률(%) = $\frac{나-가}{가} \times 100$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개정 2026. 1. 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지 급 대 상	기 준 호 봉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연구관·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나.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 이상: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다.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라.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경장·소방교 이상: 10호봉 나. 순경·소방사: 9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교감·원감·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나. 30호봉 이상: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라. 19호봉 이하: 18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대위: 8호봉 나. 중위: 7호봉 다. 소위: 3호봉 라. 준위: 11호봉 마. 원사: 1호봉 바. 상사: 7호봉 사. 중사: 9호봉 아. 하사: 10호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개정 2026. 9. 29.>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2. 외무공무원	6등급
3.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4. 지도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6.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7. 경호공무원	4급 이상
8.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9.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10. 교육공무원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실장·부장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11.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12.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4급 이상

비고

1.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의2] <신설 2026. 9. 22.>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제17조의2제4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액 산식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합계 − 25시간) × 초과근무보전수당 단가
초과근무 보전수당 단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4급 10호봉 봉급월액의 55퍼센트) × (1/209) × 150퍼센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삭제 <2011.1.1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9. 29.>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20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80,000원
8·9급(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75,000원
	하사			165,000원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교장·원장·교감·원감은 월

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실장·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3·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8.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 - 201 - 84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전문개정 2010. 11. 10.]
[제목개정 2011. 2. 9.]

제2장 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 1. 5.>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 11. 30.>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1. 1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기부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전문개정 2010. 11. 10.]

제12조의2 삭제 <2021. 5. 25.>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4조 삭제 <2007. 11. 13.>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11. 10.]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7. 2.>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2012. 1. 6.>
[전문개정 2010. 11. 10.]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목개정 2011. 2. 9.]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2024. 7. 2.>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을 말한다.<개정 2026. 6. 30.>
1.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 이 경우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전문개정 2010. 11. 10.]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국내 이전비를 지급한다.<신설 2026. 6. 30.>
③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개정 2026. 6. 30.>
④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6. 6. 30.>

[전문개정 2010. 11. 10.]

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移轉費)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1조(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

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22조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 1. 22.>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개정 2021. 5. 25.>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10. 11. 10.]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②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 11. 20., 2016. 11. 29.>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0.]

제6장 보칙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10. 11. 10.]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1. 9.]

부칙 <제15680호,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⑥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 국외여비규정 " 을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⑦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⑧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 국내여비규정 " 을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⑨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 " 를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일비、숙박비 " 로 하며, 동조제2항중 " 숙박료 " 를 " 숙박비 " 로, " 국내여비규정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 " 을 "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제5조、제14조、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 으로 한다.

⑩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부칙 <제15715호,1998. 2. 28.>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단서중 “ 총무처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3항중 “ 외무부장관 ” 을 각각 “ 외교통상부장관 ”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 ” 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을 “ 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특호의 다목의 해당공무원란중 “ 부총리ㆍ ” 및 “ 처장ㆍ ” 을 삭제하고,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 차관, 처의 차장 ” 을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 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 여수수산대학교 ” 를 “ 여수대학교 ” 로 하고,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 ”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중 “ 재정경제원장관 ” 을 “ 예산청장 ” 으로, “ 총무처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7의 구분란중 “ 차관 및 처의 차장 ” 을 각각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 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6326호,1999. 5. 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 예산청장 ”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⑬내지 <109> 생략

부칙 <제16691호,2000.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85호,2000. 4. 18.>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하고, 동조제3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를 “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 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 차관보, 1급공무원 ” 을 “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 2급 및 3급공무원 ” 을 “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 ” 을 “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부칙 <제17153호,2001.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5호,2001. 3. 27.>(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수산관계공무원여비의 지급대상란중 “ 국립수산물검사소(지소를 포함한다) ” 를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7275호,2001. 6. 3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 계급 ” 을 “ 계급ㆍ직무등급 ” 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 해당직급 ” 을 “ 해당 직급ㆍ직무등급 ” 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 특1급 외교직공무원 ” 을 “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을 “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 2급 및 3급공무원 ” 을 “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 4급 및 5급공무원 ” 을 “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84호,2002.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76호,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81호,2003.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94호,2003. 6. 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0호,2004.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3호,2005.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70호,2006.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14호,2006. 3. 29.>(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 관용차량 ” 을 “ 공용차량 ” 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 관용차량 ” 을 “ 공용차량 ” 으로, “ 관용차량관리규정 ” 을 “ 공용차량관리규정 ” 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9523호,2006. 6. 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호,2007. 7. 2.>(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고위공무원단 "을 " 고위(감사)공무원단 "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고위공무원단 "을 " 고위(감사)공무원단 "으로 한다.

부칙 <제20381호,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7조,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20402호,2007. 11. 30.>(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 ” 를 “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 ” 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 건설교통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h>구분</th><th>지급대상</th><th>지급방법</th></tr>
<tr><td rowspan="4">1. 수산관계공무원여비</td><td>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d rowspan="8">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table>
<tr><th>구분</th><th>도서지역</th></tr>
<tr><td>부산광역시</td><td>강서구 천가동</td></tr>
<tr><td>인천광역시</td><td>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td></tr>
<tr><td>경기도</td><td>안산시 대부동</td></tr>
<tr><td>전라북도</td><td>부안군 위도면</td></tr>
<tr><td>전라남도</td><td>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td></tr>
<tr><td>경상북도</td><td>울릉군</td></tr>
<tr><td>경상남도</td><td>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td></tr>
<tr><td>제주도</td><td>북제주군 추자면</td></tr>
</table></td></tr>
<tr><td>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r><td>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r><td>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r><td>2. 산림보호공무원여비</td><td>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r><td rowspan="2">3. 동·식물검역공무원여비</td><td>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에서 식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r><td>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r><td>4. 축산물검사공무원여비</td><td>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r><td>5.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여비</td><td>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r><td>6. 정부구매물자 가격조사요원 여비</td><td>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td></tr>
<tr><td>7. 징병검사 공무원여비</td><td>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r><td>8.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공무원 여비</td><td>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d>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td></tr>
</table>

<table>
<tr><td>9. 지식경제부 현업기관공무원 여비</td><td>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 공무원</td><td rowspan="2"></td></tr>
<tr><td>10. 농산물품질관리공무원여비</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td></tr>
</table>

⑬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916호,2008. 7.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52호,2009. 4. 30.>(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을 "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으로 한다.

부칙 <제22474호,201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외국으로 부임(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외국에서 본국으로의 전근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 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61호,201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2962호,2011. 6. 7.>(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支院)을 포함한다] "을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 "로 하고, 제3호의 지급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④부터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3501호,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1 제1호라목(교육장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가목, 별표 2 비고, 별표 4 비고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 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⑨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76호,2012. 3. 26.>(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지급 대상란 중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 ”를 각각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 ”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4149호,2012.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8호,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 외교통상부장관 ”을 “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 국무총리 ”를 “ 국무총리, 부총리 ”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 교육부 ”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 국토해양부장관 ”을 “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 외교통상부장관 ”을 각각 “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 ”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를 “ 농림축산검역본부 ”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 농림수산식품부 ”를 각각 “ 해양수산부 ”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 국토해양부 ”를 “ 국토교통부 ”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 지식경제부 ”를 “ 미래창조과학부 ”로 한다.

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24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년 1일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75호,2014. 6. 1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 지역교육청 ”을 “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2항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 ”을 “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 ”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 법제처장 ”을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11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42호,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59호,2015. 11. 20.>(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 전투경찰 "을 " 의무경찰 "로 한다.

⑨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935호,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17호,2016. 11. 2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 "를 " 의무경찰 "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을 "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825호,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7호의 구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06호,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단서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로 한다.

부칙 <제32168호,2021.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7호,2022. 5. 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교육부 본부”를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312호,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626호,2024. 7. 2.>(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전용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공용차량을”을 “공무용 차량을”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5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13호,2026. 1. 2.>(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 ”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으로 한다.

부칙 <제36492호,2026. 6. 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6. 9. 2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공소청법」 제29조 각 호의 검사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2급·3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6. 6. 30.>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위 표의 제2호란에 따른 숙박비를 적용할 때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개정 2025. 12. 30.>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6. 삭제 <2021. 5. 25.>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5] <개정 2017. 1. 31.>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5] <개정 2015.1.6.>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6의2] <개정 2021. 1. 5.>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

지 급 사 유	지 급 액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가.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명에 따라 본국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한 차례로 한정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 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때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8.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 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 1개월의

범위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여비(운임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7] 삭제 <2010.11.10>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8] <개정 2025. 10. 1.>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동물·식물 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원의 여비		
7.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 <개정 2021. 5. 25.>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38호, 2025. 7. 7.,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1 - 82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2. 27.>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3. 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외무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③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4856호(2013. 11. 20.)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 11. 19.>
1.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령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4856호(2013. 11. 20.)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시험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영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56호(2013. 11. 20.)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소속 장관은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곤란도·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9조(전담직위) ① 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방호·운전·등대관리·간호조무·위생·조리·방송무대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1.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
2. 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간 제3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③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담직위평가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개정 2014. 11. 19.>

제10조(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① 5급 이상 또는 연구관·지도관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자질 등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또는 연구관ㆍ지도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전담직위에 임용되기 전에 임용령 제10조의3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구사 또는 지도사인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 11. 19.>

1.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전직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필수과목이 총 3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2의6에 따른 연구사ㆍ지도사 이상 소요경력 연수를 갖춘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해당 직급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④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은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4856호(2013. 11. 20.)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법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④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과 전담직위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제12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7.>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제14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①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의2(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 <신설 2014. 2. 27.>

제16조(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당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 구분에 따른 직렬 중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유사한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제2521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으로 감축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2. 27.]

제17조(외무공무원 전담직위) ① 외교부장관은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승격, 전직, 전보,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1.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의 전보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이후 3년간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③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 전담직위 지정 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은 “5등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은 “4등급 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령 제10조의3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는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로 본다.

④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27.]

[대통령령 제25216호(2014. 2. 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2016년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승격소요최저연수)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일에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직무등급의 승격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산입한다.

1. 외무공무원 5등급: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5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2. 외무공무원 4등급: 별정직 6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4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3. 외무공무원 3등급: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3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본조신설 2014. 2. 27.]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2. 27.]

부칙 <제24856호,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0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216호,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9694호,2019. 4. 16.>(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44호,2020. 9. 2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임용령 제45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9조"를 "임용령 제45조"로 한다.

부칙 <제35638호,2025. 7.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 임용령 제35조의3 ”을 “ 임용령 제35조의4 ”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개정 2014.11.19.>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

(제5조제3항 관련)

직렬	직류 \ 계급	6·7급		8·9급	
교정	교정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보호	보호	헌법	형사소송법	사회	형사소송법개론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영어	행정법	영어	국제법개론
행정	일반행정	행정학	행정법	사회	행정학개론
세무	세무	행정법	세법	사회	세법개론
관세	관세	행정법	관세법	사회	관세법개론
사서	사서	행정법	자료조직론	사회	자료조직개론
공업	일반기계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물리	기계일반
	전기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물리	전기이론
	화공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화학	유기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재배학	식용작물학	생물	식용작물
임업	전 직류	생물학개론	조림학	생물	조림
해양수산	선박항해	선박개론	항해학	물리	항해
	선박기관	선박개론	선박기관학	물리	선박기관
보건	보건	보건학	보건행정학	생물	공중보건
시설	일반토목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물리	응용역학개론
	건축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물리	건축계획
전산	전산개발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컴퓨터일반	소프트웨어공학
방송통신	전송기술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물리	무선공학개론

비고: 위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직렬의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결정한다.

■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제11조제3항 관련)

종전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일반직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1 - 8314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16. 11. 22.]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16. 11. 22.]

제2장 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11., 2013. 12. 4., 2016. 11. 22., 2016. 11. 29., 2021. 1. 5., 2021. 3. 30., 2023. 12. 5., 2023. 12. 26.>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삭제<2023. 12. 26.>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소속 장관이 원본대조ㆍ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3. 6. 11.>

[전문개정 2009. 3. 12.]

[대통령령 제24891호(2013. 12. 4.)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6.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삭제<2011. 7. 4.>
29.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30.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1.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2.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4.>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2., 2023. 12. 12.>

[전문개정 2009. 3. 12.]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개정 2016. 11. 22.>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유지·보관하는 인사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3. 6. 11.>

④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12.]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되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09. 3. 12.]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23. 12. 26.>

② 소속 장관은 해마다 주요 업무의 성과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 의견, 각급 기관의 정책평가 내용 및 감사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 착오·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정정·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장관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정·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8조의3 삭제 <2011. 12. 6.>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12.]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해야 한다.<개정 2021. 3. 30., 2023. 12. 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3. 12.]

제11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4.>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3. 12. 4., 2021. 3. 30.>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신설 2013. 12. 4.>

[전문개정 2009. 3. 12.]

제12조(선서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0. 7. 15.>

[전문개정 2009. 3. 12.]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3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개정 2011. 11. 1.>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전문개정 2009. 3. 12.]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 임용후보자명부 ”라 한다)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 임용후보자 ”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서에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 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요구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소속 장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소속 장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거나,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 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5. 9.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
[전문개정 2009. 3. 12.]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고,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에는 인사발령안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17조 삭제 <2020. 9. 22.>

제18조 삭제 <2020. 9. 22.>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2. 4.]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승격을 포함한다) 시 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09. 3. 12.]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6.]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개정 2016. 11. 22.>
[전문개정 2009. 3. 12.]

제23조(전보 사전승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전보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6. 11. 22.>
[전문개정 2009. 3. 12.]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협의 신청은 파견근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 보충의 협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②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개정 2009. 11. 2.>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신설 2009. 11. 2., 2021. 3. 30.>
[전문개정 2009. 3. 12.]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②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3. 12. 26.>
③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09. 3. 12.]

제27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갖추어 두는 발령 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12.]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제28조(인사 보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12.]

제29조(관보 등의 게재)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게재 및 게시 대상 인사발령 사항의 범위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1. 3. 30.>

[전문개정 2009. 3. 12.]

[제목개정 2021. 3. 30.]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31조(경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12.]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09. 3. 12.]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 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 공무원 임용통계 및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09. 3. 12.]

[종전 제33조는 제38조로 이동 <2009. 3. 12.>]

제34조(통계보고의 단계) ①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1월 20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은 1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전년도(前年度) 통계의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통계의 정기보고는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09. 3. 12.]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09. 3. 12.]

제37조(통계조사의 협조)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협조를 받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본조신설 2009. 3. 12.]

제37조의2 삭제 <2023. 12. 12.>

제37조의3 삭제 <2023. 12. 12.>

제37조의4 삭제 <2023. 12. 12.>

제37조의5 삭제 <2023. 12. 12.>

제37조의6 삭제 <2023. 12. 12.>

제37조의7 삭제 <2023. 12. 12.>

제37조의8 삭제 <2023. 12. 12.>

제5장 보칙 <신설 2016. 11. 22., 2023. 12. 12.>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부칙 <제18423호,2004. 6. 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8호,2005. 2. 25.>
제6조 제1항제2호중 “ 5급이상 ” 을 “ 대통령이 임용하는 ” 으로 한다.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8호,2006. 6.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 도입ㆍ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도입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의 관리 및 인사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9885호,2007. 2.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사 및 성과 기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 인사기록카드 사본 ”을 “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또는 그 사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 또는 그 출력물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 “ 호적초본 ” 을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 호적등본ㆍ초본 ” 을 “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 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28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29조 중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한다.

제31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5조제1항 관련)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신규채용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5급 이상은 2통) 1통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각 1통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1통	○시ㆍ구ㆍ읍ㆍ면장 발행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신원진술서	2통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청장(4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발행
2.	승진	일반승진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기타승진	승진순위표	1통
3.	전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 해당자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4.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동의서ㆍ진단서ㆍ직권면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명할 서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1통
5.	강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폐ㆍ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6.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7.	추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8.	휴직 및 복직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ㆍ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발행
9.	전 출 입	전출입동의서 1통	
10.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해당자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

⑮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344호,200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별표 4”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후단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49조의2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각각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1717호,2009. 9. 8.>(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800호,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각각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74호,2010. 7. 15.>(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119호,2011.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7호,2011. 11. 1.>(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348호,2011. 12. 6.>(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까지 생략

2)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84호,2013.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91호,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력조사서 통보 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력 조회를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제29조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12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6호,2015. 9. 25.>(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 견습 ”을 “ 수습 ”으로 한다.

부칙 <제27607호,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 "를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 "로 한다.

②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20호,2016. 11. 29.>(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 제1국민역 "을 " 병역준비역 "으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35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042호,2020. 9. 22.>(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91호,202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72호,2021. 11. 30.>(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3910호,2023. 12. 5.>(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

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별표 4 제1호 신규채용의 채용신체검사서 1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한다.

부칙 <제33962호,2023. 12. 12.>(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를 “ 제18조 및 제19조 ”로, “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 ”으로 한다.

제2조 중 “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을 “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 제37조의2 ”를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인사기록은 ”을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 인사기록의 ”를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 ”로 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4057호,2023.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1] <개정 2010.7.15>

선 서 문(제1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 <개정 2023. 12. 26.>

선서문의 규격(제12조제1항 관련)

용도	규격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385㎜×53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보관용 ○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190㎜×268㎜ 인쇄용지(특급) 210g/㎡

비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서문의 규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3] <개정 2023. 12. 26.>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제13조제3항 관련)

순번	시험 종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이력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갈음하고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은 채용 요건인 경우에만 필요함
2	일반승진시험	인사기록 요약서 1통 승진순위표 1통	
3	전직시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전직 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직무기술서 1통 전직 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1통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4] <개정 2023. 12. 26.>

인사발령을 위한 첨부서류(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번호	발령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규채용		기본증명서 1통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 조회 결과 출력물,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결격사유조회회보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을 말한다.
			채용 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한다.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원진술서 2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진 3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사진을 말한다.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 1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승진	일반승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진	일반승진시험 합격통지서 1통	
		그밖의 승진	승진순위표 1통	
3	전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전직시험 합격통지서 1통	
			연구직렬 및 과학기술직렬의 해당 분야 확인서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직권 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직권 면직 의견·동의 의결서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직권 면직 의견·동의 의결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등 당연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강임		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편 또는 폐지, 예산 감소의 관계 서류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처분사유 설명서는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6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1통	징계의결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고,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는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추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8	휴직 및 복직	질병휴직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진단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그밖의 휴직	입영통지서 사본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처분사유 설명서는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복직	진단서 등 복직 사유를 증명할	질병휴직자의 복직 등 복직 사유의 확

		수 있는 서류 1통	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9	전입 또는 전출	전입 또는 전출 동의서 1통	
10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1통	
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전보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원진술서 2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1 - 83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장관”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2. “인사특례운영기관”이란 제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3장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관의 규모와 인적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2. 기관의 업무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3. 국정과제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해당 기관에 적용하려는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3.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5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인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공직의 전문성 등 인사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에 적용할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2.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절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특례운영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영 또는 다른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통보 및 지정 취소 등 운영 결과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7조(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채용 절차
2. 삭제 <2023. 12. 29.>
3. 제1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절차
4. 그 밖에 특례규정의 적용에 따른 절차로서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절차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과 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3급 이하 5급 이

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25., 2026. 9. 29.>

제8조의2(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제2항, 별표 7 및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으로 대체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자격증을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줄일 수 없다. <개정 2022. 12. 27.>

1. 임용예정직무의 곤란성·책임성 등이 특별히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따른 경력기준 중 임용예정 계급이 6급 이상이고 직무분야가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줄일 수 있다.<신설 2022. 12. 27.>

1. 5급 이상: 3년(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은 제외한다)
2. 6급: 1년

③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소요경력연수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신설 2022. 12. 27.>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은 제외한다)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지도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제외한다)

제10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정기평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11조(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쳐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경우
2.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12조(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조직의 신설, 정원의 증원 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2. 우수 인력 육성 및 성과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3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별표 5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2. 12. 27.>

⑤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 12.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의 방법은 그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2024. 12. 24.>

제13조(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7.>

② 삭제<2024. 6. 27.>

[전문개정 2023. 12. 26.]

제14조 삭제 <2022. 12. 27.>

제15조(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2.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 가능

제16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여 직무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의 설치 시기 및 인적 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의 단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개정 2024. 8. 20.>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5년 이상 7년 미만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

[본조신설 2024. 12. 24.]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9.]

제19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7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의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긴급한 국가적 현안 대응 등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2. 직종ㆍ직급의 구성에 특수성이 있거나 다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기관 등 인력 구성의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인원,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인원에 따른다.

제20조 삭제 <2024. 1. 5.>

제21조(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연가 또는 유연근무의 신청 없이 그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연가 또는 유연근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4.>

1. 사용일부터 4일 이전에 통보한 1일의 연가 또는 반일 연가
2. 사용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로서 1시간의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이 경우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어야 한다.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사용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로서 2시간의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이 경우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22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부칙 <제30243호,2019. 1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3호,2020. 2. 25.>(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 ”를 “ 검사장과 ”로 한다.

부칙 <제33152호,202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56호,2023. 12. 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84호,2023. 12. 29.>(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4099호,2024. 1. 5.>(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4608호,2024. 6. 2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4852호,2024. 8.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7호,2024. 12. 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8호,2025. 7.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901호,2025.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공무원임용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총괄, 임용) 044 - 201 - 8295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 파견) 044 - 201 - 8340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채용) 044 - 201 - 8205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임용유예, 시보임용) 044 - 201 - 8203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인사교류) 044 - 201 - 8345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 임기제공무원) 044 - 201 - 8317

제1장 총칙 <개정 2009. 9. 8.>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 임기제공무원 ”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1. 20., 2023. 12. 26., 2025. 1. 7., 2025. 7. 7.>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09. 9. 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4., 2012. 1. 26., 2013. 2. 20., 2013. 3. 23., 2014. 1. 10.,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2020. 2. 25., 2020. 3. 10., 2020. 7. 14., 2022. 5. 9., 2023. 8. 30., 2025. 10. 1.>

1. “ 임용 ” 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 복직 ” 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가공무원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 소속 장관 ” 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다.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 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라. 시ㆍ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소방청장으로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4. 삭제<2018. 7. 3.>

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6.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11. 20., 2017. 1. 10.>

③ 삭제<2013. 11. 20.>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10.>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9. 8.]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6., 2015. 7. 13., 2015. 11. 18., 2017. 12. 29.>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9. 6. 18.>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12. 16.]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 전문경력관 ” 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사사무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전문개정 2011. 9. 6.]

제4조의2 삭제 <2004. 6. 11.>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 고위공무원 ” 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ㆍ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1. 9. 29., 2013. 11. 20., 2013. 12. 16., 2020. 2. 25., 2026. 9. 29.>

③ 삭제<2006. 6. 12.>

④ 소속 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11. 20., 2013. 12. 16.>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3. 11. 20.>

⑥ 소속 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⑦ 현업기관(現業機關)을 갖는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게 그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

⑧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게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

⑨ 정원을 조정하거나 소속 장관 상호간, 소속 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하거나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1. 3. 7., 2013. 11. 20.>

[전문개정 1989. 3. 27.]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6. 6. 30.>

1. 소속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2. 소속 공무원 간 협업 강화
3.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성과와 능력 향상

[전문개정 2009. 9. 8.]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7. 3.>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

[전문개정 2009. 9. 8.]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 7. 3.]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과 공직문화 수준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본조신설 2019. 11. 5.]
[제목개정 2026. 4. 7.]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균형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2026. 4.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 7., 2026. 4. 7.>

1.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속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1.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목개정 2026. 4. 7.]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9. 9. 8.]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7. 3., 2023. 12. 26.>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19., 2026. 6. 30.>

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26. 6. 30.>

⑦ 인사혁신처장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

속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⑨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역량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6. 6. 3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26. 6. 30.>

[전문개정 2014. 6. 30.]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제1호의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하고,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6. 6. 30.>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사항
3. 제57조의7제2항에 따른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7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직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③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④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계급(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말한다)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

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때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2. 5., 2021. 11. 30.>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9. 8.]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에 적합한 사람
3. 임용예정 기관의 장이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2. 29.>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5. 11.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9. 9. 8.]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15조의2 삭제 <1981. 6. 10.>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2012. 1. 26.>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1. 4. 4., 2012. 1. 26., 2013. 3. 23., 2013. 4. 22.,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2016. 6. 24., 2017. 1. 10., 2019. 11. 5., 2020. 2. 25., 2021. 1. 5., 2026. 6. 30.>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한센병원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1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③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12. 16., 2020. 9. 22., 2025. 1. 7.>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9. 22., 2021. 11. 30.>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

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31.>

1.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의2에 따른 응시요건.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 4. 9.]

[제목개정 2012. 1. 26.]

제17조 삭제 <1978. 12. 30.>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7.>

1.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20조의3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제20조의3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1. 4. 4.,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15. 11. 18., 2020. 2. 25.>

[본조신설 1977. 9. 14.]

[제목개정 2009. 9. 8., 2012. 1. 26.]

제19조 삭제 <1971. 12. 11.>

제20조 삭제 <1973. 4. 9.>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4., 2012. 1. 26., 2015. 9. 25., 2020. 6. 30.>

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2. 1. 26.]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②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개정 2012.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2. 1. 26.]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2. 1. 26.]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5. 9. 25., 2021. 11. 30.>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3. 삭제<2013. 11. 20.>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2012. 3. 30.,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2015. 9. 25., 2021. 11. 30.>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⑥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⑦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개정 2012. 1. 26., 2015. 9. 25.>

⑧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26., 2015. 9. 25.>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⑩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4. 23.>

1. 인사혁신처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업무
2. 소속 장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인사관리 업무
3. 교육훈련기관의 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교육훈련 업무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30., 2014. 11. 19., 2015. 9. 25.>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3. 11. 20.]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③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④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같은 영 제29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같은 영 제47조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영 제

49조의2에 따른 점검 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6.>

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23. 12. 26.>

⑥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0.>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신설 2023. 8. 30.>

[본조신설 2013. 11. 20.]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8.>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1. 19.>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에 대한 통보나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 11. 18., 2017. 1.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3. 11. 20.]

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목개정 2015. 9. 25.]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 4. 9.>

제23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전문개정 2023. 12. 26.]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7. 12. 29.>

② 임용권자나 인사혁신처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4.>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개정 2010. 6. 15., 2013. 11. 20., 2015. 9. 25., 2017. 12. 29., 2018. 7. 3.>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09. 9. 8.]

제3장 전직 <개정 2009. 9. 8.>

제26조 삭제 <1981. 6. 10.>

제27조 삭제 <1981. 6. 10.>

제27조의2 삭제 <1981. 6. 10.>

제27조의3 삭제 <1981. 6. 10.>

제28조 삭제 <1981. 6. 10.>

제28조의2 삭제 <1981. 6. 10.>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21. 1. 5.>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 1. 26., 2013. 4. 22., 2015. 11. 18., 2019. 11. 5.>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전문개정 2009. 9. 8.]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8. 30.>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2013. 11. 20.>
3.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9. 8.]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2023. 12. 26.>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및 5급: 3년 이상
   나. 6급: 2년 이상
   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3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
   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1. 3. 7., 2014. 2. 5., 2015. 11. 18., 2016. 6. 24., 2017. 1. 31., 2018. 7. 3., 2020. 12. 29., 2023. 10. 10., 2023. 12. 26., 2025. 1. 7.>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2016. 6. 24.>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

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신설 2022. 12. 27.>

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연구관ㆍ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ㆍ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직무등급 이상의 직무등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개정 2012. 1. 26., 2026. 4. 7.>

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개정 2013. 12. 16., 2017. 12. 29., 2023. 10. 10., 2025. 1. 7.>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7. 1. 10., 2026. 6. 30.>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3.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부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신설 2022. 12. 27.>

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9. 9. 8.]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18. 9. 18., 2019. 11. 5., 2023. 10. 10., 2026. 4. 7.>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2020. 9.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개정 2020. 9. 22., 2026. 6. 30.>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2조의2 삭제 <1981. 6. 10.>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9. 22.>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0.>

③ 삭제<2012. 1. 26.>

[제목개정 2020. 9. 22.]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ㆍ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22. 12. 27.>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9. 22., 2025. 1. 7.>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⑤ 제3항에 따른 총결원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한다.<개정 2011. 3. 7.>

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22. 12. 27.>

1.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⑨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⑩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9.>

[전문개정 2009. 9. 8.]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1. 5.>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5. 9. 25., 2019. 11. 5., 2020. 9. 22., 2026. 6. 30.>

[전문개정 2009. 9. 8.]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개정 2010. 6. 15., 2013. 11. 20.>

④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9. 9. 8.]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9. 11. 5., 2025. 7. 7., 2026. 6. 30.>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 6. 25.>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0.>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9. 11. 5., 2026. 4. 7., 2026. 6. 30.>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2.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3.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9. 6. 25., 2019. 11. 5., 2023. 12. 26.>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6. 25., 2019. 11. 5.>

⑧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7. 7.>

⑨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5. 7. 7.>

⑩ 소속 장관은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2025. 7. 7.>

⑪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신설 2025. 7. 7.>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35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5조의3(특별공적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2. 제35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 제35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4. 다른 법령에서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특별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의 특별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소속 장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7.]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25. 7. 7.>]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5로 이동 <2025. 7. 7.>]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31조제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 31., 2019. 6. 18., 2025. 1. 7.>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개정 2011. 7. 4., 2013. 11. 20.>

1. 삭제<2013. 11. 20.>
2. 삭제<2013. 11. 20.>
3. 삭제<2013. 11. 20.>
4. 삭제<2013. 11. 20.>
5. 삭제<2013. 11. 20.>
6. 삭제<2013. 11.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 2026. 4. 7.>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 1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2026. 4. 7.>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2016. 6. 24., 2019. 11. 5., 2023. 12. 26., 2024. 6. 27., 2026. 4. 7.>

⑥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6. 27., 2026. 4. 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3. 7., 2026. 4. 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신설 2019. 6. 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6. 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9. 6. 18.>

[제목개정 2013. 11. 20.]

[제35조의4에서 이동 <2025. 7. 7.>]

제35조의6(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장관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본조신설 2026. 4. 7.]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36조의2 삭제 <2005. 12. 26.>

제36조의3 삭제 <2005. 12. 26.>

제36조의4 삭제 <2005. 12. 26.>

제36조의5 삭제 <2005. 12. 26.>

제37조 삭제 <2004. 6. 11.>

제37조의2 삭제 <2004. 6. 11.>

제37조의3 삭제 <2004. 6. 11.>

제37조의4 삭제 <2004. 6. 11.>

제38조 삭제 <1998. 12. 31.>

제39조

[종전 제39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1994. 12. 31.>]

제39조의2 삭제 <1981. 6. 10.>

제5장 겸임 및 파견 <개정 1981. 6. 10.>

제40조(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5. 9. 25., 2021. 11. 30.>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 2. 29., 2013. 11. 20., 2015. 9. 25., 2021. 11. 30.>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기관의 임직원 간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2015. 9. 25.>

[전문개정 2009. 9. 8.]

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6. 2. 3.>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8., 2011. 3. 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10. 6. 15., 2025. 1. 7.>

1.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
3.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⑤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개정 2009. 9. 8., 2010. 6. 15.>

⑥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 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1.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
2.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1981. 6. 10.]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⑦ 삭제<2022. 12. 27.>

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 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10.>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10.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0., 2026. 4. 7.>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 11. 20., 2023. 10. 10., 2023. 12. 26.>

[전문개정 2009. 9. 8.]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6.,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10.>

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삭제<2013. 12. 16.>
4.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신설 1981. 6. 10.>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2. 3., 2020. 9. 22., 2021. 1. 5., 2023. 10. 10.>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4. 직제의 신설ㆍ개정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1. 3. 7., 2019. 11. 5.>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7. 3.>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 및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신설 2019. 6. 18., 2023. 12. 26.>

⑧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8.>

[전문개정 2009. 9. 8.]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2017. 1. 10.>

1. 삭제<2012. 9. 28.>

2. 삭제<2012. 9. 28.>

3. 삭제<2012. 9. 28.>

② 삭제<2012. 9. 28.>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0.>

[전문개정 2009. 9. 8.]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1. 10.>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5. 9. 25.>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1. 10.>
[전문개정 2014. 2. 5.]

제43조의4 삭제 <1999. 5. 24.>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2023. 12. 26.>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1의2.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 이상
2.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 6. 30.>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2026. 6. 30., 2026. 9. 29.>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 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5.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5., 2026. 6. 30.>

1. 삭제<2015. 9. 25.>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1호의2(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1. 3. 7., 2012. 1. 26., 2012. 9. 28., 2013. 3. 23., 2013. 4. 22., 2013. 11. 20., 2014. 6. 30.,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2017. 12. 29., 2019. 11. 5., 2020. 9. 22., 2022. 12. 27., 2025. 1. 7., 2026. 6. 30.>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의2. 삭제<2020. 9. 22.>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 12. 27.>

1. 직무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경우
2. 특정 기관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를 위하여 선발된 경우
3.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항제6호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2022. 12. 27., 2023. 12. 26., 2025. 1. 7., 2026. 6. 30.>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 9. 25., 2017. 1. 31., 2019. 11. 5., 2020. 9. 22., 2022. 12. 27., 2025. 1. 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⑩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2015. 9. 25., 2022. 12. 27.>

⑪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인 사람 및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에서 전직되거나 전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 9. 25., 2020. 9. 22., 2022. 12. 27., 2026. 6. 30.>

⑫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15. 9. 25., 2022. 12. 27.>

⑬ 인사혁신처장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ㆍ평가하며, 각 기관이 해당 계획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 11. 18., 2022. 12. 27.>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5. 9. 25.]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 7.>

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2026. 4. 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3.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개정 2026. 4. 7.>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개정 2026. 4. 7.>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9. 22.]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1. 20.]
[제목개정 2015. 9. 25.]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해양수산직렬 해양교통시설직류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9. 22., 2023. 8. 3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48조(기관 간의 인사교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26. 4. 7.>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모성 보호,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ㆍ기술ㆍ사회ㆍ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4. 2. 5., 2014. 11. 1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 2. 5.>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6. 6. 30.>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5., 2026. 6. 30.>

⑥ 제5항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1. 5., 2026. 6.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 2026. 6. 30.>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26. 4. 7.]

제49조 삭제 <2009. 3. 31.>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제4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9. 8.]

제49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①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원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전보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4.]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02. 7. 10., 2004. 1. 20., 2007. 5. 16., 2013. 12. 16.>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21. 12. 28.>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단체·협회 등

[전문개정 2009. 9. 8.]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을 각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26.>

⑦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⑧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52조 삭제 <2008. 6. 27.>

제53조(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2. 1. 26.>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개정 2012. 1. 26.>

③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6. 15., 2012. 1. 26., 2015. 9. 25.>

[전문개정 2009. 9. 8.]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② 제51조제6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1. 26.>

⑤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1. 26.>

⑥ 복직한 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한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9. 25.>

⑦ 제6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신설 2015. 9. 25.,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9. 8.]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③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1. 26.>

④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제57조의2(육아휴직)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23. 10. 10.>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2. 5.,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9. 8.]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16., 2022. 12. 27.>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③ 삭제<2017.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16., 2014. 11. 19., 2017. 12. 29.>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3. 12. 16.]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9. 10., 2013. 11. 20.,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23. 10. 10.>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 7.>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7. 12. 29.]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0. 6. 15.]

제57조의6(고용휴직위원회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대상 기관 및 직위의 선정, 대상자의 선발,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휴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민간기업등에의 채용 및 인사혁신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국제기구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2023. 10. 10., 2026. 4. 7.>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 11. 30., 2023. 12. 26.>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 11. 30., 2023. 12. 26.>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 11. 30.>
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신설 2021. 11. 30.>
⑥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퇴직 후에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2025. 1.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20. 2. 25.]

제57조의8(가족돌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목개정 2021. 11. 30.]

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5. 11. 18.]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 6. 27.>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6.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ㆍ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4.]

제8장 신분보장 <개정 2002. 7. 10.>

제58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 12. 31.]

[제50조에서 이동 <2002. 7. 10.>]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9. 8.]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11. 18.]

제9장 보칙 <개정 2002. 7. 10.>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2. 균형인사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실시, 부상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7.]

부칙 <제3877호,1969. 4.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 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ㆍ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부칙 <제5449호,1970.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 재경직군의 재정ㆍ세무ㆍ감사ㆍ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ㆍ법제ㆍ법무ㆍ편수직렬의 3급을류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ㆍ임업ㆍ산림보호ㆍ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ㆍ선박기관ㆍ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ㆍ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ㆍ통계이사관ㆍ행정이사관ㆍ법제관ㆍ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ㆍ통계부이사관ㆍ행정부이사관ㆍ법제관ㆍ법무부이사관ㆍ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

、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방 공 무 원	국가공무원
	재경、세무、행정	행 정
1급내 지5급	농업、임업	농 림
	농업토목、토목	토 목
	유선통신、무선통신	통 신 사
기능직	기관、기계운전、기공	기 계

| | 영림·잡무 | 잡 무 |

⑧삭제 <1978. 12. 30.>

부칙 <제5606호,1971. 4.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5870호,1971. 12.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42호,197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8호,1972. 6.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474호,1973. 1.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 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제6622호,1973. 4. 9.>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 이상、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ㆍ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부칙 <제6658호,1973. 5. 2.>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92호,1973. 5.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1호,1974. 6.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ㆍ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부칙 <제7278호,1974. 10.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8호,1974. 1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86호,1975. 9.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940호,197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46호,1976. 6.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부칙 <제8269호,1976. 11. 5.>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91호,1977. 9.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 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

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95호,1977.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20호,1978.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6호,1978. 7.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64호,1978.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 이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 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ㆍ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 이하행정직렬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⑨1978년 12월 31일이전에 국세청 또는 관세청소속의 행정직렬에 근무한 경력(전직예정일로부터 8년 이내의 경력에 한한다)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각각 당해분야의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79. 10. 13.>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제9325호,1979. 2. 14.>(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부칙 <제9642호,1979. 10.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공안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소속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당해 급류의 철도공안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령 별표 2를 적용한다.

부칙 <제10345호,1981. 6.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제11024호,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05호,1983.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 이하 공안직군 및 행정직군 해당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455호,1984. 6. 29.>(고용직공무원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2중 “ 43세 ”를 “ 50세 ”로 한다.

부칙 <제11602호,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74조 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38호,198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50호,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과 세무직렬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세무직렬의 공무원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렬중 농업ㆍ잠업ㆍ연초ㆍ식물방역ㆍ인삼경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업ㆍ산림보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이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2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113호,1987. 4. 1.>(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기능직직급 및 정년표의 전매현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2중 “ ㆍ전매 ”를 삭제한다.

⑥생략

부칙 <제12339호,198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기직렬의 공무원중 전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자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날에 이 영에 의한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추천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의 직급란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직급	개정된 직급
철도수	철도원
체신수	체신원
토목수	토목원
건축수	건축원
통신수	통신원
전화수리공	전화수리원
전기수	전기원
기계수	기계원
선수	선원
등대수	등대원
기관수	기관원
조무수	조무원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계란 1종중 “ 운전원, 난방원 ”을 “ 난방원 ”으로 하고, 화공란 1종중 “ 도장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 ”을 “ 도장원 ”으로 하며, 기타란 2종중 “ 역무원, 사역원, 건널목안내원 ”을 “ 사역원 ”으로 한다.

제7조 (고용직공무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ㆍ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ㆍ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56호,1989.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ㆍ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군 교육청"으로 본다.

부칙 <제12704호,1989. 5.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직 렬
전 화 교 환	교 환
조 명	전 기

인쇄, 정리(기계분야)	기 계
자 동 차 운 전	운 전
분석, 인쇄기술,제염, 영화기술	화 공
제약, 실험, 전료	보 건
정 비	통 신
영림, 원예, 시험	농 림
간 호, 간호보조	간 호 조 무
요 리	위 생
방호, 경비, 수위,소방, 감시	방 호
타자, 필경, 창고, 정리(행정분야), 전달, 무대, 소품, 봉공, 집배, 판매, 제본, 제도, 항무, 운항 기타업무	사 무 보 조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철도 체신현업직렬 및 종전의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원예、제도、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 6. 17.>

부칙 <제12733호,1989. 6. 17.>(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호원ㆍ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ㆍ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2910호,1990. 1.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 사무관대우로 선발된 " 을 "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 으로 한다.

부칙 <제13225호,1990. 12. 31.>(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댕해 직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 문교부 " 를 각각 " 교육부 " 로 한다.

<62>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00호,1991.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9항 및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사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제49조제2항 " 을 " 제74조의제2항 " 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 제40조의3 " 을 " 제40조의4 " 로 한다.

부칙 <제13413호,1991. 7. 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 직할시ㆍ도 " 를 " 특별시ㆍ직할시ㆍ도 " 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내지2$ 생략

부칙 <제13615호,1992.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7호,1992. 12.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제9항 및 제3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 및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1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보호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행정직군의 근로감독직렬의 6급 및 7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항단서 및 제17조제1항단서중 " ·근로감독 "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중 " 보호 "를 각각 " 보호관찰 "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교정직렬안의 보안직류와 근로감독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②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 보도사·보도사보 또는 보도원으로 "를 " 보도직 6급 내지 8급으로 "로, 동조제2항중 " 보도사보로 "를 " 보도직 7급으로 "로 한다.

제3조제1항중 " 보도사 또는 보도원으로 "를 " 보도직 6급 또는 8급으로 "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보도사보로 "를 " 보도직 7급으로 "로 한다.

제9조제1항중 " 보도사보승진시험위원회 "를 " 보도직 7급승진시험위원회 "로 한다.

부칙 <제13976호,1993. 9.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환경처소속의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환경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채광직렬의 채광서기관은 공업서기관으로, 채광사무관은 자원사무관으로, 채광주사는 자원주사로, 채광주사보는 자원주사보로, 채광서기는 자원서기로, 채광서기보는 자원서기보로, 통신직렬의 통신이사관은 정보통신이사관으로, 통신부이사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통신서기관은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전산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서기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총무처소속의 5급시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에 행정ㆍ토목 및 건축직렬의 5급ㆍ7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자와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동시험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토목 및 건축직렬의 7급ㆍ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동시험중 제1차 및 제2차시험합격자와 면접시험불합격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직급(직류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노동ㆍ문화 및 공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행정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중 해당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식품위생직렬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보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의료기술직렬의 경우에는 동표 제1호의 의료기기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102호,1994. 1. 17.>(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14499호,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동조제2항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전직임용등에 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일직군내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경력은 제3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경력으로 평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제14653호,1995. 5.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하여 마약수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839호,1995. 1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130호,1996. 7.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249호,1996. 12. 31.>(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농림직군의 농림직렬란 다음에 산림보호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보호	산림보호					산림보호원	산림보호원	산림보호원	산림보호원	산림보호원	

부칙 <제15599호,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전문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전문직위는 제4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 및 등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계급

별 또는 등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일반직공무원과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도직군、보도직렬、보도직류는 각각 소년보호직군、소년보호직렬、소년보호직류로, 체신현업직군、체신현업직렬、체신현업직류는 각각 정보통신현업직군、정보통신현업직렬、정보통신현업직류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또는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1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를 "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 자치구 "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농촌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부칙 <제15715호,1998. 2. 28.>(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행정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을 " 중앙행정기간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공보실장 "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 내무부장관 "을 "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하며, 동호바목 후단중 “ 총무처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 총무처 ” 를 “ 행정자치부 ” 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 내무부 ” 를 각각 “ 행정자치부 ” 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 “ 총무처차관 ” 을 “ 행정자치부차관 ” 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 60세 ” 를 “ 59세 ” 로 하고, 동항제2호중 “ 58세 ” 를 “ 57세 ” 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제4호 후단、제6호、제9호 후단、제10호 전단、제11호 후단、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제3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제4항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제7호、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 총리령 ” 을 각각 “ 행정자치부령 ” 으로 한다.
별표 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5766호,1998. 4. 1.>(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6075호,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65호,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개방형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전문직위의 근무경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4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 총무처장관이 " 를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0조중 " 총무처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7108호,2001. 1.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 " 을 "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 " 을 "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 교육부 " 를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86>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16호,2001. 1. 29.>(여성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을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부칙 <제17420호,2001. 11. 29.>(부패방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을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ㆍ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7517호,2002. 2. 9.>(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을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7663호,2002. 7.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을 "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 제3조 단서 " 를 각각 " 제3조제3항 " 으로 한다.

부칙 <제18232호,2004.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제19조중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 ” 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 으로 한다.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 총무처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제8조제1항중 “ 공무원임용령 제8조제1항 ” 을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 으로 한다.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 를 “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 를 “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⑫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부칙 <제18715호,2005.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 를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 로,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 ” 를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 로 한다.

제3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 를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 로 한다.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 를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 로 하고, 동조제6호중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 ” 를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 로 한다.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 행정자치부장관은 ” 을 “ 중앙인사위원회는 ” 으로 한다.

제6조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급(3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의 심사처리 및 5급(5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 필수실무요원 ” 을 “ 필수실무관 ” 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 특수근무수당 ” 을 “ 특수근무수당 등 ” 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8842호,2005.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제18965호,2005. 7. 26.>(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 을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 부패방지위원회 ” 를 “ 국가청렴위원회 ” 로 한다.

부칙 <제19109호,2005. 10. 26.>(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 ” 을 “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를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9187호,2005. 12. 26.>(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ㆍ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 를 “ 경력평정에 ” 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251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 1년 ” 을 각각 “ 6월 ” 로 한다.

부칙 <제19431호,2006. 3. 29.>(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 을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제19515호,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중 공안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보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운수、노동、문화、공보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전기、전자、원자력、조선、금속、섬유、화공、자원직렬과 물리직군의 물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식물검역과 축산직렬과 수의직렬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은 기술직군의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수로직렬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물리직군의 기상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기상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교통직군의 교통、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가목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을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9787호,2006. 12. 29.>(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5항중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0059호,2007. 5.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부칙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57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여금 징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기여금은 그

공무원이 전일근무시 받게 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그 공무원의 월 보수 지급시 징수한다.

부칙 <제20604호,2008.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10호,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의 이체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구개편 또는 기능이관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원 소속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이체받을 기관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임용에 관한 처분·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심사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통신직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통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방송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통신직렬 및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및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88호,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행정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육행정직렬 및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및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 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헌법, 행정법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헌법, 행정법, 영어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교육학개론

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행정	변호사				

부칙 <제21289호,2009. 2. 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344호,2009. 3. 12.>(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49조의2제2항 중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을 각각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으로 한다.

부칙 <제21386호,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견습기간 및 임용예정계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발된 견습직원의 견습기간 및 임용예정계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717호,2009.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 등 소속 장관이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 경력경쟁채용시험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 경력경쟁채용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3의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제1차시험과목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⑥ 삭제 <2012. 1. 26.>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 1. 26.>

⑧ 제7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2. 1. 26.>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권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⑩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2012. 1. 26.]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6급 정보통신원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6급 정보통신장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7급 정보통신원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7급 정보통신장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6급 전화수리장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6급 통신장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7급 전화수리장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8급 전화수리장 및 전화수리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8급 통신원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9급 전화수리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9급 통신원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10급 전화수리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10급 통신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전화상담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전화상담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전화상담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전화상담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전화상담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6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열관리장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7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7급 열관리장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8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8급 열관리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9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9급 열관리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10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10급 열관리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장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화공장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화공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6급 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선박항해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7급 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선박항해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8급 선장 및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9급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10급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선박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선박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기관장 및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선박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선박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선박기관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6급 등대장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6급 등대관리장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7급 등대장 및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7급 등대관리장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8급 등대장 및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8급 등대관리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8급 표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8급 표지관리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9급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9급 등대관리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9급 표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9급 표지관리원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10급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10급 등대관리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농림장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농림장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6급 산림보호원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6급 산림보호장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7급 산림보호원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7급 산림보호장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장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장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간호조무원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간호조무장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간호조무원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간호조무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위생장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조리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위생장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조리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10급 조리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실무장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실무장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사무실무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방호장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방호장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화수리직렬의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 ”을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9조 전단,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중 “ 소속장관 ”을 각각 “ 소속 장관 ”으로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소속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 소속장관 ”을 각각 “ 소속 장관 ”으로 한다.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를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 ”을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 ”을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으로 한다.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⑦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를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로 한다.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 ”를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 ”으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 ”을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소속장관 ”을 “ 소속 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 소속장관 ”을 각각 “ 소속 장관 ”으로 한다.

부칙 <제22202호,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견기간 종료 전 복귀에 대한 협의ㆍ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민간근무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로 한다.

부칙 <제22373호,2010. 9. 10.>(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부칙 <제22617호,2011. 1. 1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2691호,2011. 3.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겸임 등 인사관리"를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로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부칙 <제22834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14호,2011.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 기능10급 " 을 " 기능9급(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9급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10급 " 을 " 기능9급 "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 기능9급 및 기능10급 " 을 " 기능9급 " 으로 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 기능9급ㆍ기능10급 " 을 " 기능9급 " 으로 한다.

부칙 <제23118호,2011.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4호,2011. 9. 29.>(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검사장 " 을 "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 " 으로 한다.

부칙 <제23555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정직렬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별표 1 중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교정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회직류 또는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91호,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24124호,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4380호,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7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검찰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검찰					

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검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을 각각 "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1)ㆍ2),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ㆍ제1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8항,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

2항 후단,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7조의6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3호,2013. 4. 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52호,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따라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9급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의4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 및 제35조의4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5급 토목기장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6급 토목운영주사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6급 토목장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6급 토목운영주사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7급 토목장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7급 토목운영주사보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8급 토목원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8급 토목운영서기
토건직군 토목직렬 기능9급 토목원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9급 토목운영서기보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5급 건축기장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6급 건축운영주사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6급 건축장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6급 건축운영주사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7급 건축장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7급 건축운영주사보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8급 건축원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8급 건축운영서기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9급 건축원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9급 건축운영서기보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5급 통신기장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6급 통신운영주사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6급 통신장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6급 통신운영주사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7급 통신운영주사보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8급 통신원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8급 통신운영서기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9급 통신원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직렬 9급 통신운영서기보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5급 전화상담기장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6급 전화상담운영주사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전화상담장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6급 전화상담운영주사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전화상담장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7급 전화상담운영주사보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전화상담원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8급 전화상담운영서기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전화상담원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직렬 9급 전화상담운영서기보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5급 전기기장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6급 전기운영주사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6급 전기장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6급 전기운영주사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7급 전기장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7급 전기운영주사보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8급 전기원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8급 전기운영서기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9급 전기원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9급 전기운영서기보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5급 기계기장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6급 기계운영주사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6급 기계장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6급 기계운영주사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7급 기계장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7급 기계운영주사보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8급 기계원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8급 기계운영서기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9급 기계원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9급 기계운영서기보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5급 열관리기장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6급 열관리운영주사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열관리장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6급 열관리운영주사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7급 열관리장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7급 열관리운영주사보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8급 열관리원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8급 열관리운영서기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9급 열관리원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직렬 9급 열관리운영서기보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5급 운전기장	기술직군 운전직렬 6급 운전주사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장	기술직군 운전직렬 6급 운전주사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기술직군 운전직렬 7급 운전주사보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8급 운전원	기술직군 운전직렬 8급 운전서기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9급 운전원	기술직군 운전직렬 9급 운전서기보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5급 화공기장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6급 화공운영주사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화공장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6급 화공운영주사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화공장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7급 화공운영주사보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8급 화공원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8급 화공운영서기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9급 화공원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직렬 9급 화공운영서기보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5급 선박항해기장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6급 선박항해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선박항해장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6급 선박항해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선박항해장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7급 선박항해운영주사보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선박항해원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8급 선박항해

	운영서기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선박항해원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직렬 9급 선박항해운영서기보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5급 선박기관기장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6급 선박기관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선박기관장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6급 선박기관운영주사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선박기관장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7급 선박기관운영주사보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선박기관원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8급 선박기관운영서기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선박기관원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직렬 9급 선박기관운영서기보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5급 등대관리기장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6급 등대관리주사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6급 등대관리장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6급 등대관리주사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7급 등대관리장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7급 등대관리주사보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8급 등대관리원 및 표지관리원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8급 등대관리서기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9급 등대관리원 및 표지관리원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9급 등대관리서기보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5급 농림기장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6급 농림운영주사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농림장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6급 농림운영주사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농림장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7급 농림운영주사보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8급 농림원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8급 농림운영서기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9급 농림원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직렬 9급 농림운영서기보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5급 산림보호기장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6급 산림보호운영주사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6급 산림보호장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6급 산림보호운영주사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7급 산림보호장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7급 산림보호운영주사보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8급 산림보호원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8급 산림보호운영서기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9급 산림보호원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직렬 9급 산림보호운영서기보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5급 보건기장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6급 보건운영주사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장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6급 보건운영주사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장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7급 보건운영주사보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8급 보건원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8급 보건운영서기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9급 보건원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9급 보건운영서기보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5급 간호조무기장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6급 간호조무주사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간호조무장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6급 간호조무주사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간호조무장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7급 간호조무주사보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8급 간호조무원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8급 간호조무서기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9급 간호조무원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9급 간호조무서기보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5급 위생기장	기술직군 위생직렬 6급 위생주사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위생장	기술직군 위생직렬 6급 위생주사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위생장	기술직군 위생직렬 7급 위생주사보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위생원	기술직군 위생직렬 8급 위생서기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위생원	기술직군 위생직렬 9급 위생서기보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5급 조리기장	기술직군 조리직렬 6급 조리주사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조리장	기술직군 조리직렬 6급 조리주사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조리장	기술직군 조리직렬 7급 조리주사보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조리실무원	기술직군 조리직렬 8급 조리서기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조리실무원	기술직군 조리직렬 9급 조리서기보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사무실무장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6급 사무운영주사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실무장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7급 사무운영주사보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실무원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8급 사무운영서기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실무원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9급 사무운영서기보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5급 방호기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방호주사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방호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방호주사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방호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7급 방호주사보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8급 방호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8급 방호서기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9급 방호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9급 방호서기보

②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1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3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2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3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3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3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4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4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5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5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6급 정보통신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6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7급 정보통신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7급 우정주사보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8급 정보통신원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8급 우정서기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9급 정보통신원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9급 우정서기보

③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한 직렬(소속 장관이 담당업무 및 인력운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행정직군 방호직렬, 기술직군의 간호조무직렬ㆍ운전직렬ㆍ등대관리직렬ㆍ위생직렬ㆍ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설직렬등"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직제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신설직렬등의 증원 없이도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증원 없이 임용된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는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4.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5.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좌관과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③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 을 “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각각 “ 임기제 공무원 ” 으로 한다.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을 “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기능직공무원 ” 을 “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⑦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 ” 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른 임용 ” 으로 한다.

⑧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 ” 를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도 ” 로 한다.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2 중 “ 일반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ㆍ단서 및 제11호 중 “ 일반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 일반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3호 및 제24조제3항제2호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각각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⑩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3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⑮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 ” 을 “ (국제협력의사의 임용)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 채용하려는 ” 을 “ 임용하려는 ” 으로, “ 채용계약을 체결 ” 을 “ 임용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 ” 를 “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 ” 으로 한다.
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 ” 을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 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 (「계약직공무원규정」의 준용) ” 을 “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 을 “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 로 한다.
1(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 군무원ㆍ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 을 “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 ” 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 로 한다.
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 ” 을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으로 한다.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 기능9급 ” 을 “ 9급 ”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2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5년 이상
4. 6급: 4년 이상
5. 7급 및 8급: 3년 이상
6. 9급: 2년 이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 기능직공무원 ” 을 각각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 ” 을 각각 “ 6급 이하 직원 ” 으로 한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별정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 일반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 지방계약직공무원 ” 을 “ 지방임기제공무원 ” 으로, “ 전임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 을 “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 ” 으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 를 “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 를 “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 로 한다.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 " 을 "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으로 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 을 "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 으로, "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을 "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 으로,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을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 " 을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 으로 한다.
3#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을 " 외교부 소속 공무원 " 으로 한다.
3$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 " 을 " 연구원 " 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 " 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 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 을 " 공무원 " 으로 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 을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 「계약직공무원규정」 " 을 " 「공무원임용령」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 를 “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 으로 한다.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9항 중 “ 계약직 지방공무원 ” 을 “ 지방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 ” 을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 로,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계약직 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4(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을 “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을 “ 6급 이하 공무원 ”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을 “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을 “ 6급 이하 공무원 ”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각각 본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철도경찰직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의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제1호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각각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30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 철도공안 ” 을 “ 철도경찰 ” 로 한다.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각각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 철도공안 ” 을 “ 철도경찰 ” 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	변호사, 법무사

⑦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을 각각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을 각각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제25075호,2014. 1. 10.>(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을 “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부칙 <제25137호,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유형 구분 등의 시범실시) 인사혁신처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전에 시범실시기관을 정하여 직위의 유형구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15호,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실시한 역량평가(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1)ㆍ2), 제8조제2항ㆍ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같은 항 제1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5제5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41조제3항제3호, 제41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42조제2항 후단,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호나목, 제46조, 제4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

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7조의6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 안전행정부 ”를 “ 행정자치부 ”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의2 중 “ 안전행정부ㆍ교육부 ”를 “ 교육부ㆍ행정자치부 ”로 한다.

별표4의2 제1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13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9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12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97호,2015. 7. 1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을 “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제26566호,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휴직대상 민간기업등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민간기업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부칙 <제26653호,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44호,2016. 2. 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256호,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정한 지역 거주자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27822호,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41조제9항,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6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20호,2017. 7. 26.>(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8572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31호,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7조의7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⑦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868호,2019.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30호,2019. 6. 25.>(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91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93호,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 "를 " 검사장과 "로 한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 군에 입대하는 " 을 " 징집 또는 소집되는 "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 군에 입대한 " 을 " 징집 또는 소집된 " 으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833호,2020. 7. 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42호,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사전 승인 사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전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직렬 및 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행정직군 행정직렬 운수직류	행정직군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
행정직군 방호직렬 경비직류	행정직군 방호직렬 방호직류
기술직군 공업직렬 야금직류	기술직군 공업직렬 금속직류
기술직군 농업직렬 잠업직류	기술직군 농업직렬 일반농업직류
기술직군 농업직렬 농화학직류	기술직군 농업직렬 일반농업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수산제조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수산증식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수산물검사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
기술직군 등대관리직렬 등대관리직류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 표지운영직류
기술직군 약무직렬 약제직류	기술직군 약무직렬 약무직류
기술직군 전산직렬 정보관리직류	기술직군 전산직렬 데이터직류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1337호,2020. 12. 29.>(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62호,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6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5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⑨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627호,2022. 5. 9.>(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151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3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원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92호,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양수산직렬 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표지운영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표지운영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을 "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 16 중 " 기술 분야 " 를 각각 " 과학기술 분야 " 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중 " 기술 분야 " 를 각각 " 과학기술 분야 " 로 한다.

별표 19 제2호 중 " 기술 분야 " 를 " 과학기술 분야 " 로, " 기술분야 " 를 " 과학기술 분야 " 로 한다.

별표 22 제3호 중 " 기술 분야 " 를 " 과학기술 분야 " 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 중 " 기술직군 " 을 각각 " 과학기술직군 " 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 기술직군 " 을 " 과학기술직군 "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 기술직군 " 을 각각 " 과학기술직군 " 으로 한다.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 " 을 "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 기술직 " 을 " 과학기술직ㆍ기술직 " 으로 한다.

⑥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기술직군 " 을 "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 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 직군 에서 " 를 " 직군에서 " 로, " 기술직렬 " 을 " 과학기술직렬 " 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직군란 중 " 기술 " 을 " 과학기술 " 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직군란 중 " 기술 " 을 " 과학기술 " 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 기술직군 " 을 각각 " 과학기술직군 " 으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 " 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으로 한다.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표 중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 ”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⑪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 ”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의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98호,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호 중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을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의2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을 각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으로 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을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부칙 <제34053호,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임용ㆍ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질병휴직 여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무상질병휴직의 연장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608호,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5191호,2025.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제3조(퇴직 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균형인사기본계획 등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라 수립된 균형인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인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35638호,2025.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로 한다.

②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임용령 제35조의3”을 “임용령 제35조의4”로 한다.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로 한다.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⑤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로 한다.

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35조의4”를 “제35조의5”로 한다.

⑦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0호,2026.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5조의5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무공무원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5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속승진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전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6486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형사법무직렬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및 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및 형사법무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개정 2026. 9. 29.>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과학기술	공업	일반기계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공업서기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농업	일반농업			농업사무관	농업주사	농업주사보	농업서기	농업서기보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임업	산림조경			임업사무관	임업주사	임업주사보	임업서기	임업서기보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의	수의			수의사무관	수의주사	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해양수산사무관	해양수산주사	해양수산주사보	해양수산서기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해양교통시설							
	기상	기상			기상사무관	기상주사	기상주사보	기상서기	기상서기보
		지진							
	보건	보건			보건사무관	보건주사	보건주사보	보건서기	보건서기보
		방역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사무관	의료기술주사	의료기술주사보	의료기술서기	의료기술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사무관	식품위생주사	식품위생주사보	식품위생서기	식품위생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의무사무관				
		치무							

	약무	약무			약무 사무관	약무 주사	약무 주사보		
	간호	간호			간호 사무관	간호 주사	간호 주사보	간호 서기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 사무관	간호조무 주사	간호조무 주사보	간호조무 서기	간호조무 서기보
	환경	일반환경	부이사관	과학기술 서기관	환경 사무관	환경 주사	환경 주사보	환경 서기	환경 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항공 사무관	항공 주사	항공 주사보	항공 서기	항공 서기보
		조종							
		정비							
		관제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무관	시설 주사	시설 주사보	시설 서기	시설 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재안전 사무관	방재안전 주사	방재안전 주사보	방재안전 서기	방재안전 서기보
	전산	전산개발			전산 사무관	전산 주사	전산 주사보	전산 서기	전산 서기보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방송통신	통신사			방송통신 사무관	방송통신 주사	방송통신 주사보	방송통신 서기	방송통신 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방송기술							
	방송무대	방송무대 기술			방송무대 사무관	방송무대 주사	방송무대 주사보	방송무대 서기	방송무대 서기보
		방송제작							
	운전	운전			운전	운전	운전	운전	운전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위생	위생			위생 사무관	위생 주사	위생 주사보	위생 서기	위생 서기보
		사역							
	조리	조리			조리 사무관	조리 주사	조리 주사보	조리 서기	조리 서기보
행정	교정	교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보호	보호			보호 사무관	보호 주사	보호 주사보	보호 서기	보호 서기보
	형사법무	형사법무			형사법무 사무관	형사법무 주사	형사법무 주사보	형사법무 서기	형사법무 서기보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사무관	출입국 관리 주사	출입국 관리 주사보	출입국 관리 서기	출입국 관리 서기보
	철도경찰	철도경찰			철도경찰 사무관	철도경찰 주사	철도경찰 주사보	철도경찰 서기	철도경찰 서기보
	행정	일반행정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 주사	직업상담 주사보	직업상담 서기	직업상담 서기보
	세무	세무				세무 주사	세무 주사보	세무 서기	세무 서기보
	관세	관세				관세 주사	관세 주사보	관세 서기	관세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무관	사회복지 주사	사회복지 주사보	사회복지 서기	사회복지 서기보
	통계	통계			통계 사무관	통계 주사	통계 주사보	통계 서기	통계 서기보
	사서	사서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감사	감사		감사관	부감사관	감사 주사	감사 주사보	감사 서기	감사 서기보

	방호	방호			방호 사무관	방호 주사	방호 주사보	방호 서기	방호 서기보
관리 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주사	토목운영 주사보	토목운영 서기	토목운영 서기보
	건축운영	건축운영				건축운영 주사	건축운영 주사보	건축운영 서기	건축운영 서기보
		목공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주사	통신운영 주사보	통신운영 서기	통신운영 서기보
	전화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주사	전화상담 운영 주사보	전화상담 운영 서기	전화상담 운영 서기보
	전기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주사	전기운영 주사보	전기운영 서기	전기운영 서기보
	기계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주사	기계운영 주사보	기계운영 서기	기계운영 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주사	열관리 운영 주사보	열관리 운영 서기	열관리 운영 서기보
	화공운영	화공운영				화공운영 주사	화공운영 주사보	화공운영 서기	화공운영 서기보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주사	선박항해 운영 주사보	선박항해 운영 서기	선박항해 운영 서기보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주사	선박기관 운영 주사보	선박기관 운영 서기	선박기관 운영 서기보
	농림운영	영림운영				농림운영 주사	농림운영 주사보	농림운영 서기	농림운영 서기보
		원예운영							
	산림보호 운영	산림보호 운영				산림보호 운영 주사	산림보호 운영 주사보	산림보호 운영 서기	산림보호 운영 서기보
	보건운영	보건운영				보건운영 주사	보건운영 주사보	보건운영 서기	보건운영 서기보
	사무운영	조무운영				사무운영 주사	사무운영 주사보	사무운영 서기	사무운영 서기보
		타자운영							
		전산운영							
		제도운영							
		필기운영							
		사서운영							
		편집운영							
		집배운영							
		기상관측 운영							

		감식운영							

■ 공무원임용령 [별표 2] <개정 2013.11.20>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제3조제4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우정 1급	우정 2급	우정 3급	우정 4급	우정 5급	우정 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우정	우정	우정	우정 사무관	우정 사무관	우정 주사	우정 주사	우정 주사	우정 주사	우정 주사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보

■ 공무원임용령 [별표 3] 삭제 <2013.11.20>

■ 공무원임용령 [별표 4] <개정 2012.1.26>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1항제10호 관련)

구 분	계 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박 사	8년	4년	-	-
	석 사	12년	8년	4년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개정 2023. 12. 26.>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16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5] <개정 2017. 12. 29.>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33조 및 제34조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6] 삭제 <2005.12.30>

■ 공무원임용령 [별표 7] 삭제 <2011.3.7>

[별지 서식] 삭제 <2009.3.31>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 - 201 - 8204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16.>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으로 본다.<신설 2017. 1. 10., 2026. 6. 30.>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20. 9. 22.>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1. 4. 4., 2011. 11. 1., 2012. 11. 27., 2013. 2. 20.,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5. 5. 6., 2026. 9. 29.>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 6. 29.>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6. 10. 13.>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의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7.>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 8. 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1.>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 11. 27., 2014. 10. 8., 2015. 5. 6., 2018. 12. 18., 2021. 11. 30.>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3. 12. 4.>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개정 2009. 9. 10., 2011. 11. 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 경력경쟁채용시험 ”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5.>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신설 2023. 12.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은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신설 2023. 12. 5.>

1. 전직시험의 시험과목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

④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1. 11. 1., 2012. 6. 29., 2014. 10. 8., 2015. 5. 6., 2023. 12. 5.>

⑤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5.>

⑥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4. 4., 2012. 6. 29., 2023. 12. 5.>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실기시험의 병행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과목

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②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5.]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한다.<개정 2022. 1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삭제<2013. 12. 4.>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ㆍ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5. 9. 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12. 5., 2026. 6. 30.>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응시자격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ㆍ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채용시험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

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1. 27.,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8. 12. 18.>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20.]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1. 11. 1.>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8., 2014. 11. 19.>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 이상
2.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

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신설 2011. 11. 1., 2012. 6. 29.>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1. 11. 1.>

④ 삭제<2013. 12. 4.>

[본조신설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4. 10. 8.]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10. 8.>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④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 9. 10., 2014. 10. 8.>

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⑥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4. 10. 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4. 10. 8.]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4. 10. 8., 2026. 6. 30.>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4. 22., 2014. 10. 8.,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신설 2013. 4. 22., 2014. 10. 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 보통 ”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 우수 ”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 미흡 ”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22., 2014. 10. 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4. 22., 2017. 1. 31., 2026. 10. 13.>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4. 10. 8.]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외교 분야: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2. 지역외교 분야: 특정 지역의 외교통상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3. 외교 전문 분야: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법 등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②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각 시험의 단계별 실시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 10. 8., 2018. 12. 18.>

1. 일반외교 분야: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서류전형. 이 경우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제3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4. 10. 8.>

④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응시자가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별표 3의2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 10. 8.>

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ㆍ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2015. 12. 30.>

[본조신설 2012. 11. 27.]

[대통령령 제29374호(2018. 12. 18.)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2015. 12. 30., 2018. 12. 18., 2026. 6. 30.>

③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4. 22., 2018. 12. 18.,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⑤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한 경우에는 별표 6의2에서 정한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신설 2013. 4. 22., 2015. 12. 30., 2018. 12. 1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처음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22., 2018. 12. 1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4. 22., 2017. 1. 31., 2026. 10. 13.>

[본조신설 2012. 11. 27.]

[제목개정 2018. 12. 18.]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 또는 관련 전문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23. 8. 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첫 번째 단계 면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제3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 면접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2018. 12. 18.)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2013. 12. 4.>
④ 제1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4., 2018. 12. 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을 준용하지 않는다.<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12. 4.]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5. 6., 2018. 12. 18.>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하고,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 11. 30., 2026. 6. 30.>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에 상당하는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

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12. 4.,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12. 4., 2014. 11. 19.>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3. 12. 4., 2024. 12. 1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5. 6., 2021. 11. 30.>

1. 삭제<2021. 11. 30.>

2. 삭제<2021. 11. 30.>

⑧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2. 4., 2024. 12. 10.>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5. 6., 2017. 1. 31., 2021. 11. 30., 2023. 12. 5., 2026. 10. 13.>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음에도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 인원(제9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합격자는 제외한다)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이 항 전단에 따라 추가로 결정된 제2차시험 합격자로 본다.<신설 2023. 12. 5.>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12. 4.]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1. 11. 1.>

③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 10., 2013. 3. 23., 2014. 11. 19., 2023. 8. 1., 2026. 6. 30.>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 9. 10., 2011. 11. 1., 2026. 6. 30.>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1. 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9., 2013. 3. 23., 2013. 4. 22., 2013. 12. 4., 2014. 11. 19., 2015. 5. 6., 2018. 5. 8., 2023. 12. 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신설 2018. 5. 8., 2023. 12. 5.>

1.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10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2018. 5. 8.>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경우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8. 5. 8., 2023. 12. 5.>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 2018. 5. 8.>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1. 4. 4., 2011. 11. 1., 2014. 10. 8., 2018. 5. 8.>

⑦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8. 5. 8.>

⑧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4. 10. 8., 2018. 5. 8.>

⑨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8. 5.

8.>

⑩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3. 12. 5.>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4. 4., 2011. 11. 1., 2013. 3. 23., 2013. 4. 22., 2014. 10. 8., 2014. 11. 19., 2015. 5. 6., 2018. 5. 8., 2026. 6. 30.>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4. 22., 2023. 8.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신설 2013. 4. 22., 2014. 10. 8.>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3. 4. 22., 2014. 11. 19., 2017. 1. 31., 2020. 9. 2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11. 1.]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삭제 <2015. 5. 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③ 삭제<2015. 5. 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5. 6., 2017. 1. 31.>

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시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5. 6., 2018. 12. 18., 2023. 12. 5.>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신설 2015. 5. 6.>

⑦ 제6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11. 18., 2018. 12. 18.]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31.>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개정 2018. 5. 8., 2021. 4. 6., 2025. 6. 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제23조의3·제23조의4·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2. 6. 29., 2012. 11. 27., 2018. 12. 18., 2019. 11. 5.>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개정 2011. 11. 1., 2012. 11. 27.>

③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삭제<2019. 11. 5.>

⑤ 삭제<2019. 11. 5.>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5. 5. 6., 2017. 1. 31.>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0. 2. 12., 2015. 5. 6., 2017. 1. 31., 2023. 4. 11.>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6.>

⑤ 삭제<2024. 4. 23.>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9. 22., 2023. 8. 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12. 4.>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4. 10. 8., 2022. 11.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2023. 1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개정 2009. 2. 6.>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통계ㆍ감사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 2. 20., 2013. 12. 16., 2026. 9. 29.>

④ 삭제<2013. 12. 4.>

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시험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6. 30.>

[전문개정 2009. 2. 6.]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개정 2013. 4. 22., 2026. 6.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6. 30.>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6.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6. 6. 30.>

[전문개정 2009. 2. 6.]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2011. 11. 1.>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4. 10. 8.>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② 제4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4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2012. 5. 1., 2012. 11. 27.>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2011. 11. 1., 2022. 11. 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0. 2. 12., 2011. 11. 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12. 4., 2014. 10. 8.>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2., 2022. 1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4. 4.]

제49조(시험의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① 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② 삭제<2020. 9. 22.>

[본조신설 2011. 4. 4.]

[제목개정 2011. 11. 1.]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 2. 12., 2014. 10. 8., 2014. 11. 19.>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5. 8., 2026. 6. 30.>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4. 10. 8.,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 ”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응시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이나 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1. 4. 4., 2024.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23.]

부칙 <제18424호,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2조、제23조、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3조제3항、제25조제3항、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제38조제2항、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훈령、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8617호,2004.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716호,2005. 2. 25.>(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3항 후단중 “ 별표 13의 응시배수 ”를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 ”로 한다.

부칙 <제18842호,2005. 5. 26.>(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제18932호,2005. 6. 30.>(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제19252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 삭제 <2013. 2. 20.>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459호,2006. 4. 27.>(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 2급은 10년 이상 ”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1* 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08호,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060호,2007.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2호,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0호,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888호,2008. 6. 2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헌법, 행정법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헌법, 행정법, 영어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
|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
1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교육학개론

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행정	변호사			

부칙 <제21086호,2008.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10호,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721호,2009.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시설 직렬의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과 통신 직렬의 직렬명에 관한 부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사무 직렬 및 마약수사 직렬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2. 12.>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29호,2010.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호, 별표 1(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835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 행정고등고시 "를 "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 행정고등고시 "를 "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한다.

부칙 <제23014호,2011. 7. 4.>(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9급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3277호,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4조제4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명장에 관한 부분,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6. 29.>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 특별채용대상"을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으로 한다.

④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 특별채용예정계급별 ” 을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 로 한다.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 특별채용 ” 을 “ 채용 ” 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 (특별채용) ” 을 “ (경력경쟁채용등)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 를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특별채용할 ” 을 “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 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 특별채용 ” 을 “ 경력경쟁채용등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 ” 을 “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를 “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 특별채용시험과목 ”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 ” 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 특별채용시험 ”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 특별채용된 ”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 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 특별채용 ”을 “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 특별채용 ”을 “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 특별채용대상 ”을 “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 특별채용 ”을 “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 특별채용대상 ”을 “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 특별채용예정 ”을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 특채 ”를 각각 “ 경채 ”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 특채 ”를 “ 경채 ”로,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 특채 ”를 각각 “ 경채 ”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 특채 ”를 “ 경채 ”로,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 (특별채용) ”을 “ (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특별채용 ”을 “ 채용 ”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 특별채용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한다.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특별채용 ”을 “ 채용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 ”을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특별채용 ”을 “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특별채용하는 ”을 “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 ”을 “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 ”으로 한다.
⑫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7호 중 “ 특별채용시험의 지원ㆍ관리 ”를 “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ㆍ관리 ”로, “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를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로

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수	부교수	조교수				

⑪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59호,2012. 5. 1.>(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99호,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별표 1(교정 직렬에 관한 부분 및 대통령령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정 직렬 시험과목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교정 직렬 교정 직류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200호,2012.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합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80호,2013. 2. 2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검찰					

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찰	검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 외교통상부장관 ”을 “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4호,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12. 4.>

부칙 <제24896호,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을 각각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 철도공안 "을 " 철도경찰 "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경찰	철도경찰	-	변호사, 법무사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648호,2014.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 후단,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및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 제23조제4항 전단, 제23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제4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64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33호,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직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 및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1(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2, 별표 3(비고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5(전산 직렬 정보보호 직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제2조(영어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 인정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토익, 토플 등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시행사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별표 3 비고 제1호 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고시한 소명방법에 따라 시험 점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2조제6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헌법과목 신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으로서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5조(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실시된 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66호,2015. 9. 25.>(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 견습 ”을 “ 수습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654호,2015. 11. 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0호,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5급 이상 공채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생략

부칙 <제27823호,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및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78호,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29호,2018. 7. 3.>(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374호,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시험의 응

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0200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46호,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 대체 검정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설되는 직류의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해양수산 직렬 표지운영 직류 및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채의 제1차 필수란의 개정규정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국어(한문 포함)"로 본다.

제4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1, 별표 5,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14호,2021. 4.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63호,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98호,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11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47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82호,2023. 4. 11.>(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 국가보훈처장 ”을 “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한다.

<6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57호,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3항, 제23조의4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4조제6항,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92호,2023. 8. 3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 기술직군 ”을 “ 과학기술직군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 기술직군 ”을 각각 “ 과학기술직군 ”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910호,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36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25조제9항 후단ㆍ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조,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별표 4 제1호 신규채용의 채용신체검사서 1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한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 중 “ 문화재관리학 ”을 각각 “ 국가유산관리학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의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의 개정규정 중 “ 문화재관리학 ”을 각각 “ 국가유산관리학 ”으로 한다.

⑩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94호,2024. 5. 7.>(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의 공업 직렬의 화공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공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

별표 8 제2호의 임업 직렬의 산림조경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조경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별표 8 제2호의 시설 직렬의 건축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65호,2024.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588호,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2.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9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5항 중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 ”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중 “ 합격확인서 ”를 “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 ”로 한다.

부칙 <제36490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ㆍ제2항, 대통령령 제3558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7조제1항제4호라목ㆍ마목,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제8호 및 대통령령 제3558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표 7 비고 및 별표 8 제2호 비고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8 제1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ㆍ제2항, 대통령령 제3558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7조제1항제4호라목ㆍ마목, 제30조제1항제4호 및 대통령령 제3558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7 비고 및 별표 8 제2호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757호,2026.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및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개정 2026. 9. 29.>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1. 행정직군

계급	시험과목		직렬	교정	보호	형사법무
			직류	교정	보호	형사법무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형사소송법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헌법	형법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선택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형법총론
		제2차	필수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선택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직류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행정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형사소송법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국제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형법, 행정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영어	헌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형사소송법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형법, 행정법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영어	사회
		제2차	필수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선택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일반행정	인사조직	법무행정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인사·조직론, 행정학	
			선택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경제학, 영어	헌법, 경제학,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헌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행정학	행정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인사·조직론	행정법
			선택	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지방행정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국제법, 노동법, 사회법, 민사소송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인사·조직론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노동법, 노동경제학, 행정법, 경제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경영학, 노동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사회학, 산업조직론 중 2과목
			선택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경제학, 재정학, 행정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학	노동법, 노동경제학, 경제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경제학	영어	노동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선택	행정학, 재정학, 회계학, 통계학, 경영학, 무역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국제경제학, 국제법, 무역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사회학, 경제학,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경제학개론	국제법개론	노동법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문화사, 매스컴론,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문화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학, 관광학, 종교학, 국가유산관리학, 매스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공공관계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출판잡지론 중 2과목	교육학	
			선택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문화사, 행정학, 매스컴론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문화사	교육학	회계학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선택	매스컴론, 한국사상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술사, 미학, 관광학, 종교학, 인류학, 국가유산관리학, 커뮤니케이션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경영학, 세법, 상법,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경제학개론, 회계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교육학개론	회계학
			선택	문화사, 국가유산관리학, 매스컴론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직업상담	세무	관세
			직류	직업상담	세무	관세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제2차	필수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선택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	회계학, 세법, 재정학	무역학, 관세법, 재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심리학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노동법	행정법	행정법
		제2차	필수	직업상담·심리학	세법, 회계학	관세법
			선택	직업정보론, 노동경제학 중 1과목		무역학, 경제학, 형법총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세법개론, 회계학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고용관계법규	세법개론	관세법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직류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참고봉사론, 정보학개론	재정학,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통계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재정학
			선택	사회학, 사회정책, 사회법,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중 1과목			회계학, 행정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경제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자료선택론	재정학, 회계학, 경제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헌법,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복지학	행정법	행정법	재정학
		제2차	필수	행정법	통계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행정법, 회계학
			선택	행정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문제론,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표본조사론, 경제수학, 경제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행정법총론, 회계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수학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통계학개론	자료조직개론	회계학

2. 기술직군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업		
			직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농업동역학	기계공작법
			선택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자동제어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농업동역학	기계공작법
			선택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업		
			직류	항공우주	전기	전자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항공역학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선택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1과목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우주공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항공역학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선택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전자재료, 통신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비행원리, 항공기전자장치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자기기, 전자공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기일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비행원리, 항공기전자장치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업		
			직류	원자력	조선	금속
5급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제련원리, 물리야금, 주조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금속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원자로공학	조선해양공학	제련원리
			선택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핵화학공학 중 1과목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선박유체역학, 조선공작법 중 1과목	분말야금, 주조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일반금속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화학야금, 물리야금, 주조공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원자로공학, 원자로안전공학, 보건물리학	물리학개론,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유체역학	물리학개론, 제련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일반금속학
		제2차	필수	원자로공학	조선해양공학	제련원리, 주조공학
			선택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중 1과목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조선공작법, 선박유체역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조선공학일반, 선박구조	금속재료, 금속가공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화학
		제2차	필수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조선공학일반, 선박구조	금속재료, 금속제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업			
			직류	섬유	화공	자원	물리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섬유공학개론, 행정법총론	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자원공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섬유재료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자원개발공학	일반역학
			선택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방사공학 중 1과목		지질학, 물리탐사, 응용지구화학, 암석역학, 자원경제학, 자원처리공학, 석유개발공학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양자역학, 고체물리학, 열물리학, 광학, 원자핵물리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섬유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화학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자원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광물처리공학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개론, 방적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가공학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물리학개론,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	물리학개론,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광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천연섬유학	화학공학개론	자원공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인조섬유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자원개발공학	일반역학
			선택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중 1과목		지질학, 물리탐사, 암석역학, 자원처리공학 중 1과목	전기자기학, 현대물리학, 열물리학, 유체역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섬유재료, 방적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자원개발, 자원처리	물리, 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화학	화학	물리	수학
		제2차	필수	섬유재료, 방적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자원개발, 지질학개론	물리, 지구과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농업			
			직류	일반농업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작물육종학, 유전학, 생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재배학, 행정법총론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축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식용작물학	작물보호학	가축사양학	작물육종학
			선택	토양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농약학, 잡초학 중 1과목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축산가공학 중 1과목	생화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재배학,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축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식용작물학, 토양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생물학개론,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재배학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재배학	생물학개론	축산학개론	생물학개론
		제2차	필수	식용작물학	작물보호학	가축사양학	작물육종학
			선택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잡초학, 농약학 중 1과목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축산가공학 중 1과목	분자생물학, 생화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재배학개론, 작물보호	가축사양, 가축육종	생물학개론, 유전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생물	축산	생물
		제2차	필수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작물, 농업생산환경	가축사양, 초지	유전학, 작물육종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임업			
			직류	산림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	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림학, 행정법총론	조림학, 행정법총론	조림학, 행정법총론	수목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조경계획학	임업경영학	산림보호학	목재해부학
			선택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산림보호학, 산림정책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산림공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림공학, 수목학 중 1과목	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조경계획학,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조림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	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산림보호학, 산림공학	생물학개론, 목재이학, 목재화학, 목재가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림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제2차	필수	조경계획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목재해부학
			선택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수목학, 산림보호학, 산림공학, 임업경영학, 목재가공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림공학, 수목학 중 1과목	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 조경계획	조림, 임업경영	조림, 산림보호	조림, 임산가공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생물	생물	생물
		제2차	필수	조림, 조경계획	조림, 임업경영	조림, 산림보호	조림, 임산가공

계급	시험과목		직렬	수의	해양수산	
			직류	수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양학개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행정법총론	해양학개론, 행정법총론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선택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내과학, 수의산과학 중 1과목	지질해양학, 화학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공학 중 1과목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행정법, 영어	해양학개론, 행정법, 영어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물리해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생물학개론,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경영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해양학개론	수산학개론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해양오염학	수산생물학
			선택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	지질해양학, 생물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조사방법론 중 1과목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수산일반, 수산경영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해양학개론	수산일반
		제2차	필수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	수산생물, 수산경영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양수산		
			직류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해상안전론	항해학
			선택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선박기관학, 항해학 중 1과목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론, 항해계기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어구어법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상안전론	물리학개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선박개론	선박개론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해상안전론	항해학
			선택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사영어, 해상보험론, 해운론 중 1과목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론, 항해계기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수산일반, 어업	선박기관, 항해	항해, 선박운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일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어업, 수산법규	기관일반, 선박일반	선박일반, 항해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양수산		
			직류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해사영어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총론	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지문항해학
			선택	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기공학, 전자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1과목	해사영어, 해상교통법,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목	해양물리, 수심측량, 지도제작(해도), 수로도지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 영어	지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항해학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물리학개론,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해상교통관리론	지학개론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지문항해학
			선택	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기공학, 전자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1과목	해상교통법, 해사영어,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목	해양물리, 수심측량, 전자공학, 전기공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선박기관,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 항해	지구과학, 지문항해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해상교통관리	수학
		제2차	필수	선박일반, 선박기관	해사영어, 항해	지구과학
			선택			지문항해, 산업기술, 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양수산	기상	
			직류	해양교통시설	기상	지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항해학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기상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지진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표지통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선택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기상역학, 기후학,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기상학개론, 행정법, 영어	일반지진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표지통론,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지구과학개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전파공학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지구과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기상학개론	일반지진학
		제2차	필수	표지통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선택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기상역학, 기후학,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 응용역학개론	물리, 지구과학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학	수학	일반지진학
		제2차	필수	물리	물리, 지구과학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선택	지문항해, 전기일반, 기계일반, 전자공학개론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직류	보건	방역	의료기술	식품위생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	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전염병관리	식품저장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총론	보건학, 행정법총론	보건학, 행정법총론	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보건행정학	식품저장학
			선택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 영어	보건학, 행정법, 영어	보건학, 행정법, 영어	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	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전염병관리	식품저장학, 환경보건학, 보건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해부생리학	화학개론, 식품위생학, 식품저장학, 식품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보건학	보건학	보건학	식품위생학개론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보건행정학	식품저장학
			선택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보건교육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환경보건학,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공중보건, 보건행정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생물	생물	화학
		제2차	필수	환경보건, 공중보건	공중보건, 역학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계급	시험과목		직렬	의무		약무	간호
			직류	일반의무	치무	약무	간호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산업 및 환경보건	예방치과학, 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구강보건학, 행정법총론	화학개론, 행정법총론	간호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역학	예방치과학	약제학	간호관리학
			선택	보건행정학, 산업 및 환경보건 중 1과목	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 치과보존학, 치과교정학, 소아치과학, 치주과학, 치과방사선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구강병리학 중 1과목	약전학, 생물학, 생약학, 약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지역사회간호학,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화학개론, 행정법, 영어	간호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생물학개론, 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화학개론	간호학
		제2차	필수			약제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선택			약전학, 약물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제2차	필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계급	시험과목		직렬	환경			
			직류	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선택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 중 1과목	미기상학,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대기오염분석, 유체역학 중 1과목	유독물질관리, 산업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환경계획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화학개론,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리수문학	화학개론,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연소공학	화학개론, 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환경미생물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제2차	필수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선택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 중 1과목	미기상학,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대기오염분석, 유체역학 중 1과목	환경화학,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학, 환경미생물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 환경공학개론	화학, 수질오염개론	화학, 대기오염개론	화학, 폐기물처리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환경공학개론	환경공학개론	환경공학개론	환경공학개론
		제2차	필수	화학, 환경보건	화학, 환경보건	화학, 지구과학	화학, 환경보건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항공			
			직류	일반항공	조종	정비	관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정책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항공법규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선택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공기전자장치, 항공정책 중 1과목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 항공기제어장치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정책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항공교통업무, 항행안전시설, 항공법규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항공개론	항공개론	항공개론
		제2차	필수	항공법규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교통업무
			선택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공기전자장치 중 1과목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 항공기제어장치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기일반, 항공법규	공중항법개론, 비행이론	항공기정비일반,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 항공법규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물리	지구과학
		제2차	필수	항공법규, 항공기일반	공중항법개론, 비행이론	항공법규, 항공기정비일반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직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경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도시계획,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	응용역학	건축계획학
			선택	단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사회학, 도시 및 지역경제, 지적학, 측량학 중 1과목	측량학,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중 1과목	측량학,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학, 토질역학, 농촌계획학 중 1과목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도시계획,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농업수리학, 농지조성학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경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도시계획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	응용역학	건축계획학
			선택	단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사회학, 도시 및 지역경제, 지적학, 측량학 중 1과목	측량학,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중 1과목	측량학,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학, 토질역학 중 1과목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응용역학개론, 농업수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지리	물리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개론, 측량	농지조성, 농업수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직류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적학,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지적학,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	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지적측량학	측지학	교통계획	교통계획
			선택	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량제외), 사진측량학, 지도학, 중력 및 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	교통설계,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계획, 도시사회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지적학,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응용측량학	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물리학개론, 측지학, 측량학, 사진측량학	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설계, 교통운영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지적학	물리학개론	교통공학개론	교통공학개론
		제2차	필수	행정법	측지학	교통계획	교통계획
			선택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량제외), 사진측량학, 측량법규, 지도학, 중력 및 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	교통설계,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계획, 도시사회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지구과학, 측량	교통공학개론, 교통운영	교통공학개론, 교통설계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학	수학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지적측량, 지적법규	지구과학, 측량	교통공학개론, 교통계획	교통공학개론, 교통계획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방재안전
			직류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총론	디자인기획론, 행정법총론	재난관리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공공디자인행정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선택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단지계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공, 경관계획 및 관리, 조경식물학 중 1과목	공간디자인론,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옥외광고디자인론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 영어	디자인기획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조경재료 및 시공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공간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공공디자인행정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선택	조경생태학, 조경사 및 이론, 단지계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공, 경관계획 및 관리 중 1과목	디자인기획론,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옥외광고디자인론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공간디자인론	물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공원녹지학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전산			
			직류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컴퓨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네트워크 보안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통계, 알고리즘 중 1과목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	컴퓨터구조론, 행정법, 영어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정보보호론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구조론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정보보호론	소프트웨어공학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공학 중 1과목	정보보호 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보호 기술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컴퓨터 일반	컴퓨터 일반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 일반
		제2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계급	시험과목		직렬	방송통신			
			직류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통신이론	통신이론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기자기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통신이론	통신이론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중 1과목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1과목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통신이론, 전파공학개론(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전기이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비고
1. "경채"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
2. "승진"이라 함은 일반승진시험을 말한다.
3. "공승"이라 함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말한다.
4. 시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언어논리영역은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나. 자료해석영역은 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다. 상황판단영역은 상황의 이해, 추론과 분석, 문제해결, 판단과 의사결정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개정 2026. 9. 29.>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1. 행정직군

계급	시험과목		직렬	교정	보호	형사법무
			직류	교정	보호	형사법무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형사소송법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헌법	형법
		제2차	필수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선택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형법총론
		제2차	필수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선택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직류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행정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형사소송법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국제법, 이민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형법, 행정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영어	헌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형사소송법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이민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형법, 행정법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영어	사회
		제2차	필수		행정법총론
			선택	국제법개론, 이민법개론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일반행정	인사조직	법무행정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인사·조직론, 행정학	
			선택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경제학, 영어	헌법, 경제학,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헌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행정학	행정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인사·조직론	행정법
			선택	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지방행정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국제법, 노동법, 사회법, 민사소송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인사·조직론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노동법, 노동경제학, 행정법, 경제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경영학, 노동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사회학, 산업조직론 중 2과목
			선택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경제학, 재정학, 행정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학	노동법, 노동경제학, 경제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경제학	영어	노동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선택	행정학, 재정학, 회계학, 통계학, 경영학, 무역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국제경제학, 국제법, 무역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사회학, 경제학,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경제학개론	국제법개론	노동법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문화사, 매스컴론,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문화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학, 관광학, 종교학, 국가유산관리학, 매스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공공관계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출판잡지론 중 2과목	교육학	
			선택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문화사, 행정학, 매스컴론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문화사	교육학	회계학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선택	매스컴론, 한국사상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술사, 미학, 관광학, 종교학, 인류학, 국가유산관리학, 커뮤니케이션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경영학, 세법, 상법,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경제학개론, 회계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교육학개론	회계학
			선택	문화사, 국가유산관리학, 매스컴론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직업상담	세무	관세
			직류	직업상담	세무	관세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제2차	필수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제2차	필수			
			선택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	회계학, 세법, 재정학	무역학, 관세법, 재정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심리학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노동법	행정법	행정법
		제2차	필수	직업상담·심리학	세법, 회계학	관세법
			선택	직업정보론, 노동경제학 중 1과목		무역학, 경제학, 형법총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세법개론, 회계학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고용관계법규	세법개론	관세법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직류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참고봉사론, 정보학개론	재정학,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통계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재정학
			선택	사회학, 사회정책, 사회법,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중 1과목			회계학, 행정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경제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자료선택론	재정학, 회계학, 경제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헌법,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복지학	행정법	행정법	재정학
		제2차	필수	행정법	통계학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행정법, 회계학
			선택	행정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문제론,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표본조사론, 경제수학, 경제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행정법총론, 회계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수학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통계학개론	자료조직개론	회계학

2. 기술직군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업		
			직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농업동역학	기계공작법
			선택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철도차량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자동제어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기계공작법	농업동역학	기계공작법
			선택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학 중 1과목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업		
			직류	항공우주	전기	전자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항공역학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선택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1과목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항공우주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우주공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항공역학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선택	항공기구조역학, 항공기동력장치, 구조해석,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트공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압축성공기역학, 제어원리 중 1과목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전자재료, 통신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비행원리, 항공기전자장치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자기기, 전자공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기일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비행원리, 항공기전자장치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업		
			직류	원자력	조선	금속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제련원리, 물리야금, 주조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금속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원자로공학	조선해양공학	제련원리
			선택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핵화학공학 중 1과목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선박유체역학, 조선공작법 중 1과목	분말야금, 주조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일반금속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원자로공학,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화학야금, 물리야금, 주조공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원자로공학, 원자로안전공학, 보건물리학	물리학개론, 조선해양공학, 선박설계, 선박유체역학	물리학개론, 제련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일반금속학
		제2차	필수	원자로공학	조선해양공학	제련원리, 주조공학
			선택	원자로이론, 보건물리학, 핵재료공학, 핵연료관리 중 1과목	선박설계, 선박구조역학, 조선공작법, 선박유체역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조선공학일반, 선박구조	금속재료, 금속가공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화학
		제2차	필수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조선공학일반, 선박구조	금속재료, 금속제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업			
			직류	섬유	화공	자원	물리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섬유공학개론, 행정법총론	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자원공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섬유재료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자원개발공학	일반역학
			선택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방사공학 중 1과목		지질학, 물리탐사, 응용지구화학, 암석역학, 자원경제학, 자원처리공학, 석유개발공학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양자역학, 고체물리학, 열물리학, 광학, 원자핵물리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섬유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화학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자원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광물처리공학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개론, 방적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가공학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물리학개론, 자원개발공학, 지질학, 자원처리공학	물리학개론,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광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천연섬유학	화학공학개론	자원공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인조섬유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자원개발공학	일반역학
			선택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중 1과목		지질학, 물리탐사, 암석역학, 자원처리공학 중 1과목	전기자기학, 현대물리학, 열물리학, 유체역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섬유재료, 방적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자원개발, 자원처리	물리, 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화학	화학	물리	수학
		제2차	필수	섬유재료, 방적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자원개발, 지질학개론	물리, 지구과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농업			
			직류	일반농업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작물육종학, 유전학, 생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재배학, 행정법총론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축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식용작물학	작물보호학	가축사양학	작물육종학
			선택	토양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농약학, 잡초학 중 1과목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축산가공학 중 1과목	생화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재배학,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축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식용작물학, 토양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생물학개론,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재배학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재배학	생물학개론	축산학개론	생물학개론
		제2차	필수	식용작물학	작물보호학	가축사양학	작물육종학
			선택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잡초학, 농약학 중 1과목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축산가공학 중 1과목	분자생물학, 생화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재배학개론, 작물보호	가축사양, 가축육종	생물학개론, 유전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생물	축산	생물
		제2차	필수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작물, 농업생산환경	가축사양, 초지	유전학, 작물육종학

계급	시험과목		직렬	임업			
			직류	산림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	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림학, 행정법총론	조림학, 행정법총론	조림학, 행정법총론	수목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조경계획학	임업경영학	산림보호학	목재해부학
			선택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산림보호학, 산림정책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산림공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림공학, 수목학 중 1과목	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조경계획학,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생물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조림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수목학	수목학, 목재이학, 목재화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산림보호학, 산림공학	생물학개론, 목재이학, 목재화학, 목재가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림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제2차	필수	조경계획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목재해부학
			선택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수목학, 산림보호학, 산림공학, 임업경영학, 목재가공학 중 1과목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산림공학, 수목학 중 1과목	목재이학, 목재화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 조경계획	조림, 임업경영	조림, 산림보호	조림, 임산가공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생물	생물	생물
		제2차	필수	조림, 조경계획	조림, 임업경영	조림, 산림보호	조림, 임산가공

계급	시험과목		직렬	수의	해양수산	
			직류	수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양학개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행정법총론	해양학개론, 행정법총론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선택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내과학, 수의산과학 중 1과목	지질해양학, 화학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공학 중 1과목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행정법, 영어	해양학개론, 행정법, 영어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물리해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 해양생태학	생물학개론,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경영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의미생물학	해양학개론	수산학개론
		제2차	필수	수의보건학	해양오염학	수산생물학
			선택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	지질해양학, 생물해양학, 물리해양학, 해양조사방법론 중 1과목	수산해양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수산일반, 수산경영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해양학개론	수산일반
		제2차	필수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염학	수산생물, 수산경영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양수산		
			직류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해상안전론	항해학
			선택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선박기관학, 항해학 중 1과목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론, 항해계기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어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업기기학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어구어법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상안전론	물리학개론,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전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학개론	선박개론	선박개론
		제2차	필수	어구어법학	해상안전론	항해학
			선택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산자원학, 선박운용학 중 1과목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사영어, 해상보험론, 해운론 중 1과목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안전론, 해운론, 항해계기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수산일반, 어업	선박기관, 항해	항해, 선박운용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산일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어업, 수산법규	기관일반, 선박일반	선박일반, 항해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양수산		
			직류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해사영어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총론	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지문항해학
			선택	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기공학, 전자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1과목	해사영어, 해상교통법,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목	해양물리, 수심측량, 지도제작(해도), 수로도지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해상교통관리론, 행정법, 영어	지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항해학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론,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물리학개론,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양물리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선박개론	해상교통관리론	지학개론
		제2차	필수	선박기관학	항해학	지문항해학
			선택	기관설비규정, 보조기계, 기계공작법, 선박자동제어, 전기공학, 전자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1과목	해상교통법, 해사영어, 무선통신공학, 선박조종학 중 1과목	해양물리, 수심측량, 전자공학, 전기공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선박기관, 보조기계	해상교통관리, 항해	지구과학, 지문항해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해상교통관리	수학
		제2차	필수	선박일반, 선박기관	해사영어, 항해	지구과학
			선택			지문항해, 산업기술, 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해양수산	기상	
			직류	해양교통시설	기상	지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항해학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기상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지진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표지통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선택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기상역학, 기후학,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기상학개론, 행정법, 영어	일반지진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표지통론,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지구과학개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전파공학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개론, 지질학개론, 지구과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기상학개론	일반지진학
		제2차	필수	표지통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선택	지문항해학, 전파항해학, 전자공학, 일반기계공학, 전기기기, 전파공학 중 1과목	기상역학, 기후학,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 응용역학개론	물리, 지구과학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학	수학	일반지진학
		제2차	필수	물리	물리, 지구과학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개론
			선택	지문항해, 전기일반, 기계일반, 전자공학개론 중 1과목		

계급	시험과목		직렬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직류	보건	방역	의료기술	식품위생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감염병관리	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감염병관리	식품저장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총론	보건학, 행정법총론	보건학, 행정법총론	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보건행정학	식품저장학
			선택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학, 감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 영어	보건학, 행정법, 영어	보건학, 행정법, 영어	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감염병관리	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감염병관리	식품저장학, 환경보건학, 보건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해부생리학	화학개론, 식품위생학, 식품저장학, 식품화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보건학	보건학	보건학	식품위생학개론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보건행정학	식품저장학
			선택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보건교육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임상병리학, 감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환경보건학,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공중보건, 보건행정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생물	생물	화학
		제2차	필수	환경보건, 공중보건	공중보건, 역학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계급	시험과목		직렬	의무		약무	간호
			직류	일반의무	치무	약무	간호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산업 및 환경보건	예방치과학, 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구강보건학, 행정법총론	화학개론, 행정법총론	간호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역학	예방치과학	약제학	간호관리학
			선택	보건행정학, 산업 및 환경보건 중 1과목	구강외과학, 치과보철학, 치과보존학, 치과교정학, 소아치과학, 치주과학, 치과방사선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구강병리학 중 1과목	약전학, 생물학, 생약학, 약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지역사회간호학,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화학개론, 행정법, 영어	간호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생물학개론, 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화학개론	간호학
		제2차	필수			약제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선택			약전학, 약물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제2차	필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계급	시험과목		직렬	환경			
			직류	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선택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 중 1과목	미기상학,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대기오염분석, 유체역학 중 1과목	유독물질관리, 산업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환경계획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대기오염분석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화학개론,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리수문학	화학개론, 대기오염관리, 미기상학, 연소공학	화학개론, 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환경미생물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환경공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제2차	필수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선택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 중 1과목	미기상학, 소음진동학, 연소공학, 대기환경화학, 대기오염분석, 유체역학 중 1과목	환경화학,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학, 환경미생물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 환경공학개론	화학, 수질오염개론	화학, 대기오염개론	화학, 폐기물처리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환경공학개론	환경공학개론	환경공학개론	환경공학개론
		제2차	필수	화학, 환경보건	화학, 환경보건	화학, 지구과학	화학, 환경보건

계급	시험과목		직렬	항공			
			직류	일반항공	조종	정비	관제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정책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항공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항공법규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선택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공기전자장치, 항공정책 중 1과목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 항공기제어장치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항공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정책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정보, 항공기상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법규	물리학개론, 항공교통업무, 항행안전시설, 항공법규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항공개론	항공개론	항공개론	항공개론
		제2차	필수	항공법규	공중항법, 비행이론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교통업무
			선택	항공역학, 항공교통업무, 항공기동력장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기체, 항공기전자장치 중 1과목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장비, 항공기제어장치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항공기일반, 항공법규	공중항법개론, 비행이론	항공기정비일반,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 항공법규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물리	지구과학
		제2차	필수	항공법규, 항공기일반	공중항법개론, 비행이론	항공법규, 항공기정비일반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직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도시계획,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	응용역학	건축계획학
			선택	단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사회학, 도시 및 지역경제, 지적학, 측량학 중 1과목	측량학,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중 1과목	측량학,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학, 토질역학, 농촌계획학 중 1과목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도시계획,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설계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응용역학, 측량학, 농업수리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농업수리학, 농지조성학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도시계획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	응용역학	건축계획학
			선택	단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사회학, 도시 및 지역경제, 지적학, 측량학 중 1과목	측량학,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중 1과목	측량학, 농지조성학,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학, 토질역학 중 1과목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응용역학개론, 농업수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지리	물리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응용역학개론, 측량	농지조성, 농업수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직류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적학,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지적학,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	교통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지적측량학	측지학	교통계획	교통계획
			선택	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량제외), 사진측량학, 지도학, 중력 및 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	교통설계,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계획, 도시사회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지적학,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교통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응용측량학	측지학, 측량학, 측량법규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계획, 교통설계, 도시계획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물리학개론, 측지학, 측량학, 사진측량학	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설계	물리학개론, 교통계획, 교통설계, 교통운영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지적학	물리학개론	교통공학개론	교통공학개론
		제2차	필수	행정법	측지학	교통계획	교통계획
			선택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천문측량학, 측량학(사진측량제외), 사진측량학, 측량법규, 지도학, 중력 및 자기측량, 지형학, 원격탐사, 지리정보학, 해양측량학 중 1과목	교통운영, 교통설계, 교통경제, 교통용량, 대중교통, 화물교통, 도시계획 중 1과목	교통설계, 교통수요, 교통경제, 교통안전공학, 교통용량, 교통조사분석, 도시계획, 도시사회학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적측량, 지적법규	지구과학, 측량	교통공학개론, 교통운영	교통공학개론, 교통설계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학	수학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지적측량, 지적법규	지구과학, 측량	교통공학개론, 교통계획	교통공학개론, 교통계획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방재안전
			직류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총론	디자인기획론, 행정법총론	재난관리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공공디자인행정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선택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단지계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공, 경관계획 및 관리, 조경식물학 중 1과목	공간디자인론,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옥외광고디자인론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 영어	디자인기획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조경재료 및 시공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공간디자인론	재난관리론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공공디자인행정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선택	조경생태학, 조경사 및 이론, 단지계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공, 경관계획 및 관리 중 1과목	디자인기획론,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옥외광고디자인론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공간디자인론	물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공원녹지학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계급	시험과목		직렬	전산			
			직류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컴퓨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네트워크 보안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통계, 알고리즘 중 1과목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	컴퓨터구조론, 행정법, 영어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정보보호론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구조론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정보보호론	소프트웨어공학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공학 중 1과목	정보보호 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보호 기술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컴퓨터 일반	컴퓨터 일반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 일반
		제2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계급	시험과목		직렬	방송통신			
			직류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통신이론	통신이론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기자기학, 전송이론,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자회로, 통신이론, 회로이론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자회로, 전기자기학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물리학개론
		제2차	필수	통신이론	통신이론	통신이론	통신이론
			선택	전파공학(안테나 및 전파),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중 1과목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중 1과목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1과목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전자계산기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통신이론, 전파공학개론(안테나 및 전파)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전기이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비고

1. "경채"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
2. "승진"이라 함은 일반승진시험을 말한다.
3. "공승"이라 함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말한다.
4. 시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언어논리영역은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나. 자료해석영역은 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다. 상황판단영역은 상황의 이해, 추론과 분석, 문제해결, 판단과 의사결정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 <개정 2022. 11. 15.>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

1. 외교통상직

구분	시험과목		직렬	외교통상
			직류	외교통상
5등급 이상	경채·전직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제2차	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과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중 1과목

비고: "경채"란 외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

2.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구분	시험과목		직렬	외 무 영 사	외교정보기술	비 고
			직류	외 무 영 사	외교정보기술	
5등급 이상	경채·전직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헌법, 영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은 전공한 특수외국어로 한다.
		제2차	필수·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중 1과목과 국제법, 행정법, 국제정치학, 경제학중 1과목	전기자기학, 회로망이론, 전기공학, 통신공학,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네트워트중 2과목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필수	헌법, 국제정치학, 국	헌법, 통신공학, 데이	

				문화사중 1과목		

3.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험단계	분야	과목	
제1차	일반외교 분야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지역외교 분야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선택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외교 전문 분야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일반외교 분야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	

비고

1. 지역외교 분야 제1차시험에서 선택한 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다.
2.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에서 출제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의2] 삭제 <2011.4.4>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개정 2024. 12. 10.>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IBT 71점 이상	IBT 86점 이상	IBT 97점 이상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790점 이상	870점 이상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385점 이상	452점 이상
지텔프(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88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개정 2025. 6. 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IBT 71점 이상	IBT 86점 이상	IBT 97점 이상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790점 이상	870점 이상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385점 이상	452점 이상
지텔프(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88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시험성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1. 30.>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독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 (Test DAF)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Test Deutsch als Fremdsprache)을 말한다.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GZ B2 이상
불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프/달프 (DELF/DALF)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Diplôme d'□tudes en langue fran□aise)/달프(Diplôme appronfondi de langue fran□aise)를 말한다.	DELF B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토르플 (TORFL)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1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5급 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레(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B2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시험에서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

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 <개정 2025. 6. 2.>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독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 (Test DAF)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Test Deutsch als Fremdsprache)을 말한다.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GZ B2 이상
불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프/달프 (DELF/DALF)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Diplôme d'□tudes en langue fran□aise)/달프(Diplôme appronfondi de langue fran□aise)를 말한다.	DELF B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토르플 (TORFL)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1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	5급 210점

	(신HSK)	HSK)를 말한다.	이상
일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레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B2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시험에서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 <개정 2022. 11. 1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2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 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 <개정 2025. 6. 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의2] <개정 2026. 6. 30.>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대상 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는 시험 · 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시험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헌법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대체하는 시험의 종류	공직적격성평가(심화)	공직적격성평가(기본)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대상시험의 원서접수 연도에 실시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시험 원서접수 연도의 직전연도 또는 원서접수 연도의 다음연도에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개정 2022. 11. 15.>

채용시험 ·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직렬	직류 \ 계급	5급 이상	6 · 7급	8 · 9급
사 서	사 서	1 · 2급 정사서	1 · 2급 정사서, 준사서	1 · 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관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관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6급 기관사 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관제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6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관 제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조리	조리	기능장(조리)	기능장(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장(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6] <개정 2023. 8. 30.>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표(제21조 관련)

구 분	해 당 직 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학기술직군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을 제외한 직렬과 행정직군의 각 직렬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6의2] <신설 2015.12.30.>

외국어 선택과목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표(제23조의3제5항 단서 관련)

1.「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시험의 종류		평가기준	기준점수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60점 이상 (다만,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시험의 종류		평가기준	기준점수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70점 이상 (다만,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개정 2026. 6. 30.>

일반직공무원(연구직 · 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기술 · 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고

1. 별표 8에서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대한민국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을 말한다.
6.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개정 2026. 9. 29.>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治工具)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항공우주	기술사: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설비보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설비보전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자력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섬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 취득)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종자, 식품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능장: 산림 기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로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술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술사: 조선 기사: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선박기관	기술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 일반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선박관제	기술사: 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수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기사: 일반기계,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기상	기상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지진	기술사: 지질 및 기반 기사: 응용지질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수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대기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폐기물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항공
	정비	산업기사: 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적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

	도시교통 설계		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설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	전산개발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산기기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보호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기능사: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직군, 직렬 및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별도로 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정	교정	변호사, 법무사(7)	법무사(3)	법무사		
보호	보호					
형사법무	형사법무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철도경찰	철도경찰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3)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직업상담사 2급
	문화홍보	변호사				
	교육행정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3)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직업상담사 2급
세무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관세	관세	변호사, 관세사(7)	관세사(3)	관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통계	통계	사회조사분석사 1급(10)	사회조사분석사 1급(6)	사회조사분석사 1급(3)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3)	사회조사분석사 2급
직렬	직류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감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업	운전		철도교통안전관리자(9)	철도교통안전관리자(6)	철도교통안전관리자(3)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우주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원자력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화공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임업	산림조경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항해사(3), 1급기관사(3)	1급항해사, 2급항해사(2), 1급기관사, 2급기관사(2)	2급항해사, 3급항해사(2), 2급기관사, 3급기관사(2)	3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선박항해	1급항해사(3)	1급항해사, 2급항해사(2)	2급항해사, 3급항해사(2)	3급항해사, 4급항해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선박관제					
	수 로					
	선박기관	1급기관사(3)	1급기관사, 2급기관사(2)	2급기관사, 3급기관사(2)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직렬	직류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보건교육사 1급(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 1급(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 1급, 조산사(3), 간호사(3)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 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 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무	치과의사(2)				
약무	약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12), 조산사(12)	간호사(6), 조산사(6)	간호사(3), 조산사(3)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환경	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의사(2), 수의사(7), 약사(7), 환경측정분석사(7), 위생사(12)	수의사(3), 약사(3), 환경측정분석사(3), 위생사(8)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항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직렬	직류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관제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교통관제사	
시설	건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전산	전산개발 전산기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개정 2026. 9. 2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

직무분야 \ 임용예정 계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경찰공무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인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외무공무원			외무 9등급	외무 6~8등급	외무 5등급	외무 4등급	외무 3등급	외무 2등급	외무 1등급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원, 그 밖의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판사·검사			5호봉 이상	2호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3급 수사관	4급 수사관	5급 수사관	6급 수사관	7급 수사관	8급 수사관	9급 수사관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	10년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고

1.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 연수에 도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 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3.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 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산정 시 기능6급은 6급으로, 기능7급은 7급으로, 기능8급은 8급으로, 기능9급은 9급으로 본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 삭제 <2015.5.6.>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개정 2023. 8. 30.>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가산비율	5%	3%	5%	3%

비 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분	6·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개정 2026. 9. 29.>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교정	교정	–	변호사, 법무사
보호	보호		
형사법무	형사법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철도경찰	철도경찰	–	변호사, 법무사
행정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고용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호사
	교육행정	–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
세무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	관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통계	통계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감사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	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항공우주	기술사: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자가용조
		기능장: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설비보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설비보전	종사
공업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자력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업	섬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능장: 산림 기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산림, 조경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어로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기사: 전자, 일반기계,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산업기사: 전자,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1급항해사 또는 2급항해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3급항해사부터 5급항해사까지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6급항해사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기상	기상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지진	기술사: 지질 및 기반 기사: 응용지질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방역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기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수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대기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측지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도시교통설계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설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우정직군과 방호·간호조무·방송무대·운전·위생·조리 직렬 및 산림환경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별도로 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3] 삭제 <2019. 11. 5.>

[별지 서식] 삭제 <2005.12.30>

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 - 201 - 843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 12. 11.>]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18.]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 12. 11.>]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18.]
[제1조의2에서 이동 <2013. 12. 11.>]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2013. 12. 16., 2017. 1. 10., 2026. 6. 30.>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마.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마.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아. 부전문관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0. 6. 15., 2013. 12. 11.>

④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15., 2013. 12. 11., 2015. 8. 3.>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8.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15.>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8. 3.>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 8. 3., 2021. 11. 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개정 2014. 11. 19.>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5. 8. 3., 2020. 7. 28., 2023. 1. 3.>

⑥ 제5항 전단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신설 2023. 1. 3.>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7. 28., 2023. 1. 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전문개정 2013. 5. 31.]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1. 11. 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 1. 3.>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7. 2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전문개정 2015. 11. 18.]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5. 11. 18.>

[본조신설 2011. 1. 24.]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1. 18.]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本職機關)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15., 2015. 11. 18., 2019. 4. 16., 2023. 1. 3.>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15.>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0. 6. 15.]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였으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③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다.<개정 2010. 6. 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0. 6. 15.]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0. 10.]

제8조의3(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8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 9. 29.>

1. 감사원의 조사 자료: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2.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5. 6. 30.]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20. 7. 28.>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0. 6. 15.]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2023. 10. 10.>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6. 15.>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2023. 10. 10.>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0. 6. 15.]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2019. 8. 6.>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개정 2010. 6. 15., 2020. 7. 28.>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15.>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11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9. 4. 16.>]

제11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1. 11. 30.>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1.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1. 30.>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8. 3.]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 6. 15.>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10. 6. 15., 2019. 8. 6.>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2023. 1. 3.>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6. 15.>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 7. 28.>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0. 7. 28.>
[전문개정 2009. 3. 18.]

제12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 3. 1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18.]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1. 3.>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8.>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0. 6. 15.>
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16조(감사원에 대한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20. 7. 28.>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0. 6. 15.]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1. 18.>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8.>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1. 18.>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1. 18.>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

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11. 18.>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8.>

[본조신설 2010. 6. 15.]

제17조의3(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 징계기준등 " 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5.]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 징계처분등 " 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0. 6. 15.]

제18조의2(징계의결등의 경정) ①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신설 2025. 6. 30.>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2.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3. 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19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2. 9. 5.>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개정 2010. 6. 15., 2012. 9. 5., 2013. 12. 11., 2025. 6. 30.>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0. 10.>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3. 10. 10.>

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 4. 16., 2019. 8. 6., 2023. 10. 10.>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4. 16., 2019. 8. 6., 2023. 10. 10.>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9. 4. 16., 2023. 10. 10.>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2. 9. 5.]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

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7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5. 31., 2018. 5. 15., 2021. 11. 30.>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11. 30.>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30.>

⑤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0. 6. 15.]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5. 31.]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18.]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7. 28.]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5., 2019. 4. 16.>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신설 2012. 9. 5., 2020. 7. 28.>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5., 2019. 4.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2, 제15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신설 2012. 9. 5., 2020. 7. 28.>

[전문개정 2009. 3. 18.]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전문개정 2009. 3. 18.]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①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5. 11. 18.>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신설 2025.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신설 2015. 11. 18., 2016. 11. 22., 2023. 12. 12., 2025. 6. 30.>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0. 6. 15.]

제25조의2 삭제 <2013. 5. 31.>

제26조 삭제 <2009. 3. 18.>

부칙 <제5046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4호,197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2호,1973. 4.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8108호,1976. 5.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101호,1980. 1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에 있는 사건은 이 영에 의한 해당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0339호,1981.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4호,1984. 12. 31.>(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 5급공무원의 "를 "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 "로 하고. 동항제2호중 " 6급이하공무원의 "를 "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 "로 하며, 동조제4항중 "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를 "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로 한다.
제3조제2항중 " 5급이상의 공무원을 "을 "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 제78조제4항의 "를 "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로 하고, " 5급이상공무원에 "를 "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 "로 하며, "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를 "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 5급이상공무원에 "를 각각 "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 "로 한다.
②내지 ③ 생략

부칙 <제11837호,1985. 12. 31.>(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 " 을 " 2급 내지 5급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 " 를 "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 " 을 "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 를 "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의사를 " 로 한다.

제7조제1항중 "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 " 을 "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 " 으로, "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 " 을 "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 " 을 각각 "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2363호,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된 사건의 관할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3413호,1991. 7. 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 를 삭제한다.

⑤내지2$ 생략

부칙 <제15609호,1998. 1.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784호,2000. 4. 18.>(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중 " 별정직공무원 " 을 "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669호,2002. 7. 13.>(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 일반계약직공무원 " 을 "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 전문계약직공무원 " 을 "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부칙 <제19683호,2006.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된 사건은 이 영에 따라 징계요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85호,2007. 2. 12.>(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470호,2007.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 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 행정자치부차관 "을 " 행정안전부차관 "으로 한다.

1(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087호,2008. 10. 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351호,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항 ”을 “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 ”으로 한다.

제29조 중 “ 공무원징계령 ”을 “ 「공무원 징계령」 ”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 공무원징계령 ”을 “ 「공무원 징계령」 ”으로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 공무원징계령 ”을 각각 “ 「공무원 징계령」 ”으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공무원징계령」 ”을 “ 「공무원 징계령」 ”으로 한다.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 ”를 “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 「공무원징계령」 ”을 각각 “ 「공무원 징계령」 ”으로 한다.

부칙 <제22199호,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73호,2010. 9. 10.>(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을 “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계약직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제22633호,2011. 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를 계산한다.

부칙 <제23807호,2012. 5. 2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080호,2012.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56호,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24925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징계 등 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각각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 을 “ 위원장 1명 ” 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제6조제2항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인사혁신처장 ” 으로 한다.

제14조 중 “ 부위원장, 위원장 ” 을 “ 위원장 ” 으로 한다.

<1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78호,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568호,2015. 9. 2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656호,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25조 및 대통령령 제26568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07호,2016. 11. 22.>(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787호,2017. 1. 1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칙 <제28890호,2018.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7호,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17호,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8호,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64호,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3항 후단 및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제33204호,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03호,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 성희롱 ”을 “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로 한다.

부칙 <제33962호,2023. 12. 12.>(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 ”를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 ”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617호,2025. 6. 3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89호,2026. 6. 30.>(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전문관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5.23>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1.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 사유			
3.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 계 의 결 요 구 의 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직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23. 1. 3.>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5.11.18.>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사 건 명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3. 10. 10.>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대상 사건	통보기관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통보일자		
	사건번호		

위 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에 따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기관의 장 직인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0.>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출석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청인

귀하

- 자 르 는 선 -

출석 진술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2019. 8. 6.>

의견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견	
징계등 면제 사유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1. 30.>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등을 기재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청인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6. 30.>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2.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일자, 징계사유,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3.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 사유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본인 감면 의결 신청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권자 직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2.9.5>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 주문	징계부가금은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이유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청인

210㎜×297㎜[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의4서식] <신설 2025. 6. 30.>

[ ] 징계의결서
[ ] 징계부가금 의결서 경정결정서
[ ]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등 경정 사항 기재
이유	경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결정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30.>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합니다) 사본과 같음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직인

붙임: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4. 16.>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할 징계위원회		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징계의결결과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의결 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제청권자)		징계처분일시	년. 월. 일
징계처분결과			

유 의 사 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처 분 권 자 인

210㎜×297㎜[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9. 4. 16.>

직권 면직 [ ] 의견 [ ] 동의 요구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직권 면직 사유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 면직에 대한 [ ] 의견 [ ] 동의 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19. 4. 16.>

직권 면직 [ ] 의견 [ ] 동의 의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청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30.>

징 계 또 는 징 계 부 가 금 처 리 대 장

번호	인 적 사 항 및 결 과								처 리 경 위						징계의 결번호	비고
	소 속 (신 청 기 관)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혐의 당시 소속 직위	퇴직 예정일	혐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 기간 조 사 자	징계위원회 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보일	특기 사항		
					정 년 : . . . 계 급 정 년 :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420㎜× 297㎜[백상지(80g/㎡)]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 6. 30.>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번호	인적사항				징계부가금 처분					징수 · 체납 현황 등						납부현황	
	소속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처분일	최초 징계부가금	감면 · 감경 사유	감면 · 감경 금액	최종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 교부일	독촉일	조사일	압류일	징수일	세무서 위탁일	납부액	미납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조사결과	압류재산	징수재산	통보결과	납부일	미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 [총리령 제2163호, 2026. 10. 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 - 201 - 84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1조의2 삭제 <2009. 3. 30.>

제1조의3 삭제 <2009. 3. 30.>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11. 11. 1., 2014. 9. 2., 2015. 12. 29., 2018. 5.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 2024. 12. 11.>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개정 2016. 8. 31., 2026. 10. 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개정 2010. 8. 2.]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24.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2009. 3. 30.]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5., 2024. 12. 11.>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19. 6. 25.>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2019. 6. 25.>
4. 삭제<2019. 6.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9. 6.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

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 12. 30.>

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1. 12. 30.>

[본조신설 2018. 5. 30.]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 2014. 9. 2., 2016. 8. 31., 2017. 1. 10., 2018. 5. 3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신설 2017. 1. 10., 2019. 4. 30., 2019. 6. 25., 2020. 6. 4., 2020. 7. 28., 2021. 8. 27., 2021. 12. 30., 2026. 10. 1.>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8. 19., 2017. 1. 10.>

[전문개정 2009. 3. 30.]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개정 2023. 10. 12., 2024. 12. 11.>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신설 2024. 12. 11.>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1.>
[전문개정 2009. 3. 30.]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개정 2010. 8. 2., 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0. 8. 2., 2014. 9. 2., 2018. 5. 30., 2020. 7. 28., 2024. 12. 11.>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개정 2010. 8. 2.]

제7조의2(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 3.]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1. 3.>
[전문개정 2015. 8. 19.]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0.]

부칙 <제251호,1981.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1983.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86.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198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1994. 6.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2호,2005. 5.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4호,2007.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08. 3. 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9조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⑥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09.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호,2010.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11.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 밖의 성폭력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호,2014.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호,2014. 11. 19.>(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인사혁신처장 " 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89호,2015.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과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20호,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17호,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6호,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7호,2018.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 및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3호,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감경의 제외 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9호,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20호,2020. 6. 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632호,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2ㆍ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3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6호,2021.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7호,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2호,2023.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호,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19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을 적용하여 의결한 사건은 별표 1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8호,2024.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0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3호,2026.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10.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차목부터 타목까지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2와 같음			
카.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차명의 비위행위에				

조력한 경우 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하.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거.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너.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의3과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4와 같음			
나. 음주운전	별표 1의5와 같음			
다.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스토킹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
바.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라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거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4. 제1호너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제7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7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7. 제7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10. 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부정 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5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5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2.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1호의 비위행위에 조력한 경우	5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5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정 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위행위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하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아 제1호의 비위행위를 한 자의 부정 수령 금액 중 조력자의 조력을 원인으로 부정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0. 12. 3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5. 12. 30.>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의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4. 음란물 유포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1호바목에서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4호에서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개정 2025. 12. 30.>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9.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한 경우	
가.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	강등-감봉
나.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정직-감봉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8. 위 표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외6] <개정 2021. 8. 27.>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금품비위금액등의 4 ~ 5배	금품비위금액등의 3 ~ 4배	금품비위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금액등의 1 ~ 2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금액등의 1배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의 성질 \ 업무 관련도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근 상급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 사항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반복 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9.3.30>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확인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1. 인적사항	(현재) (혐의 당시)	(현재) (혐의 당시)	

2. 비위 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혐오표현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년 월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210㎜×297㎜[백상지 80g/㎡]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3. 1. 3.>

우선심사 신청서

1. 혐의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우선 심사 청구 사유	

[ ] **징계등 혐의자** : 본인은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므로,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신 서면진술로 갈음하고자 하며,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위 [ ] 란에는 √표시를 하십시오

년 월 일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 297㎜[백상지 80g/㎡]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 - 201 - 820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4., 2026. 6. 16.>
② 삭제<2019. 12. 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목개정 2019. 12. 24.]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6.>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개정 2026. 6.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신설 2026. 6. 1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6. 6. 16.>

[전문개정 2019. 12. 24.]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9. 29.]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 9. 29.]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7조 삭제 <1998ㆍ12ㆍ31>

부칙 <제5040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1호,1970. 7.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3호,1975.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8호,1984.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255호,1987. 10.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073호,1990.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3호,1990. 12. 1.>(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내지2$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3404호,1991. 6. 28.>(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3호중 "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 을 " 의사상자보호법 " 으로 한다.

부칙 <제14446호,1994. 12. 2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 보건사회부장관 " 을 " 보건복지부장관 " 으로 한다.

⑨내지 <140>생략

부칙 <제14838호,1995. 12. 22.>(공무원임용시험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 (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 " 를 " (채용금지) " 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5486호,1997. 9. 30.>(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로 한다.

④내지3)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33호,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19229호,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807호,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81호,2008. 1. 3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 행정자치부, 철도청 ”을 “ 행정안전부, 국세청 ”으로 한다.

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466호,2010.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164호,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5호,2012. 6. 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 ”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 ”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 행정안전부 ”를 “ 안전행정부 ”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 안전행정부 ”를 “ 인사혁신처 ”로 한다.

<1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8호,2015. 9. 2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946호,2018. 6. 5.>(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66호,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038호,2024. 12. 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을 "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을 "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6419호,2026.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개정 2026. 6. 16.>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구강·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비고

1.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

2.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6. 6. 1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6. 6. 1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6. 6. 16.>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6호, 2021. 11. 3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044 - 201 - 822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10. 5., 1996. 8. 8.,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 중 주무부장관(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경찰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1993. 10. 5., 1996. 8. 8., 2004. 6.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의한 장학생 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관공무원의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 연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서에는 2명 이상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1. 11. 30.>

제5조(장학생의 선발) 주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ㆍ품행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해당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간) 주무부장관은 장학생의 수학기간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 다만, 주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장학생에 대하여는 4년간

제7조(지급범위 등)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학교장은 당해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 장학금의 신청은 선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학교장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
③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당해학교장은 장학금 중에서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그 잔여액은 이를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선발된 장학생이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때에는 학교장은 교부받은 장학금 전액을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정지) ①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②장학생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중단)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3. 공무원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에 임하지 아니한 때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8. 기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공무원이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관리) ①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학생에게 교육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12. 31., 2013. 3. 23.>

②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상태를 매학기 종료후 15일내에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또는 장학금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복무의무) ①장학금을 지급받아 졸업한 자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나, 병역복무ㆍ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15조(장학금의 반납) ①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내에 장학생이나 장학생이었던 사람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 반납을 명할 장학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text{반납금액} = \text{지급한 장학금총액}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재정보증인이나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신설 2021. 11. 30.>

제16조(강제징수) ① 주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90일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장학금 반납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 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30.]

제17조(통보) 이 영에 의한 장학생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9334호,1979.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6>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 문교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66>내지 <148>생략

부칙 <제13985호,1993. 10. 5.>(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조 중 " 국가공무원법 제88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 " 을 "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 " 로, " 내무부장관 " 을 " 경찰청장 " 으로 하고, 제2조중 " 내무부장관 " 을 " 경찰청장 " 으로 하며, 제16조중 " 국가공무원법 제88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 " 을 "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 " 로 한다.

부칙 <제15136호,1996. 8. 8.>(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총무처장관 또는 경찰청장 " 을 " 총무처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2조 중 " 경찰청장 " 을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⑮내지1(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88>내지 <152>생략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까지 생략

2)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안전행정부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을 " 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 또는 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2조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인사혁신처장 " 으로,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을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 " 으로 한다.

<12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 또는 경찰청장"을 "인사혁신처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351호,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32166호,2021. 11. 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2.] [총리령 제207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 - 201 - 839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5.]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9. 1. 5.]

부칙 <제155호,1975. 8. 27.>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호,1977. 1. 15.>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197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1978.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78.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1980. 2. 29.>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1981.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호,198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1982. 2.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1986.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1989.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5호,1996. 9.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01.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호,2002.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2.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호,2009.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09.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 보건복지가족부 "를 " 보건복지부 "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106호,2014. 11. 19.>(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부칙 <제1122호,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호,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7호,2025.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4호,2025. 12. 30.>(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 9.>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1. 벽지(僻地) 지역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산15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서생면 화정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산12-1)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옥천면 신복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판부면 서곡리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성산면 어흘리
	태백시				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통동, 황지동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도계읍 도계리, 도계읍 전두리, 하장면 광동리
	홍천군		내면 광원리		내면 창촌리, 서면 반곡리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둔내면 삽교리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

					리, 북면 마차리, 산솔면 녹전리, 상동읍 내덕리, 영월읍 영흥리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여량면 구절리	고한읍 고한리, 남면 문곡리, 북평면 북평리, 사북읍 사북리, 신동읍 예미리·조동리, 여량면 여량리, 임계면 봉산리, 정선읍 봉양리·신월리, 화암면 화암리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사내면 명월리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기린면 방동리	북면 용대리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토성면 학야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덕암리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어상천면 임현리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오천면 원산도리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리 · 신시도리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영남면 양사리
	화순군		사평면 유마리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임회면 굴포리	임회면 남동리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자은면 구영리, 안좌면 읍동리, 팔금면 읍리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동로면 노은리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영덕군			병곡면 영리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석포면 석포리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면 쌍전리	금강송면 삼근리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유림면 국계리, 서상면 상남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 도서(島嶼) 지역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팔미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옹진군	덕적면 북리(선미도),영흥면 외리(부도)		덕적면 진리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어청도리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	남면 우학리·연도리, 화정면 개도리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노화읍 내리, 보길면 부황리	금당면 차우리, 노화읍 이포리, 청산면 도청리, 금일읍 화목리, 생일면 유서리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조도면 창유리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흑산면 예리·홍도리·가거도리	비금면 덕산리, 하의면 용곡리, 신의면 상태동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면 남서리	울릉읍 도동리·사동리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욕지면 동항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영흥리	우도면 서광리·연평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 접적(接敵) 지역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송해면 숭뢰리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소청리, 백령면 연화리·진촌리, 연평면 연평리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문산읍 사목리, 군내면 백연리, 장단면 노상리·도라산리, 탄현면 성동리		적성면 구읍리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백학면 두일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근남면 육단리, 철원읍 율이리	서면 와수리	김화읍 청양리, 동송읍 오덕리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해안면 만대리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현내면 철통리

비고: 위 표에 규정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항로표지관리소는 라 지역으로 본다.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0.>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부처별	기관별				
공 통		해발 800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법무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재소자의 계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	재소자의 계호 업무를 지원하는 교정직공무원과 직접 교화, 분류 심사,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재소자의 교도(敎導)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교정직공무원과 교화, 분류 심사,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소년의 계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호직공무원	수용 소년의 계호 업무를 지원하는 보호직공무원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용 소년의 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보호직공무원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용·감호 및 치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용·감호 및 치료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출입국		외국인 보호,		외국인 보호,

	·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집행 및 신원특이자 특별보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강제퇴거 집행 및 신원특이자 특별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국가보훈부	국립묘지관리소			유골 및 시신의 이관(移管) 및 안장(安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유골 및 시신의 이관 및 안장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환자의 간호 및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환자의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환자의 진료·간호·검사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한센병환자의 치료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국립재활원			심신장애인의 의료·재활·직업훈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심신장애인의 의료·재활·직업훈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해외동포의 유해 안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외동포의 유해 안장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결핵병원		결핵환자의 진료·간호·검사 등 환	결핵환자의 치료 업무를 지원하는 공	

			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무원	

비고: 각 기관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 - 201 - 8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9. 8., 2013. 6. 21.>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2013. 6. 21.>
3. 삭제<2013. 6. 21.>
4. 삭제<2013. 6. 21.>
5. 삭제<2013. 6. 21.>
6. 삭제<2013. 6. 21.>
7. 삭제<2013. 6. 21.>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6.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6. 21., 2014. 11. 19.>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신설 2020. 3. 10.>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3. 10.>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7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④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5.>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신설 2013. 6. 21.>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21., 2014. 11. 19.>

④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3. 6. 21.>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6. 21.]

제14조(통합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각 운영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6. 21.]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개정 2019. 11. 26.>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6. 21.]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1.]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0. 3. 10.>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6. 21.]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 6. 21.>]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개정 2013. 6. 21.>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1.]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 6. 21.>]

제19조(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학ㆍ미술 및 음악 분야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거나 실기를 경연하는 대회(이하 "공무원 예술대전"이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③ 공무원 예술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입상등급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⑤ 공무원 예술대전의 참가자격 및 범위, 출품 및 경연방법, 시상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3. 6. 21.]

제20조(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분야별로 실기를 경연하는 방식으로 대회(이하 "공무원 동호인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③ 공무원 동호인대회는 이전(以前) 대회의 입상기관 또는 종목별 동호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주관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이 공무원 동호인대회를 개최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개최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인원 및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성적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⑥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자격 및 범위, 경연방법 및 시상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3. 6. 21.]

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1.]

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15. 9. 15.>

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2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5장 보칙 <신설 2013. 6. 21.>

제22조(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등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과 부처간 후생복지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17조에서 이동 <2013. 6. 21.>]

제23조(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의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18조에서 이동 <2013. 6. 21.>]

부칙 <제18841호,2005. 5. 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 을 “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 ” 를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 ” 를 “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 ” 을 “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20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21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087호,2008. 10. 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부칙 <제21717호,2009. 9. 8.>(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 ” 를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 ” 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633호,2013.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30호,2015. 9. 15.>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0호,2019.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9호, 2018. 5. 8.,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1 - 8302

제1조(목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직인사혁신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8. 5. 8.]

제2조(기능)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 5. 8.>

1. 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직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직 인사혁신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4. 공직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항
5. 공직 인사혁신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 인사혁신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 위원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 7. 26., 2018. 5. 8.>

1.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및 행정안전부차관
2. 민간위원: 인사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8.>

⑤ 국무총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위원회 지원조직을 둔다.
② 위원회 지원조직의 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겸임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지원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6136호,2015.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4호,2015. 12. 3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한다.

<36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79호,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에 따른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직인사혁신위원회로 본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2. 2.] [대통령령 제35892호, 2025. 12.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 044 - 201 - 854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6.>
[전문개정 2011. 11. 23.]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ㆍ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0. 7. 14., 2023. 6. 20., 2025. 12. 2.>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정보를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20. 7. 14.>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구술, 이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신설

2020. 7. 14.>
[전문개정 2014. 8. 6.]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ㆍ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ㆍ위촉하려는 직위 또는 활용하려는 전문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0. 7. 14.>

1.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2.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전문개정 2014. 8. 6.]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20. 7. 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1. 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4조 삭제 <2014. 8. 6.>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16. 11. 22., 2023. 12. 12.>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20. 7. 14., 2021. 11. 30., 2025. 12. 2.>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2023. 6. 20.>

[전문개정 2011. 11. 23.]

[제목개정 2014. 8. 6.]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2025. 12. 2.>

②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6. 20., 2025. 12. 2.>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공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하도록 승인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활용 목적, 대상 직위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 활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상태 및 정보통신망의 보안조치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등의 임용ㆍ위촉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직접 열람은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성별, 나이, 이메일 주소, 전문 분야 및 주요 경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

제6조의2(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굴하여 추천하고 선발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같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
3.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직위 선발시험에 대한 공고 10일 전(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추천이 필요한 날부터 30일 전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를 긴급히 선발해야 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4.]

제6조의3(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발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위원
3.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임원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직위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위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기간이 만료되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통보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사람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1. 23.]

[제목개정 2014. 8. 6.]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1. 23.]
[제목개정 2014. 8. 6.]

제9조(보안조치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7. 14.>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1. 23.]
[제목개정 2020. 7. 14.]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①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1. 23.]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22. 6. 7., 2025. 6. 10.>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6. 7., 2025. 6. 10.>

[본조신설 2014. 8. 6.]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2. 6. 7., 2025. 6. 10.>

[본조신설 2014. 8. 6.]

제11조(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1. 23.]

부칙 <제19075호,2005.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을 “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 5급이상 공무원 ”을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2# 내지 <241>생략

부칙 <제20101호,2007. 6. 2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3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 중앙인사위원회 " 를 " 행정안전부 " 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11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 「전자정부법」 제26조 " 를 " 「전자정부법」 제52조 " 로 한다.

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307호,201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 행정안전부의 ”를 “ 안전행정부의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533호,2014.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

단ㆍ후단, 제8조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 및 제11조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 안전행정부 ”를 “ 인사혁신처 ”로 한다.
<13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607호,2016. 11. 22.>(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0855호,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72호,2021. 11. 30.>(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2685호,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후단 중 “ 대통령비서실장 ”을 “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 ”으로 한다.

부칙 <제33562호,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이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62호,2023. 12. 12.>(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로 한다.

부칙 <제35593호,2025. 6.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35892호,2025. 1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1 - 8304

제1장 총칙 <신설 1998. 2. 2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12. 1. 26.]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 2. 28.>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9. 18., 2019. 12. 24., 2020. 7. 14., 2023. 12. 29., 2026. 9. 29.>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3의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2013. 12. 11.>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4. 22., 2013. 12. 11., 2025. 6. 2., 2026. 9.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신설 2025. 6. 2.>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20. 7. 14., 2025. 6. 2.>

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전문개정 2012. 1. 26.]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2. 1. 26.]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24., 2023. 12. 29.>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개정 2025. 6. 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신설 2019. 12. 24.>

[전문개정 2012. 1. 26.]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4., 2025. 6. 2.>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9. 12. 24., 2021. 1. 5.>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6. 2.>

[전문개정 2012. 1. 26.]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6.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2., 2020. 7. 14., 2026. 9. 2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2. 1. 26.]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3. 12. 29., 2025. 6. 2.>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 12. 11.]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8조의2 삭제 <2008. 10. 14.>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2., 2021. 11. 30.>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4. 22., 2021. 11. 30., 2023. 12. 29.>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11. 30.>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2021. 11. 30., 2023. 12. 29.>

⑤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3. 4. 22., 2019. 12. 24., 2021. 11. 30.>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

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3. 4. 22., 2019. 12. 24., 2021. 11. 30.>

⑦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11. 30.>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22.,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 26.]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은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3. 10.>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12. 1. 26.]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설 1998. 2. 28., 2002. 7. 13.>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1. 1. 5.>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

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 5.>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4. 22., 2013. 12. 11.>

1.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신설 2025. 6. 2.>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 26.]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6. 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6. 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2., 2020. 7. 14., 2025. 6. 2., 2026. 9. 29.>

⑤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제3조제4항"은 "제11조제6항"으로, "제7조제1항"은 "제12조제3항"으로 본다.<신설 2019. 12. 24., 2025. 6. 2.>

[전문개정 2012. 1. 26.]

제4장 보칙 <신설 1998. 2. 28.>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 26.]

부칙 <제10482호,1981. 10.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 이전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923호,1982. 9.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ㆍ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813호,1989. 10.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 문교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68>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00호,1991. 6. 27.>(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제49조제2항 " 을 " 제74조의2 제2항 " 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 제40조의3 " 를 " 제40조의4 " 로 한다.

부칙 <제13918호,1993. 6. 28.>(검사정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고등검찰관 이하의 검사 " 를 " 검사 " 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949호,1993.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1호,1994.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7>생략
<26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9>내지 <327>생략

부칙 <제15142호,1996. 8.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0호,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전문직공무원규정 "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 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 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 전문직공무원 " 을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조중 " 전문직공무원 " 을 " 계약직공무원 " 으로, " 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 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 비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 총무처장관 " 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 비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 을 "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 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 총무처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별표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 전문직공무원 " 을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별표14의 제목중 " 전문직공무원 " 을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 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 비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 전문직공무원규정 "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 중 " 비전임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 지급대상란중 " 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중 " 전문직공무원규정 "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 으로 한다.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 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중 " 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 전문직공무원규정 " 을 " 계약직공무원규정 " 으로 한다.
⑦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 전문직공무원 " 을 각각 " 계약직공무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6211호,1999. 3. 31.>(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 국가안전기획부직원 " 을 " 국가정보원직원 "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 국가안전기획부장 " 을 " 국가정보원장 " 으로, " 국가안전기획부직원 " 을 " 국가정보원직원 " 으로 한다.
⑮내지2*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중 " 예산청장 "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2@ 내지 <109>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8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75호,2001. 6. 3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 " 을 "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672호,2002.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8호,2003. 4. 7.>(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을 "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8416호,2004. 6. 1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은 " 을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는 " 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 를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를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에 "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의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의 " 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 " 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칙 <제18450호,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 특수경력직공무원 " 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307호,2006. 1.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월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 을 "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 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19838호,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68호,2007. 11. 12.>(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 " 을 "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5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8조의2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에 ” 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13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2(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082호,2008.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617호,2011. 1. 10.>(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2708호,2011. 3. 15.>(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3호다목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3497호,2012. 1. 6.>(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3553호,201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교육기술과학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5호,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영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영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21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8호,2015. 9. 2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877호,2016. 1. 8.>(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 장애 ”를 “ 장해 ”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 장애등급 ”을 “ 장해등급 ”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 장애등급 ”을 “ 장해등급 ”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를 “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로 한다.

⑩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181호,2018. 9. 18.>(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을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으로 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30267호,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이하 “ 해당직위 ”라 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해당직위에 재직했던 기간이 2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직위 재직월수는 이 영 시행 전에 해당직위에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직위
2. 종전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098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1호의 직위
3. 종전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2호의 직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직위에 재직했던 검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	별표 1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산정액	×	$\frac{30개월-해당직위\ 재직월수}{30개월}$

부칙 <제30515호,2020. 3. 10.>(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33호,2020. 7. 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65호,2021. 11. 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84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수금 납부기한의 기산점 변경에 따른 강제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환수금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5589호,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6항, 제12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5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 <개정 2016.1.8.>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right)$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2] <개정 2018. 9. 18.>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장해등급	가산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3] <개정 2020. 3. 10.>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제10조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4] <개정 2023. 12. 29.>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 수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 수/2) }
	3. 법 제74조의2제3항 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74조의2제3항제2호 해당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사람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times \frac{\text{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

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사람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퇴직일
	⑪ 비위·형벌 사실 [ ] 있음 [ ] 없음(면직일 . . ., 불송치 등 처분일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소속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실 확인	[ ] 있음 [ ] 없음(면직일 : . . ., 불송치 등 처분일 :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연금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감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다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담당자가 적은 후, 인사·연금·감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 당시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경찰·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⑤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연금·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⑱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표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소 속 기 관		중 앙 행 정 기 관		소 속 기 관		중 앙 행 정 기 관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25.>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2.>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전(前) 소속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함)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비위 사실	[ ] 있음 [ ] 없음(면직일: . . ., 불송치 등 처분일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에 따라 ([ ]조기퇴직수당·[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자진 퇴직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4호서식) 1부. 다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 1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확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조기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비위 사실란 중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소 속 기 관		중 앙 행 정 기 관		소 속 기 관		중 앙 행 정 기 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9.25.>

[ ] 조기 [ ] 자진 퇴직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 ]조기 · [ ]자진) 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 297㎜[백상지(80g/㎡)]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 7. 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1 - 8314, 831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 6. 5., 2002. 7. 10.>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 2. 16., 1981. 6. 5., 1991. 12. 26., 1994. 11. 26., 2002. 7. 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1991. 12. 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제5037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0호,1972.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7호,1981.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1991.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7호,1994. 11. 26.>(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 <제17663호,2002. 7. 10.>(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을 "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 제3조 단서 " 를 각각 " 제3조제3항 " 으로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044 - 201 - 8436
인사혁신처 (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044 - 201 - 8445
인사혁신처 (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044 - 201 - 8446
인사혁신처 (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044 - 201 - 84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1. 7. 4.]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 3. 20.>

[전문개정 2011. 7. 4.]

제6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4. 4. 2.]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4. 4. 2.>]

제6조의3(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4. 2.>]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2021. 12. 31.>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혁신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혁신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근무혁신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근무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과 그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4. 2.>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 소속 행정기관 ”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 유연근무 ”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0. 6.>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7. 3. 2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신설 2018. 7. 2.>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8. 7. 2.,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7. 4.]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전문개정 2011. 7. 4.]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신설 2016. 11. 22.>

제1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8만 적용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4.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8. 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9.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의 수행원·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6제3항만 적용한다.<개정 2024. 7. 2.>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2(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등은 공무국외출장등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의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한다.

② 고위공직자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출국예정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에 미리 출장 일정, 인적 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 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다만,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의 국외 출장은 대통령이 허가하고, 차관급 상당의 공무원[국무총리 직속 및 소속의 공무원과 외청장(外廳長)은 제외한다]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허가를 받은 후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4 삭제 <2024. 7. 2.>

제13조의5(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소속 장관에게 도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7. 2.>

③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등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0.>

③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출장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 및 그 밖의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⑤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7(허가권의 위임) 소속 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허가권을 바로 아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8(사후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의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등의 허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8. 7. 2., 2023. 7. 18., 2024. 7. 2.>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7. 1. 31., 2018. 7. 2., 2018. 9. 18.>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개정 2019. 12. 3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

제15조의2 삭제 <1981. 6. 24.>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삭제<2015. 10. 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 10. 6.>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0. 6., 2018. 7. 2.>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2016. 11. 22., 2018. 7. 2.>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전문개정 2011. 7. 4.]

[제목개정 2015. 10. 6.]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

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 7. 2., 2019. 12. 31.>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 7. 2.>

④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의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8.>

[본조신설 2015. 10. 6.]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8. 7. 2., 2021. 12. 31., 2023. 7. 18.>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12. 31., 2024.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31., 2024. 7. 2.>

[본조신설 2015. 10. 6.]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

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6.]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개정 2018. 7. 2.>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신설 2018. 7. 2.>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7. 2.>

⑤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2020. 10. 20., 2021. 12. 31., 2023. 12. 5., 2025. 12. 4., 2026. 6. 23., 2026. 9. 29.>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전문개정 2011. 7. 4.]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3. 20.>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5. 10. 6.,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2025. 2. 1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11. 7. 4., 2019. 12. 31., 2024. 7. 2.>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신설 2013. 5. 31., 2018. 7. 2., 2024. 7. 2., 2025. 2. 11., 2025. 7. 22.>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7. 2., 2024. 7. 2., 2025. 2. 1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7. 4., 2013. 5. 31., 2021. 6. 1.>

⑦ 삭제<2005. 6. 30.>

⑧ 삭제<2005. 6. 30.>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10. 20.>

⑩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7. 4.,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4. 7. 2.>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7. 4.,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0. 6., 2019. 12. 31.>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2024. 7. 2., 2026. 6. 23.>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4.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신설 2020. 10. 20., 2024. 7. 2., 2026. 6. 23.>

<16>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17>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ㆍ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18> 행정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5. 7. 22., 2026. 6. 23.>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3일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5일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7일

<19>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7. 22.>

<20>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제18항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5. 2. 11., 2025. 7. 22.>

제21조 삭제 <1972. 5. 4.>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5. 10. 6., 2021. 12. 31.>

1.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1. 7. 4.]

제23조(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 고위공직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2.]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4.]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4.]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 " 이라 한다)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31.]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 7. 4.>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7. 4.]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등 <개정 2011. 7. 4., 2023. 12. 5.>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4.]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5. 3. 11., 2017. 7. 26.>

1. 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

제29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5.]

부칙 <제5043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1호,1972. 5. 4.>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4호,1977. 4.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8호,1979. 10.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3호,1981. 6.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4호,1982. 4.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다음의 대통령령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가지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되는 날에 폐지된다.

1.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
2. 산림보호직원복제
3. 관세공무원복제
4. 전매청직원복제
5. 검사의법복에관한규정
6. 검찰청수위복제규정
7. 교도관복제
8. 소년원및소년감별소직원복제
9.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0.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
11. 식물검역공무원복제
12. 동물검역공무원복제
13. 어업감독공무원복제
14. 교통부직원복제
15. 철도청직원복제
16. 해운항만청직원복제
17. 체신부직원복제

부칙 <제11084호,1983.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는 대통령령 제10,804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783호,1985. 10.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3호,1987. 4. 1.>(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중 " 전매청 " 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 생략

부칙 <제12328호,1987.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9호,1988.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0호,1989.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0호,1993. 2. 24.>(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 한국방송통신대학 " 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로,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 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 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4262호,1994.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4>생략
<265>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6>내지 <327>생략

부칙 <제14825호,1995. 12. 14.>
이 영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4호,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0호,1999. 1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9호,2001. 10.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82호,2002.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8호,2004. 6.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8580호,2004. 11. 3.>(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 을 “ 정보통신부 ” 로 한다.
⑨내지2* 생략

부칙 <제18892호,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교원의 특례) 교원의 근무시간、근무일、연가、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 3급이상 공무원 ”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22호,2006.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9호,2007. 5. 16.>(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 행정자치부령 "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한다.

제24조의2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정보통신부 " 를 " 지식경제부 " 로 한다.

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021호,2008.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1호,2009.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20호,2009. 12. 30.>(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 " 을 "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 " 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까지 생략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74호,2010. 7.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부칙 <제22564호,2010. 12. 2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③부터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691호,2011. 3.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를 "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3010호,2011.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15호,2011. 7. 4.>(고용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 "을 "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4077호,2012. 8. 3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 행정안전부령 "을 각각 " 안전행정부령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 행정안전부 "를 " 안전행정부 "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 외교통상부장관 "을 "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식경제부 "를 " 미래창조과학부 "로 한다.

3& 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54호,2013. 5. 31.>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27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417호,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 안전행정부령 ”을 각각 “ 총리령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 안전행정부 ”를 “ 인사혁신처 ”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13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40호,2015. 3. 11.>(보안업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 보안목표시설 ”을 “ 국가보안시설 ”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6581호,2015. 10.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 사용의 권장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2015년도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월 31일까지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부칙 <제26944호,2016. 2. 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으로 한다.

⑨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08호,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심사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20호,2016. 11. 29.>(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7822호,2017. 1. 31.>(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 셋째 ”를 “ 둘째 ”로 한다.

부칙 <제27948호,2017. 3.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미래창조과학부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한다.
<3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012호,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 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및 별표 3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 「공무원연금법」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으로 한다.

⑪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181호,2018. 9. 18.>(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을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으로 한다.

⑨부터2# 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375호,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6호,2019. 12. 2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4)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10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20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31118호,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709호,2021. 6. 1.>(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172호,2021. 11. 30.>(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2310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638호,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05호,2023. 12. 5.>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1호,2024. 4.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0호,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전단 및 별표 3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58호,2025.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부칙 <제35665호,2025.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20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893호,2025.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442호,2026.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20조제1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10.7.15>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25. 2. 11.>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3] <개정 2025. 7. 22.>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24조의3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text{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 삭제 <2019. 12. 31.>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행정기관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6. 10. 2.] [총리령 제2161호, 2026. 10. 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 - 201 - 8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선서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4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절 근무사항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 20., 2023. 12. 8.>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하려는 때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20.>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23. 1. 20.>

④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등을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3. 1. 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 2023. 12. 8.>

제9조 삭제 <2023. 1. 20.>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제11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직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8. 10. 31., 2023. 1. 20., 2025. 12. 31.>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당직근무의 기능ㆍ성격, 해당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5. 12. 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삭제<2025. 12. 31.>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신설 2025. 12. 31.>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2. 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0., 2025. 12. 31.>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인사혁신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신설 2025. 12. 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 20.>

1.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26조(당직사령)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당직사령은 제2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당직총사령)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 하에 당직총사령을 둔다.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10. 1.>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10. 1.>

제33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당직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총사령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비상근무

제3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 2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3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비상연락)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
2. 당직사령의 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
3. 대통령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

③ 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 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비상소집)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

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연락체계의 유지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제5절 삭제 <2018. 10. 31.>

제48조 삭제 <2018. 10. 31.>

제49조 삭제 <2018. 10. 31.>

제50조 삭제 <2018. 10. 31.>

제51조 삭제 <2018. 10. 31.>

제52조 삭제 <2018. 10. 31.>

제53조 삭제 <2018. 10. 31.>

제54조 삭제 <2018. 10. 31.>

제55조 삭제 <2018. 10. 31.>

제56조 삭제 <2018. 10. 31.>

제4장 공무원증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 · 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20.>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20.>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 20.]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④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2. 5.>

⑥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 2. 5.>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

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 2. 5.>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5장 보칙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1. 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반납, 폐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
3. 삭제<2018. 10. 31.>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0.>

부칙 <제1387호,2017.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총리령은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3.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공무원증 규칙」

제3조(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제5절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발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공무원증을 분실하거나 공무원증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여객운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자국적 항공사와 체결된 국제여객운송계약은 이 규칙 제50조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8호,2017. 7. 26.>(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호,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에 따라 항공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70호,2021.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호,2023.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2호,2023. 12. 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25.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호,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1호,2026. 10. 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표]

당직근무 표찰(제17조제2항 관련)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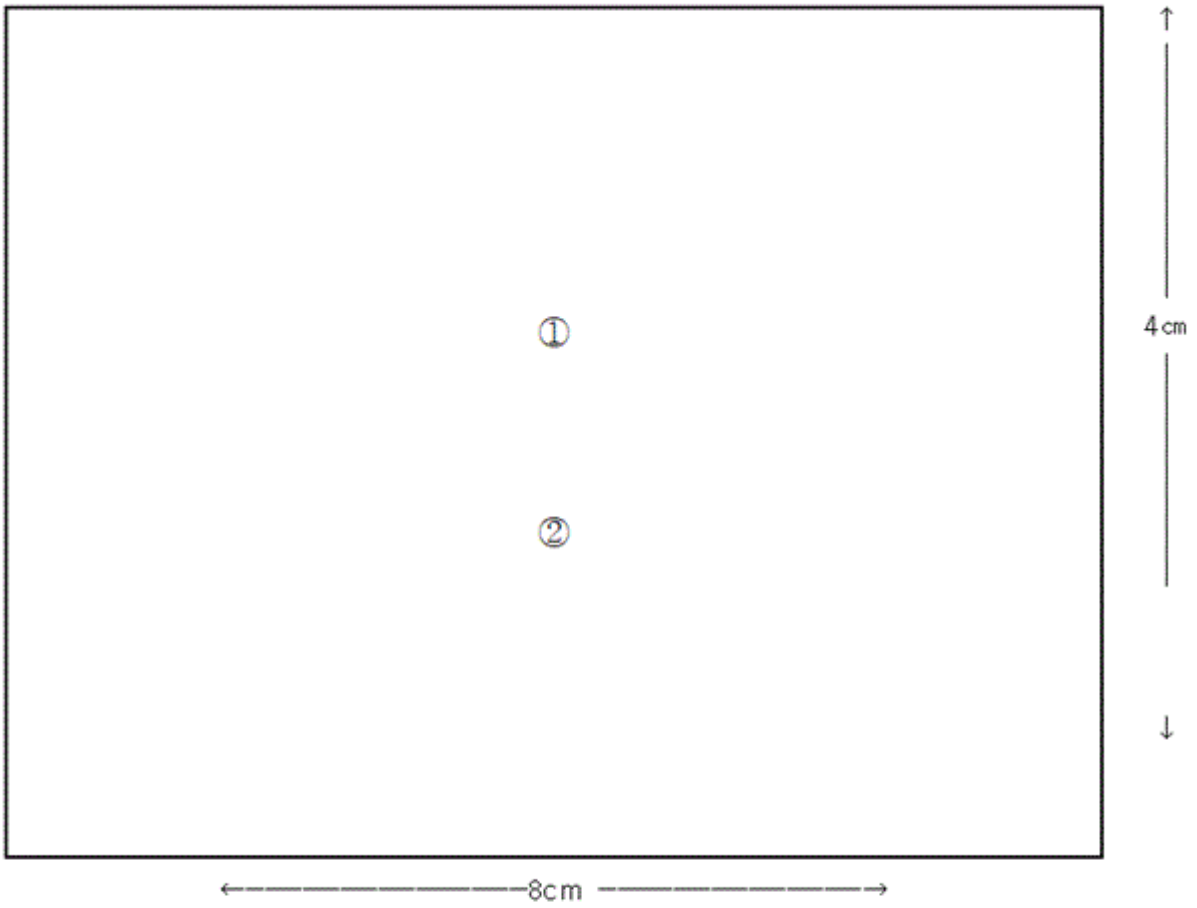

※ 두께: 0.2cm

(주의) 1.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 당직기관명을 적는다.

② :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당직, 당직총사령 보좌관 등 당직의 종류를 적는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글자 크기	글자 종류	글자색
①	20포인트	고 딕 체	검 정 색
②	26포인트	고 딕 체	검 정 색

3. 재료는 흰색 아크릴을 사용한다.

4. 뒷면에 옷핀 또는 집게를 달아 패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

○○○○청사 당직(총)사령

○○○○청사 당직(총)사령 보좌관

○○부 당　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 16.>

근무상황부

(부서 :　　직급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종별이 지각·조퇴 및 외출인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함
3. 종별이 연가·지각·조퇴·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210㎜× 297㎜[백상지(80g/㎡)]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3. 12. 8.>

근무상황부(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부서 :　　직급 :　　성명 :　　)

사용기간 또는 일시			내 용	연락처 (전화번호)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210㎜× 297㎜[백상지(80g/㎡)]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16.>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쪽)

부서명 :

월 \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210㎜×297㎜[백상지(80g/㎡)]

(뒤쪽)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등을 기재함
. 종별이 지각·조퇴 및 외출인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함
. 종별이 연가·지각·조퇴·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20 . . .

결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이동사항 :

여 비		정 산	

210㎜× 297㎜[백 상지(80g/㎡)]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1.>

보안점검표

년도 실·과명:

구분 / 점검일	① 서류보관 상태	② 청소 상태	③ 소등 상태	④ 화기단속 상태	⑤ 문단속 상태	⑥ 비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최종퇴청자)		결재
							점검시각	성명	

※ 비 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_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넷,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프린터·복사기·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안점검표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상태	○	○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	○
문단속 상태	○	○

특이 사항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난의 ○표시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210㎜× 297㎜[백상지(80g/㎡)]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당직근무 일지

(앞 쪽)

. . .(요일 숙[ ] 일[ ] 직)

결재		

당직자	당직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문서처리 상황						
						종류	발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목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지시한 사항			조치 결과 확인			특근자 현황						
						소속·부서	근무자	특근시간				
							외 명					
							외 명					
보고 사항			인계 사항	1. 물품 2. 문서 3. 기타			외 명					
							외 명					
							외 명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 개요	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연락사항	연락기관	수화자 소속 · 직위(직급)	수화자 성명	송화자 성명	이상 유무

비 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당직사령 근무 일지

결재		

[ ]숙
. . (요일 직)
[ ]일

당직자	당직사령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순 찰 감 사 사 항		
	보좌관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순찰구역	순찰시간	발견 및 처
지시받은 사항				조치사항						
지시한 사항				조치결과 확인						
	법제처			특기 및						

기 관 별 당 직 사 항 기 록

기 관 명	당 직 자	당직신고기간	순 찰 계 획	중요 보고사항		특근자 현황
				보 고 시 간	보 고 내 용	
	외 명	시 분		시 분 시 분		
	외 명	시 분		시 분 시 분		
	외 명	시 분		시 분 시 분		
	외 명	시 분		시 분 시 분		
	외 명	시 분		시 분 시 분		
	외 명	시 분		시 분 시 분		
	외 명	시 분		시 분 시 분		
	외 명	시 분		시 분 시 분		
	외 명	시 분		시 분 시 분		

비고

※ 당직사령서의 문장 · 문서 양식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인 사 혁 신 처 장

(정 부 당 직 총 사 령 서 명)

210㎜×297㎜[백상지(80g/㎡)]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9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구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인원				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계	1시간 내 응소	2시간 내 응소	2시간 이후 응소			
총 계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본 부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소 속 기 관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 출장 · 병가 · 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

210㎜× 297㎜[백상지(80g/㎡)]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8. 10. 31.>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8. 10. 31.>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공무원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 횟수	회수 여부	재발급			사진	비고
										사유	회수 일시	반납 일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5.>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한글)	생년월일
	공무원증 번호	전화번호*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 (단, **신청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어야만 함)

구분	[ ] 실물 공무원증	[ ] 발급 [ ] 재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사유	실물 공무원증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모바일 공무원증	[ ] 최초 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스마트폰 분실) [ ] 스마트폰 교체 [ ]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 ] 실물 공무원증 재발급 [ ] 기타 ( )
분실 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0조 및 제6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사진 1매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직인

발급권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1. 2. 5.>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공무원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 직급	성명	생년 월일	발급 횟수	폐기 여부	재발급 사유	사진	비고

210㎜×297㎜[백상지(80g/㎡)]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5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1 - 831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 12. 11.>]

제1조의2(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조에서 이동 <2013. 12. 11.>]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5. 23.]

제3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 2. 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1980. 7. 8.]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3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① 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3.]

제3조의4(채용 절차)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5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3. 12. 11., 2017. 7. 26., 2020. 6. 23., 2022. 12. 27.>

1.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20. 6. 23.>

④ 제1항제3호의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판단 기준 및 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2. 12. 27.>

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제4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 1. 26., 2022. 12. 27.>

[본조신설 2011. 5. 23.]

제3조의5(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 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4. 11. 19.>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3. 12. 11.,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5. 23.]

[제목개정 2013. 12. 11.]

제3조의6 삭제 <2013. 12. 11.>

제4조(임용 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5조 삭제 <2013. 12. 11.>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0. 6. 23., 2022. 12. 27.>

1. 비서, 비서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다), 정책보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유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한 별정직공무원

③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5. 23.]

제6조의2 삭제 <2006. 12. 21.>

제7조 삭제 <2013. 12. 11.>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장제1절ㆍ제3절을 준용하고, 일반직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장제2절ㆍ제3절을 준용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목개정 2011. 7. 4.]

제7조의4(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20. 6. 23.>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3. 12. 16., 2020. 6.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6. 23.>

[전문개정 2011. 5. 23.]

[제목개정 2020. 6. 23.]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목개정 2011. 11. 1.]

제9조(면직 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 임용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임용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 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제9조의2(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 징계처분등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 소청심사위원회 ”는 “ 행정심판위원회 ”로, “ 결정 ”은 “ 재결 ”로 본다.
③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23.]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11.]

부칙 <제1318호,1963. 5. 29.>
①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령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2호,196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1970. 7.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2호,1980. 7.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6호,1981. 6.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1호,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제12661호,1989.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3호,1991. 7. 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제15601호,199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6호,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부칙 <제17958호,2003. 4. 7.>(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 을 "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8419호,2004. 6. 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7호,2005.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3호,2005.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

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9517호,2006. 6. 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5호,2006. 1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5호,2007. 2. 12.>(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 인사기록카드 사본 ”을 “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0062호,2007. 5.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

로 본다.

부칙 <제20712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88호,2008. 6. 2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1497호,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22929호,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11호,2011.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7호,2011. 11. 1.>(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 특별채용 "을 " 채용 "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552호,201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3&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ㆍ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5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15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정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 으로 한다.

<16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20호,2017. 7. 26.>(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 장관정책보좌관 ”을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 장관정책보좌관 ”을 “ 정책보좌관 ”으로 한다.

부칙 <제30803호,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 시간제근무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 ”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 시간제근무 ”를 “ 시간선택제근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 ”를 “ 시간선택제근무 ”로 한다.

부칙 <제33153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제3조의4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58호,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 면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하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5호 및 이 영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하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5호 및 이 영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 표] 삭제 <2006.12.21>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 - 201 - 8500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성희롱 ”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 성폭력 ”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성희롱 ·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 임용권자등 ” 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 피해자등 ” 이라 한다)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22.>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2의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②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2.>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4의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등이나 신고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 인사상 불이익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 조치가 제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등이 부담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ㆍ임명제청권자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9조(임용권자등의 의무) ①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임)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29317호,2018.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68호,2025. 7.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소청절차규정

[시행 2025. 12. 16.] [대통령령 제35918호, 2025. 12. 1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소청 행정과) 044 - 201 - 8665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 청구서 ”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 12. 16., 1973. 3. 30., 2000. 11. 9., 2007. 9. 6.>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이하 “ 소청인 ”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 9. 6.>

③ 삭제<1989. 12. 30.>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 소청제기기간 ”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9.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1978. 10. 27.>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①제2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2000. 11. 9.>

②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 12. 30., 2000. 11. 9., 2007. 9. 6.>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4.>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7. 9. 6., 2020. 5. 4.>

③ 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0. 5. 4.>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신설 1989. 12. 30., 2007. 9. 6., 2020. 5. 4.>

[본조신설 1972. 12. 16.]

[제목개정 2020. 5. 4.]

제5조(임시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9. 6.,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6조(보정요구등) ①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2000. 11.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9. 12. 30.>

③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2. 12. 16., 1978. 10. 27., 2000. 11. 9.>

④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각 기관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00. 11. 9.>

제7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의2 삭제 <2025. 12. 16.>

제8조(기일지정통지)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9., 2020. 5. 4.>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8. 10. 27.>

③ 삭제<2000. 11. 9.>

④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2. 12. 16., 2000. 11. 9.>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9., 2023. 6. 7.>

②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 10. 27., 2000. 11. 9.>

제10조(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5. 12. 16.>

1.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으로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2.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③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6.>

④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72. 12. 16., 2025. 12. 16.>

제10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비위에 관한 징계처분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7.]

제11조(증거제출권) ①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9. 6.>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 10. 27.>
③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신설 1972. 12. 16.>
⑤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00. 11. 9.>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①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 10. 27.>

제1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위원회는 위원과 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6.]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25. 1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8. 10. 27., 2000. 11. 9.>
[전문개정 1972. 12. 16.]

제16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4.]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①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1978. 10. 27., 2020. 5. 4.>
③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ㆍ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9., 2004. 6. 11.,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⑤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1973. 3. 30., 2000. 11. 9.>
⑥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2000. 11. 9.>
[전문개정 1972. 12. 16.]

[제목개정 2004. 6. 11.]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1. 9.]

제19조 삭제 <1973. 3. 30.>

제20조 삭제 <1973. 3. 30.>

제2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 별표1 " 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 별표1 " 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89. 12. 30., 1998. 2. 24.>
[전문개정 1978. 10. 27.]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 5. 4.]

부칙 <제4420호,1969.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9호,1970.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5호,1972. 5.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에 재임중인 위원장은 그 임기가 끝날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01호,1972. 1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0호,1973.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4호,1973. 3. 30.>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1호,1978. 10.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2호,1989.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0호,1998. 2. 24.>(공무원여비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 국내여비규정 " 을 각각 " 공무원여비규정 " 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부칙 <제16997호,2000.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6호,2004.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249호,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각하 결정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 중앙인사위원회 "를 " 행정안전부 "로 한다.

<6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 행정안전부 "를 " 안전행정부 "로 한다.

<7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 안전행정부 "를 " 인사혁신처 "로 한다.

<18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30664호,2020.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38호,2021. 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2호,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구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111호,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18호,202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91호, 2026. 6. 3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 - 201 - 82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10. 12. 13.]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3.>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2010. 12. 13.>
1.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복직 및 겸임
2. 연구관과 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의 전보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신규채용ㆍ전직ㆍ강임ㆍ강등ㆍ면직ㆍ해임ㆍ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③ 삭제<2006. 6. 12.>

④ 삭제<2006. 6. 12.>

⑤ 소속 장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용권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3.>

⑥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3.>

1. 별표 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
2.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과 지도사

⑦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장관 상호 간, 소속 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3.>

[전문개정 2004. 6. 11.]

[제목개정 2010. 12. 13.]

제4조의2(인사관리 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2장 신규 채용 <개정 2010. 12. 13.>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6조(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추천될 수 있는 채용후보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후단 중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3호”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②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1. 11. 1.]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2의5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6. 6. 30.>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 경력기준을 준용하고, 같은 표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ㆍ4급ㆍ5급"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6급ㆍ7급"은 "연구사

、지도사 ”로 본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6. 6. 30.>

④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의 요건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중 “별표 4”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의6”으로 본다.<개정 2011. 5. 23., 2011. 11. 1.>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를 선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에 규정된 전공 외의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험령 제47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1. 11. 1.]

제7조의3(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7.>

1.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가.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및 별표 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나. 지도직공무원: 지도사 및 별표 2의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 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본조신설 2011. 5. 23.]

[제목개정 2011. 11. 1.]

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임용령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

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1. 1.>

[본조신설 2011. 5. 23.]

[제목개정 2011. 11. 1.]

제8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②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개정 2011. 11.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1. 11. 1.]

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0. 12. 13.]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는 “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로 본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0. 12. 13.]

제3장 전직

제11조(전직)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 지도직렬 상호 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 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 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2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직 추천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말한다)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 지도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2의5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4. 같은 직군에서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5.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6. 별표 2 제1호나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같은 직군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이나 다른 과학기술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제4장 승진임용

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4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및 임용령 제3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소속 장관은 세부 전문 분야별로 미리 우선승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승진시험일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전까지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에 따른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연구사와 지도사를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할 때에는 다른 연구사, 지도사,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23. 12. 26.>

② 삭제<2008. 2. 5.>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1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개정 2010. 12. 13., 2013. 12. 4.>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개정 2010. 12. 13., 2018. 9. 18., 2019. 8. 6., 2020. 12. 29., 2024. 12. 31.>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신설 2010. 12. 13.>

⑥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재직연수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신설 2019. 8. 6., 2024. 12. 31.>

[제목개정 2010. 12. 13.]

제15조(연구 실적)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나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⑥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6조 삭제 <2005. 12. 26.>

제16조의2 삭제 <2005. 12. 26.>

제17조 삭제 <2004. 6. 11.>

제18조 삭제 <1995. 12. 22.>

제19조 삭제 <2004. 6. 11.>

제20조 삭제 <2004. 6. 11.>

제21조 삭제 <2004. 6. 11.>

제21조의2 삭제 <1998. 12. 31.>

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1. 5., 2024. 12. 31., 2025. 7. 7.>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 6. 25.>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9. 11. 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9. 6. 25., 2019. 11. 5., 2024. 12. 31.>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6. 25., 2019. 11. 5.>

⑧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7. 7.>

⑨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5. 7. 7.>

⑩ 소속 장관은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2025. 7. 7.>

⑪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신설 2025. 7. 7.>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5장 시험

제23조(시험 실시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시험
2.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
3.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삭제<2011. 5. 23.>

③ 제1항 각 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추천, 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1. 5.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23조의2 삭제 <2010. 12. 13.>

제24조(시험과목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13., 2011. 4. 4., 2015. 5. 6., 2020. 4. 28.>

②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개정 2010. 12. 13.>

③ 시험 요구 기관의 장(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제23조제1항 본문 및 시험령 제2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개정 2010. 12. 13., 2011. 5. 23.,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④ 삭제<2004. 6. 11.>

⑤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3.>

⑥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3.>

⑦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제6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시험과목을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3.>

⑧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령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 및 이 영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3.>

⑨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4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개정 2010. 12. 13.>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0. 12. 13.>

⑪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을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4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개 과목을 지정한다.<개정 2010. 12. 13., 2011. 11. 1.>

[제목개정 2010. 12. 13.]

제25조(시험의 방법 등) ①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을 변경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연구사나 지도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⑤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4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연구사나 지도사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6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의 계산방법은 시험령 제42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번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에 5번 불합격한 연구사나 지도사는 최종시험 응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직류별 또는 직렬별로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6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5. 5. 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 비율(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인 경우에는 3퍼센트로 한다)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1. 5. 23., 2011. 11. 1., 2023. 12. 26.>

③ 삭제<2015. 5. 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6.>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가산한다.<신설 2015. 5. 6.>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10. 12. 13.]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5. 23.]

제27조(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 5급 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ㆍ전직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하되, 응시연령 및 응시수수료에 대해서는 6ㆍ7급 공무원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ㆍ전직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전문개정 2011. 5. 23.]

제6장 삭제 <2020. 9. 22.>

제28조 삭제 <2011. 3. 7.>

제28조의2 삭제 <2020. 9. 22.>

제29조 삭제 <2020. 9. 22.>

제7장 삭제 <1998. 12. 31.>

제30조 삭제 <1998. 12. 31.>

제31조 삭제 <1998. 12. 31.>

부칙 <제11604호,198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ㆍ임용제청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기상연구직렬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정되는 중앙기상대직제에 의하여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ㆍ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

10,644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5. 7. 2.>

제6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총무처장관이 별표2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5급공무원의"를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를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78조제4항의"를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5급이상공무원에"를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하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를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에"를 각각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부칙 <제11719호,1985. 7. 2.>(중앙기상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중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는 자에 대한 호봉획정"을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으로 한다.

부칙 <제11837호,198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ㆍ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ㆍ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 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정원을 말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제외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이 경우 지도관은 5급이상의, 지도사는 6급이하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다)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ㆍ생활지도직렬ㆍ의무직렬ㆍ약무직렬ㆍ간호직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 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6월이상 재직한 때

⑥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⑦이 영 시행당시의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⑧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2급 내지 5급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를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을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의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각각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2051호,198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1.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표 및 2. 지도직공무원의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365호,198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간호원은 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연구사ㆍ지도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658호,1989.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6조 (시ㆍ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8조제3항중 “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교육청 ”을 “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시ㆍ군교육청 ”으로 본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 문교부 ”를 “ 교육부 ”로 한다.

<57>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01호,1991.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에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3768호,1992. 1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8호,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업연구직렬의 농업경영ㆍ원예직류,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직류, 축산연구직렬의 축산연구직류, 가축위생연구직렬의 가축위생연구직류, 농공연구직렬의 농공연구직류, 농촌지도직렬의 농업ㆍ잠업ㆍ원예ㆍ축산ㆍ농촌사회ㆍ농업기계ㆍ

농업토목직류,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지도직류의 시험과목(정보체계론、전산학개론 및 국민윤리를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연구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농업연구직렬의 작물、식물환경、유전공학、농촌생활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의 시험과목을, 수산연구직렬의 각 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를 적용한다.

제 1 차	필 수	농촌지도론, 행정법총론
	필 수	재배학원론
제 2 차	선 택	토양학, 수도작,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업경영학, 원예학, 임업경영학, 육잠학, 가축사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농업작업기계학, 응용역학, 통계학중 1과목

④(제1차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는 농업연구직렬의 작물、식물환경、유전공학、농촌생활직류로,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는 수산연구직렬의 해양환경연구、수산자원연구、수산양식연구、수산공학연구、수산가공연구、수산경제연구직류로 보아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500호,199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4중 학예연구、편사연구、공업연

구、임업연구、기상연구、보건연구、환경연구 및 어촌지도직렬의 공채시험과 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관 및 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를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에 의한다

제1차	필수	농촌지도론, 행정법총론
	필수	재배학원론
제2차	선택	토양학, 수도작,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업경영학, 원예학, 임업경영학, 육잠학, 가축사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농업작업기계학, 응용역학, 통계학중 1과목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840호,1995. 1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131호,1996. 7.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599호,1997. 12. 31.>(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를 "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 자치구 "라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ㆍ농총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부칙 <제16076호,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365호,1999. 5. 24.>(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29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94>내지 <152>생략

부칙 <제17919호,200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9항·제10항·제1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4조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행하는 잠업곤충직류·농업환경직류 및 작물보호직류의 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4의 잠업직류·작물직류 및 식물환경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제5조 (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잠업직류、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농업연구직렬、잠업곤충직류、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193호,2003. 12. 30.>(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 행정、기술고등고시 ”를 “ 행정고등고시 ”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8233호,2004.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7호,2004.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16호,2005.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중 “ 별표 13의 응시배수 ”를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 ”로 한다.

부칙 <제19187호,2005. 12. 26.>(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516호,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51호,2007.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5호,2008.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888호,2008. 6. 2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 "를 " 교육과학기술부 "로 한다.

<6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522호,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진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어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은 별표 1의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지도직렬 또는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도직렬 및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691호,2011. 3.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 겸임 등 인사관리 ”를 “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로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22835호,2011. 4. 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 행정고등고시 ”를 “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928호,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277호,2011. 11. 1.>(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 (특별채용) ”을 “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를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특별채용할 ”을 “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 특별채용시험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 특별채용시험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 특별채용시험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 특별채용 ”을 “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특별채용시험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 ”을 “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 ”를 “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 특별채용시험과목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 ”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 특별채용시험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 특별채용시험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 특별채용된 ”을 각각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 특별채용 ”을 “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 특별채용 ”을 “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 특별채용대상 ”을 “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 특별채용 ”을 “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 특별채용대상 ”을 “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 특별채용예정 ”을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 특채 ”를 각각 “ 경채 ”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 특채 ”를 “ 경채 ”로,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 특채 ”를 각각 “ 경채 ”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 특채 ”를 “ 경채 ”로,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 특별채용시험 ”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ㆍ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92호,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ㆍ교육부"를 각각 "교육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8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234호,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2항 중 “ 행정자치부 ”를 각각 “ 행정안전부 ”로 한다.
<36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180호,2018. 9. 1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중 “ 「공무원연금법」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으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930호,2019. 6. 25.>(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26호,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93호,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50호,2020.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 군에 입대한 ” 을 “ 징집 또는 소집된 ” 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1044호,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6장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업곤충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

직렬 산업곤충직류의 해당 직급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임용령 제45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9조 ”를 “ 임용령 제45조 ”로 한다.

부칙 <제31337호,2020. 12. 29.>(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156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농작업안전보건기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7(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및 버섯산업기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92호,2023. 8. 30.>(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 직군 에서 ”를 “ 직군에서 ”로, “ 기술직렬 ”을 “ 과학기술직렬 ”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직군란 중 “ 기술 ”을 “ 과학기술 ”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직군란 중 “ 기술 ”을 “ 과학기술 ”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054호,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류 신설에 따른 전직임용의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은 이 영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 없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안전연구관
2.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안전연구사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 없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계연구직렬 통계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계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통계연구직렬 통계직류의 통계연구관
2.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계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또는 7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통계연구직렬 통계직류의 통계연구사

제3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방재안전연구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

의 지도직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의 해당 직급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의 해당 직급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방재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연구직렬 연구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직렬 작물직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 중 “ 문화재관리학 ”을 “ 국가유산관리학 ”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사 계급 경채ㆍ전직 시험 선택 과목란 중 “ 문화재관리학 ”을 “ 국가유산관리학 ”으로 한다.

3(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180호,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공무원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휴직기간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근무기간

제3조(직류 신설에 따른 전직임용의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을 거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연구 직렬 인재개발 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인재개발 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인사연구 직렬 인재개발 직류의 인사연구관
2.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인재개발 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재직 중인 경우: 인사연구 직렬 인재개발 직류의 인사연구사

제4조(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해당 직급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별표 4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39호,2025. 7. 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91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의5 제1호(같은 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4. 12. 3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6조 및 제11조제4항 전단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가.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편사연구	편사	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심리연구	심리	심리연구관	심리연구사
	인사연구	시험개발 인재개발 성과관리 재해예방보상 연금재정	인사연구관	인사연구사
나. 과학기술	공업연구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금속 섬유 화공 화학 산업경영 물리	공업연구관	공업연구사
	농업연구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산업곤충 원예 생명유전 농촌생활 축산 농공	농업연구관	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		
	임업연구	임업 산림조경	임업연구관	임업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수의연구관	수의연구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해양수산연구관	해양수산연구사
	기상연구	기상 지진	기상연구관	기상연구사
	보건연구	의학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약학		
		공중보건		
	환경연구	환경	환경연구관	환경연구사
	시설연구	토목	시설연구관	시설연구사
		건축		
	안전연구	안전관리	안전연구관	안전연구사
		재난관리		
		치안관리		
	통계연구	통계	통계연구관	통계연구사

2.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지도관	지도사
과학기술	농촌지도	작물 농업경영 산업곤충 원예 축산 농촌사회 농업공학 농촌생활	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어촌지도	어촌	어촌지도관	어촌지도사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4.11.19.>

연구관 직위의 종류

1. 기관의 장인 연구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매우 큰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큰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다.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라. 감독·책임성이 요구되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2. 부서의 장인 연구관
   가.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연구·시험·조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시험·조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다. 풍부한 지식·경험을 가지고 연구·시험·조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관
   가.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연구·시험·조사업무를 행하는 직위
   나. 연구·시험·조사업무를 행하는 직위

비고: 기관별 연구관 직위의 구체적 종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며, 소속 장관이 그 기관의 연구관 직위의 종류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14.11.19.>

지도관 직위의 종류

1. 기관의 장인 지도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다. 감독·책임성이 요구되는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2. 부서의 장인 지도관
   가.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나.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비고: 기관별 지도관 직위의 구체적 종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며, 소속 장관이 그 기관의 지도관 직위의 종류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개정 2024. 12. 31.>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

직렬	직류	계급: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고고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심리연구	심리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인사연구	시험개발	행정학, 통계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교육공학, 데이터사이언스학 또는 빅데이터학을 전공한 사람
	인재개발	행정학, 통계학,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교육공학, 인공지능학 또는 인재개발학을 전공한 사람
	성과관리	행정학, 통계학, 심리학, 경영학, 인사조직학 또는 인재개발학을 전공한 사람
	재해예방보상	행정학, 보건학,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산업공학, 산업안전보건학, 안전공학 또는 재활학을 전공한 사람
	연금재정	행정학, 통계학, 경제학, 금융공학, 금융보험학, 보험계리학 또는 재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또는 반도체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자	
	정보통신	정보통신공학, 모바일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또는 인공지능공학을 전공한 사람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
	화학	

		학, 생물정보학, 환경공학 또는 배터리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원자력공학 또는 양자시스템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가족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조리과학, 급식외식학 또는 소비자마케팅학을 전공한 사람
임업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

	산림조경	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의연구	수 의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기상연구	기 상	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지 진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안전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치안관리	경찰학, 해양경찰학, 소방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정책학, IT정책경영학, 통계학, 심리학, 항해학, 과학수사학, 범죄학, 경호학, 교정학, 공공안전학 또는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사람
통계연구	통계	통계학, 데이터사이언스학, 빅데이터학, 인공지능학, 경제학, 사회학 또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비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개정 2011.11.1>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

직렬	직류 \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류(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농 촌 생 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비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 <개정 2026. 6. 3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렬	직류 \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심리연구	심리	임상심리사 1급(7)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7)	임상심리사 2급(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3)
인사연구	재해예방 보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의사(2)	기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의사
	연금재정		보험계리사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빅데이터분석, 컴퓨터시스템,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컴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작업안전보건)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위생사(5)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

		수의사(7)	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작업안전보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주조사(5)
임업연구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기상연구	기상 지진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응용지질, 기상)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업)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치안관리	변호사(3)	변호사

비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그 밖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공무원

직렬 \ 직류 \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작업안전보건)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 2급
	농업공학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승강기)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농작업안전보건)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그 밖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 <개정 2026. 6. 3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렬	직류 \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심리연구	심리	임상심리사 1급(7)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7)	임상심리사 2급(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3)
인사연구	재해예방 보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의사(2)	기사(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의사
	연금재정		보험계리사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빅데이터분석, 컴퓨터시스템,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컴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작업안전보건)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위생사(5)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

		수의사(7)	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작업안전보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주조사(5)
임업연구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기상연구	기상 지진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응용지질, 기상)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업)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치안관리	변호사(3)	변호사

비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그 밖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공무원

직렬 \ 직류 \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작업안전보건)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 2급
	농업공학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승강기)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농작업안전보건)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그 밖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6] <개정 2011.11.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제7조의2제4항 관련)

구분	계급	·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별표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별표 2의2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별표 2 제1호 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별표 2의2 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을 말한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12. 2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

구 분	경 력	재직연수 환 산 율
일반직공무원 경력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100%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2.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80% 50%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 삭제 <2004.6.11>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4. 12. 3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표

1. 연구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표

직렬	직류	연구관						연구사				
		공채			경채·전직·승진			공채		경채·전직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필수	필수	선택	필수	필수	선택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학예연구	학예일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문화사, 한국사, 문화인류학	한국고고학, 동양고고학, 한국건축사,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민속학, 국문학사, 보존과학, 국악사, 박물관학, 조경학 중 1과목	문화사, 한국사	문화인류학	박물관학, 한국고고학, 동양고고학, 한국건축사,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민속학, 국문학사, 보존과학, 국악사, 조경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한국고고학, 동양고고학, 한국건축사,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민속학, 국문학사, 보존과학, 국악사, 문화인류학, 국가유산관리학, 조경학 중 1과목
	미술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현대미술론,예술론, 미술사	보존과학, 미술관학 중 1과목	문화사, 한국사	현대미술론	예술론, 미술관학,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현대미술론, 예술론, 미술사	문화사	현대미술론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중 1과목
	국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국악사, 국악이론, 국악기론	동양음악론, 민속음악론, 전통무용론 중 1과목	문화사, 한국사	국악사	국악이론, 국악기론, 동양음악론, 민속음악론, 전통무용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국악사, 국악이론, 국악기론	문화사	국악사	국악이론, 국악기론, 동양음악론, 민속음악론, 전통무용론 중 1과목
	국어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국어정책론, 국어음운론, 국어문법론	국어어휘론, 국어방언학, 일반언어학, 국어사, 국어교육론 중 1과목	문화사, 한국사	국어정책론	국어음운론, 국어문법론, 국어어휘론, 국어방언학, 일반언어학, 국어사, 국어교육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국어정책론, 국어음운론, 국어문법론, 국어어휘론	한국사	국어정책론	국어음운론, 국어문법론, 국어어휘론, 국어방언학, 일반언어학, 국어사, 국어교육론 중 1과목
편사연구	편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한국사적해제, 한문	한국법제사, 한국경제사, 중국사, 일본사,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사학개론, 문화사	한국사, 한문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사학개론, 한국사적해제, 한문, 문화사	사학개론	한국사, 한문	

기록연구	기록관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역사학, 문헌정보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화학, 전산학 중 1과목	기록관리학개론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역사학, 문헌정보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화학, 전산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역사학, 문헌정보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화학, 전산학 중 1과목
심리연구	심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심리학개론 심리통계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임상 및 이상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 및 지각심리학, 상담심리학, 신경심리학 중 1과목	심리학개론	심리통계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임상 및 이상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 및 지각심리학, 상담심리학, 신경심리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심리학개론, 심리통계,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학개론	심리통계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 및 지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1과목
인사연구	시험개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통계학, 조사방법론, 인사조직론	인공지능, 표본조사론,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심리학 중 1과목	통계학, 조사방법론	인사조직론	인공지능, 표본조사론,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심리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통계학, 조사방법론, 인사조직론, 인공지능	통계학	조사방법론	인사조직론, 인공지능, 표본조사론,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심리학 중 1과목
	인재개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행정학, 교육학, 경영학	심리학, 통계학, 인사조직론 중 1과목	행정학, 교육학	경영학	심리학, 통계학, 인사조직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학, 교육학, 경영학, 심리학	행정학	교육학	경영학, 심리학, 통계학, 인사조직론 중 1과목
	성과관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행정학, 인사조직론, 조직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교육학, 통계학, 데이터분석학 중 1과목	행정학, 인사조직론	조직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교육학, 통계학, 데이터분석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학, 인사조직론, 조직심리학, 경영학	행정학	인사조직론	조직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교육학, 통계학, 데이터분석학 중 1과목
	재해예방보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행정학, 산업보건학, 안전관리론	사회복지학, 행정법, 인간공학, 재활학, 간호학, 산업심리학 중 1과목	행정학, 산업보건학	안전관리론	사회복지학, 행정법, 인간공학, 재활학, 간호학, 산업심리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학, 산업보건학, 안전관리론, 사회복지학	행정학	산업보건학	안전관리론, 사회복지학, 행정법, 인간공학, 재활학, 간호학, 산업심리학 중 1과목
	연금재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재정학, 행정학, 통계학	보험학, 연금수리학, 금융공학, 재무학 중 1과목	재정학, 행정학	통계학	보험학, 연금수리학, 금융공학, 재무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재정학, 통계학, 행정학, 보험학	재정학	통계학	행정학, 보험학, 연금수리학, 금융공학, 재무학 중 1과목
공업연구	기계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중 1과목
	전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

				학 중 1과목			디지털공학 중 1과목					
	전자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1과목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자동제어, 통신공학, 전자재료, 디지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1과목
	정보통신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정보통신일반, 통신이론, 자료구조론	소프트웨어공학, 이동통신공학, 무선통신공학, 데이터 베이스론,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컴퓨터 네트워크 중 1과목	정보통신일반, 행정법총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이동통신공학, 무선통신공학, 데이터 베이스론,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컴퓨터 네트워크, 자료구조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정보통신일반, 통신이론, 자료구조론, 데이터 베이스론	정보통신일반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이동통신공학, 무선통신공학, 데이터 베이스론,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컴퓨터 네트워크, 자료구조론 중 1과목
	금속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제련원리, 물리야금, 주조공학	분말야금,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	일반금속학, 행정법총론	제련원리	분말야금, 주조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제련원리, 금속재료, 금속가공	일반금속학	제련원리	분말야금, 주조공학, 금속재료, 금속가공, 재료공학 중 1과목
	섬유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섬유가공학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방사공학중 1과목	섬유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섬유재료학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방사공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방적공학, 섬유재료학, 섬유가공학	천연섬유학	인조섬유학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중 1과목
	화공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중 1과목	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중 1과목
	화학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분석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중 1과목	화학개론, 행정법총론	분석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분석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화학개론	분석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중 1과목
	산업경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작업관리, 경제성공학, 산업통계학 중 1과목	산업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작업관리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산업공학개론,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산업공학개론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작업관리 중 1과목
	물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고체물리학	양자역학, 열물리학, 광학, 원자핵물리학 중 1과목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양자역학, 고체물리학, 열물리학, 광학, 원자핵물리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광학	물리학개론	일반역학	전기자기학, 양자역학, 현대물리학, 열물리학, 유체역학 중 1과목

농업연구	작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중 1과목	재배학, 행정법총론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중 1과목
	농업환경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식물영양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업기상학, 미생물학 중 1과목	토양학, 행정법총론	농업환경화학	식물영양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업기상학, 미생물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식물영양학, 실험통계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업기상학, 미생물학 중 1과목
	작물보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재배학, 작물보호학, 생화학	식물병리학, 응용곤충학, 농약학, 잡초방제학, 작물생리학 중 1과목	재배학, 행정법총론	작물보호학	생화학, 식물병리학, 응용곤충학, 농약학, 잡초방제학, 작물생리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재배학	작물보호학	생화학, 식물병리학, 응용곤충학, 농약학, 잡초방제학, 작물생리학 중 1과목
	농업경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농산물유통학, 농촌조사론, 계량경제학 중 1과목	농업경제학, 행정법총론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농산물유통학, 농촌조사론, 계량경제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농산물유통학, 농촌조사론, 계량경제학 중 1과목
	산업곤충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양잠학, 양봉학, 곤충학	제사학, 잠상보호학 중 1과목	잠학개론, 행정법총론	양잠학	양봉학, 곤충학, 제사학, 잠상보호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실험통계학, 양잠학, 양봉학, 곤충학	잠학개론	양잠학	양봉학, 곤충학, 제사학, 잠상보호학 중 1과목
	원예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재배학, 원예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분자생물학 중 1과목	재배학, 행정법총론	원예학	채소학, 과수학, 화훼학, 시설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재배학	원예학	채소학, 과수학, 화훼학, 시설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중 1과목
	생명유전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작물육종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	생물학개론, 행정법총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작물육종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작물육종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물정보학 중 1과목
	농촌생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조경학, 소비자경제학, 피복환경학, 통계학중 1과목	생활과학학, 행정법총론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조경학, 소비자경제학, 피복환경학, 통계학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농촌계획학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조경학, 소비자경제학, 피복환경학, 통계학 중 1과목
	축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축산가공학, 가	축산학개론, 행정법총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가축육종학	축영양학 중 1과목			학, 축산가공학, 가축영양학 중 1과목		번식학, 가축육종학			학, 축산가공학, 가축영양학 중 1과목
	농공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유체역학, 농업동력학, 농업시설공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수리학, 전기전자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유체역학	농업동력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업수리학, 전기전자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물리학개론	유체역학	농업동력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업수리학, 전기전자공학, 자동제어 중 1과목
	농식품개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분석학, 식품저장학, 발효공학, 조리과학, 급식외식학, 소비자마케팅학 중 1과목	식품학, 행정법총론	실험통계학	식품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분석학, 발효식품학, 식품공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조리과학, 발효공학, 생화학, 생리학, 천연물화학, 급식외식학, 소비자마케팅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식품학	실험통계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위생학, 식품공학, 식품분석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발효공학, 식품저장학, 조리과학, 생화학, 생리학, 면역학, 천연물화학, 급식외식학 중 1과목
임업연구	임업 산림조경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조림학, 임업경제학, 임목육종학	산림공학, 수목학, 산림보호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중 1과목	조림학, 행정법총론	임업경제학	임목육종학, 산림공학, 수목학, 산림보호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제학, 임목육종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제학,임목육종학, 산림공학, 수목학, 산림보호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중 1과목
수의연구	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생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독성학 중 1과목	수의미생물학, 행정법총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생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독성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생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독성학 중 1과목
해	해양환경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일반해양학, 수산생물학, 해양오염학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 해양환경학, 수산해양학, 위성해양학 중 1과목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일반해양학	수산생물학, 해양오염학,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 해양환경학, 수산해양학, 위성해양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일반해양학, 수산생물학, 해양오염학	수산학개론	일반해양학	수산생물학, 해양오염학,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 해양환경학, 수산해양학, 위성해양학 중 1과목
	수	언어논리영역,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	수산학개론,	수산자원학	수산해양학, 수산	국어(한문포함),	생물학개론, 수	수산학개론	수산자원학	수산해양학, 수산

양수산연구	산자원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수산해양학, 수산생물학	태학, 해양오염학, 수산경영학 중 1과목	행정법총론		생물학, 어장학, 해양생태학, 해양오염학, 수산경영학 중 1과목	영어, 한국사	산자원학, 수산해양학, 수산생물학			생물학, 어장학, 해양생태학, 해양오염학, 수산경영학 중 1과목
	수산양식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해양오염학, 수산경영학 중 1과목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해양오염학, 수산경영학, 해양생태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해양오염학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해양오염학, 수산경영학, 해양생태학 중 1과목
	수산공학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어장학, 수산토목학, 해양수리학, 해양구조공학 중 1과목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어장학, 수산토목학, 해양수리학, 해양구조공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어장학, 수산토목학, 해양수리학, 해양구조공학 중 1과목
	수산가공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 수산경영학, 냉동냉장학, 식품영양학 중 1과목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 수산경영학, 냉동냉장학, 식품영양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식품위생학	수산학개론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 수산경영학, 냉동냉장학, 식품영양학 중 1과목
	수산경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수산자원학	수산회계, 수산물마케팅, 수산업투자론중 1과목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수산자원학, 수산회계, 수산물마케팅, 수산업투자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수산자원학	수산학개론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수산자원학, 수산회계, 수산물마케팅, 수산업투자론 중 1과목
기상연구	기상 지진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중 1과목	기상학개론, 행정법총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후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상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후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수치예보 중 1과목
보건	의학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예방의학, 역학, 진단학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정신과학, 이비인후과학, 신경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소아과학, 방사선과학, 마취과학, 미생물	예방의학, 행정법총론	역학	진단학, 병리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해부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예방의학, 역학, 진단학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역학, 진단학, 병리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해부학 중 1과목

				학, 생리학, 생화학 중 1과목								
	약학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보건학, 생약학, 약화학, 약품제조화학, 약품분석학, 위생약학 중 1과목	약학개론, 행정법총론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보건학, 생약학, 약화학, 약품제조화학, 약품분석학, 위생약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약학개론,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약학개론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보건학, 약품분석학, 위생약학 중 1과목
	공중보건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임상병리학, 보건물리학, 보건통계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실험동물의학, 해부학, 수의병리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위생화학, 면역학, 생물학 중 1과목	보건학, 행정법총론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임상병리학, 보건물리학, 보건통계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실험동물의학, 해부학, 수의병리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위생화학, 면역학, 생물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임상병리학, 보건물리학, 보건통계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실험동물의학, 해부학, 수의병리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위생화학, 면역학, 생물학 중 1과목
환경연구	환경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학, 미기상학,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생태학 중 1과목	환경공학, 행정법총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학, 미기상학,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생태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학, 미기상학,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생태학 중 1과목
시설연구	토목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중 1과목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중 1과목
	건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구조역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안전연	안전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정책학, 통계학,	안전관리론, 행정법총론	재난관리론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정책학, 통계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행정	안전관리론	재난관리론	행정학개론, 사회학, 통계학, 심리학개론, 공업화

구	리	헌법, 영어		심리학, 공업화학, 해상안전론 중 1과목			심리학, 공업화학, 해상안전론 중 1과목		법총론			학, 해상안전론 중 1과목
	재난관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건축구조학, 환경계획, 지질학, 기상역학, 보건학, 수의보건학, 원자로공학, 전기자기학, 재료역학, 측량학, 수리수문학, 컴퓨터구조론, 항공역학, 물리해양학 중 1과목	재난관리론, 행정법총론	안전관리론	건축구조학, 환경계획, 지질학, 기상역학, 보건학, 수의보건학, 원자로공학, 전기자기학, 재료역학, 측량학, 수리수문학, 컴퓨터구조론, 항공역학, 물리해양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건축구조학, 환경계획, 지질학, 기상학개론, 미생물학, 수의미생물학, 원자로이론, 전자회로, 재료역학, 지리정보학, 수리수문학, 컴퓨터구조론, 항공역학, 물리해양학 중 1과목
	치안관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범죄학개론, 경찰학개론, 조사방법론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공공안전학 중 1과목	경찰학개론, 행정법총론	조사방법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학, 교정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공공안전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범죄학개론, 경찰학개론, 조사방법론,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조사방법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학, 교정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공공안전학 중 1과목
통계연구	통계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통계학, 조사방법론, 경제학	표본조사론, 계량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중 1과목	통계학, 행정법총론	조사방법론	표본조사론, 경제학, 계량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통계학, 조사방법론, 경제학, 계량경제학	통계학	조사방법론	표본조사론, 경제학, 계량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중 1과목

※ 비고
1. "공채"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말한다.
2. "경채"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
3. "승진"은 연구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말한다.
4. 연구관 공채의 시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언어논리영역은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능력 등을 검정한다.
   나. 자료해석영역은 통계처리 및 해석능력, 수치자료의 정리 및 분석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검정한다.
   다. 상황판단영역은 상황의 이해능력, 추리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검정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통합한 하나의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연구관 공채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

2.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표

직렬	직류	지도관						지도사				
		공채			경채·전직·승진			공채		경채·전직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필수	필수	선택	필수	필수	선택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농촌	작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재배학, 행정법총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지도	농업경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농업정책학, 농산물가격론, 농촌조사론, 농촌지도론 중 1과목	농업경제학, 행정법총론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농업정책학, 농산물가격론, 농촌조사론, 농촌지도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농촌지도론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농업정책학, 농산물가격론, 농촌조사론,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산업곤충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양잠학, 양봉학, 곤충학	곤충생리학, 천연섬유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양잠학, 행정법총론	양봉학	곤충학, 곤충생리학, 천연섬유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양잠학, 양봉학, 농촌지도론	양잠학	양봉학	곤충학, 곤충생리학, 천연섬유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원예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재배학, 원예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재배학, 행정법총론	원예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재배학	원예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축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영양학, 축산가공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축산학개론, 행정법총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영양학, 축산가공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영양학, 축산가공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농촌사회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농업교육학, 농촌사회복지론, 농촌커뮤니케이션, 농촌청소년지도론 중 1과목	농촌지도론, 행정법총론	농촌사회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농업교육학, 농촌사회복지론, 농촌커뮤니케이션, 농촌청소년지도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농업교육학, 농촌사회복지론, 농촌커뮤니케이션, 농촌청소년지도론 중 1과목
	농업공학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농업시설공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동력학, 자동제어, 농업수리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농업기계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농업동력학, 자동제어, 농업수리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공학, 농업동력학, 자동제어, 농업수리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농촌생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피복관리학, 조경학, 농촌조사연구방법론,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생활과학학, 행정법총론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피복관리학, 조경학, 농촌조사연구방법론, 농촌지도론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피복관리학, 조경학, 농촌조사연구방법론,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어촌지도	어촌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수산생물학,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수산해양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수산생물학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수산해양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산생물학,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수산학개론	수산생물학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수산해양학, 어구어법학 중 1과목

※ 비고
1. "공채"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말한다.
2. "경채"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
3. "승진"은 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말한다.

4. 지도관 공채의 시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언어논리영역은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능력 등을 검정한다.
   나. 자료해석영역은 통계처리 및 해석능력, 수치자료의 정리 및 분석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검정한다.
   다. 상황판단영역은 상황의 이해능력, 추리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검정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통합한 하나의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지도관 공채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삭제 <2010.12.13>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5.5.6.>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12. 31.>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26조의2 관련)

구 분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 산 비 율	5%	3%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 제1호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26. 6. 3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26조의2제2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심리연구	심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인사연구	연금재정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험계리사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산업기사: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정보통신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빅데이터분석, 컴퓨터시스템,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화공 화학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	기술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경영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작업안전보건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환경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작물보호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곤충	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에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버섯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종자,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작업안전보건 산업기사: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농공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작업안전보건 산업기사: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임업 연구	임업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 조경		
수의 연구	수의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산업기사: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 수산 연구	해양 환경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 자원		
	수산 양식	기술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 공학	기술사: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 가공	기술사: 수산제조, 식품 기사: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식품	
기상 연구	기상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보건 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 연구	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설 연구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안전 연구	안전관리 재난관리	기사: 방재	
	치안관리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변호사
통계	통계	기사: 빅데이터분석	

연구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비고: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촌지도	작물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작업안전보건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경영	기술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작업안전보건 산업기사: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
	산업곤충	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에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버섯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

		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공학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생활	기술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작업안전보건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산업기사: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
어촌지도	어촌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비고: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지 서식] 삭제 <2011.5.23>

인사 감사 규정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54호, 2020. 7. 1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41 - 832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적용 범위)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감사인력 및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감사의 실시) 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8조(확인서 제출)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9조(감사 강평) 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講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2. 29., 2020. 7. 14.>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9.,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2. 28.]

[제목개정 2020. 7. 14.]

제11조(의견 제출)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12조 삭제 <2020. 7. 14.>

제13조(이의 신청) 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2. 28.]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13.]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4.]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신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감사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고 내용이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의 요구인 경우
6. 그 밖에 신고 내용이 인사 감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처리한 경우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신고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감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4.]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본조신설 2020. 7. 14.]

제19조(비밀 유지 등)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

다.
[본조신설 2020. 7. 14.]

부칙 <제5041호,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5호,1999. 5. 24.>(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 총무처장관이 " 를 각각 " 중앙인사위원회가 " 로 한다.
제10조중 " 총무처장관 " 을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부칙 <제20741호,2008. 2. 2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인사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가 " 를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이 " 로 한다.
제10조 중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로 한다.
<6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905호,2011. 4.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8호,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9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02호,2015.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73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 감사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5호,2019. 4. 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4호,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5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044 - 201 - 8501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5.>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 6. 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 11. 11.>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1.>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1. 11., 2025. 12. 30.>

1.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5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7. 2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신설 2020. 8. 25., 2022. 12. 2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8. 25., 2022. 12. 27.>

⑦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의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1. 7. 27., 2022. 12. 27.>

⑧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1.>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8. 25., 2021. 7. 27., 2022. 12. 27., 2025. 11.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0. 8. 25., 2021. 7. 27., 2022. 12. 27., 2025. 11. 11.>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27.]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제목개정 2025. 12. 30.]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5. 11. 11.>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8. 25.>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8. 25.>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0. 8. 25.>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5. 7. 7.>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0. 8. 25.>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 8. 25., 2021. 1. 5.>

④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 8. 25.>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2조제8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20. 8. 25., 2025. 11. 11., 2025. 12.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신설 2025. 11. 11.>

⑤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20. 8. 25., 2025. 11. 11.>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2. 30.>

④ 공무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5. 12. 30.>

⑤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0. 8. 25., 2025. 12. 30.>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1. 11.>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1. 1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25. 11. 11.>

⑥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0. 8. 25., 2022. 12. 27., 2025. 11. 11.>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 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신설 2021. 7. 27.>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1., 2025. 12. 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 8. 13., 2025. 11. 11., 2025. 12. 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각각 “ 시ㆍ도지사 ”로 본다.
[본조신설 2020. 8. 25.]

부칙 <제30016호,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8호,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74호,2021. 1. 5.>(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을 “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 ”로 한다.

부칙 <제31920호,2021.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를 개정하는 부분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58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33575호,2023. 6. 27.>(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825호,2024. 8. 1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제35638호,2025. 7.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845호,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995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38호, 2025. 7. 7.,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 - 201 - 83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이하 " 임용령 " 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 전문경력관 "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6.>

② 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개정 2013. 12. 16.>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 소속 장관 " 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2. 12. 27.>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제4조(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 전문경력관직위 " 라 한다)의 군(이하 " 직위군 " 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 전문경력관 가군 " 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소속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신규채용 등

제6조(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 소속 장관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22. 12. 2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소속 장관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3조(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14조(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16조(시험령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령(같은 영 제36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제4장 인사관리 등

제1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1. 19.>

제18조(전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9. 25.>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경력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9. 25.>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4.]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에 의할 수 있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성과평가규정(같은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개정 2023. 12. 26.>

③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둔다.<신설 2023. 12. 26.>

④ 성과평가규정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3. 12. 26.>

1. 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2항 전단 중 “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은 “ 직위군별ㆍ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로 본다.
2. 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3항 중 “ 직급별 ”은 각각 “ 직위군별 또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직위군별 ”로 본다.
3.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4항 중 “ 직급별 또는 계급별 ”은 “ 직위군별 또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직위군별 ”로 본다.

제21조(임용령의 적용) 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의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2024. 12. 24., 2025. 7. 7.>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 9. 25.>

1. 삭제<2024. 12. 24.>
2. 임용령 제24조제1항 후단 중 “ 임용예정 직급 ”은 “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 ”로 본다.
3. 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 중 “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 ”은 “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 ”로 본다.
4. 임용령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직렬별 ”은 “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 ”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 ”은 “ 전문경력관 ”으로, “ 직렬별 ”은 “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 ”로 본다.

부칙 <제24854호,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으로 본다.

부칙 <제25000호,2013. 12. 16.>(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을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으로 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호 및 제20조제2항 후단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 으로 한다.

<19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7호,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의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전문경력관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제18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33154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59호,2023.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8호,2024.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8호,2025. 7.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를 “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 전문경력관 규정 [별표 1] <개정 2023. 12. 26.>

근무·연구 경력기준(제7조제2호 관련)

직위군	응시요건
가군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응시요건 중 가군, 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전문경력관 규정 [별표 2] <개정 2014.11.19.>

근무 · 연구 경력기준(제7조제3호 관련)

직위군	응시요건
가군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 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 - 201 - 82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5 및 제4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27., 2025. 7. 7.>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6. 30.>

④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험령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 7. 27.>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전문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각각 상당한다.<개정 2026. 6. 30.>

④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을 정해야 하고,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6. 6. 30.>

1.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

3. 전문관 및 부전문관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부전문관은 소속 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6. 6. 30.>

③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과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④ 소속 장관과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26. 6. 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
2. 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3.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4. 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5.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제2장 전문 분야 지정 등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각 부처 고유 업무로서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규모 기구 및 기능의 개편이 있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 필요성이 높아진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 해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등 조직 관련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⑥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해제하는 경우 전문직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켜야 한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로 전직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로 전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 분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3장 신규 채용 및 전직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령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춰야 하고,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또는 별표 8의 직렬 및 직류를 적용하는 경우 그 직렬 및 직류를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로 본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 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전문관 및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면제 또는 시보 임용기간 단축에 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1. 7. 27.]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7. 27., 2023. 12. 26., 2026. 6. 30.>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경과해야 한다.
   가. 5급 공무원: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다만, 6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6급 및 7급 공무원: 6급 또는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2.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가 해제된 경우
4. 국가적 사업이나 소속 장관의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 외의 분야에서 전문직공무원의 활용이 특히 필요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5. 제8조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 7. 27., 2026. 6. 30.>

③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개정 2021. 7. 27., 2026. 6. 30.>

④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27., 2026. 6. 30.>

1. 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직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이 전직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바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 당초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임용된 전문직위 전문관이 동일한 전문 분야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당시 직위에 한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제8조(전직 명령) ①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 임용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지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아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성평가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결정하려면 대상자에게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임용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심사할 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성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전직 유보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전직 유보로 의결된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전직 유보로 의결된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용심사위원회는 전직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⑤ 임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 명령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9조(전직시험) 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한 후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그 밖에 전직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3. 12. 26.>

1. 전직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전직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시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신설 2023. 12.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 12. 26.>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6. 30.]

제4장 승진임용 등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전문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문관: 3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전문관: 2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부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개정 2026. 6. 30.>

1. 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 부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제11조(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목개정 2026. 6. 30.]

제11조의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본조신설 2026. 6. 30.]

제5장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제12조(인사관리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전직,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장 성과평가 등

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 성과계약등 평가 ”라 한다)에 의한다.

1. 성과목표 달성도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이하 “ 전문성평가 ”라 한다)
3.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⑥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에게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⑦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근무성적평가) ①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1. 근무실적
2. 전문성평가
3.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전문 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⑦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고,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4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⑨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다만, 최근 근무성적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14조의4(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 등급별 점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문관: 12월 31일
2. 부전문관: 6월 30일과 12월 31일(이하 “ 정기평정 기준일 ” 이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되, 평정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해야 하고,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② 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근무연수평정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일 현재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 12. 26., 2026. 6. 30.>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직종이 다른 공무원 근무연수 상호 간 또는 공무원 근무연수와 민간 근무연수 상호 간의 상당계급 및 근무연수환산율, 근무연수기간의 계산 등 근무연수평정 점수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전문관은 1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전문관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하여 전문 분야를 구분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전문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6. 6. 30.>

1.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가 95점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5점 이상일 것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개정 2026. 6. 30.>

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⑥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3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신설 2026. 6.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6. 6. 30.>

부칙 <제27787호,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2017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에 대한 전직 제한 기간은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4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3년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 연구관ㆍ지도관 ”을 “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4급 이상 공무원 ”을 “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연구관ㆍ지도관 ” 을 “ 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으로 한다.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을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를 “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 ”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 전문관 ”을 “ 전문직위 전문관 ”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 전문관 ”을 “ 전문직위 전문관 ”으로 한다.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을 “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 ”을 “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 ”으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를 “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 우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 전문 분야 ”를 “ 전문 업무 분야 ”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 전문 분야별 ”을 “ 전문 업무 분야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전문 분야 ”를 “ 전문 업무 분야 ”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 전문관 ”을 각각 “ 전문직위 전문관 ”으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36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922호,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직공무원의 직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전문직군 행정전문직렬 운수직류	전문직군 행정전문직렬 일반행정직류
전문직군 공업전문직렬 야금직류	전문직군 공업전문직렬 금속직류
전문직군 농업전문직렬 잠업직류	전문직군 농업전문직렬 일반농업직류
전문직군 농업전문직렬 농화학직류	전문직군 농업전문직렬 일반농업직류
전문직군 해양수산전문직렬 수산제조직류	전문직군 해양수산전문직렬 일반수산직류
전문직군 해양수산전문직렬 수산증식직류	전문직군 해양수산전문직렬 일반수산직류
전문직군 해양수산전문직렬 수산물검사직류	전문직군 해양수산전문직렬 일반수산직류
전문직군 약무전문직렬 약제직류	전문직군 약무전문직렬 약무직류
전문직군 전산전문직렬 정보관리직류	전문직군 전산전문직렬 데이터직류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150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및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3년 7월 30일 이전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제

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55호,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38호,2025. 7. 7.>(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 제35조의4 "를 " 제35조의5 "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36489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및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전문관에 대하여 2027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 전문직공무원 "을 " 수석전문관ㆍ전문관 "으로, " 지도사 "를 " 지도사ㆍ부전문관 "으로 한다.

②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전보를 "을 " 전보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7급 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직을 "로 한다.

③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 전문직공무원 ” 을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ㆍ전문관 ” 으로 한다.

제12조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 을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부전문관 ” 으로 한다.

④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 말한다)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 ” 을 “ 말한다)ㆍ연구사ㆍ지도사ㆍ수석전문관ㆍ전문관 및 부전문관 ” 으로 한다.

⑤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전문관

부칙 <제36728호,2026. 9. 29.>(「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1] <개정 2026. 9. 29.>

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수석전문관	전문관	부전문관
전문	공업전문	일반기계	수석전문관	공업 전문관	공업 부전문관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농업전문	일반농업		농업 전문관	농업 부전문관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임업전문	산림조경		임업 전문관	임업 부전문관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의전문	수의		수의 전문관	수의 부전문관
	해양수산전문	일반해양		해양수산 전문관	해양수산 부전문관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해양교통시설			
	기상전문	기상		기상 전문관	기상 부전문관
		지진			
	보건전문	보건		보건 전문관	보건 부전문관
		방역			

의료기술전문	의료기술	의료기술 전문관	의료기술 부전문관
식품위생전문	식품위생	식품위생 전문관	식품위생 부전문관
의무전문	일반의무	의무 전문관	-
	치무		
약무전문	약무	약무 전문관	약무 부전문관
간호전문	간호	간호 전문관	간호 부전문관
환경전문	일반환경	환경 전문관	환경 부전문관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전문	일반항공	항공 전문관	항공 부전문관
	조종		
	정비		
	관제		
시설전문	도시계획	시설 전문관	시설 부전문관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전문	방재안전	방재안전 전문관	방재안전 부전문관
전산전문	전산개발	전산 전문관	전산 부전문관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방송통신전문	통신사	방송통신 전문관	방송통신 부전문관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방송기술		
방송무대전문	방송무대기술	방송무대 전문관	방송무대 부전문관
	방송제작		

교정전문	교정		교정 전문관	교정 부전문관
보호전문	보호		보호 전문관	보호 부전문관
형사법무전문	형사법무		형사법무 전문관	형사법무 부전문관
출입국관리전문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전문관	출입국관리 부전문관
철도경찰전문	철도경찰		철도경찰 전문관	철도경찰 부전문관
행정전문	일반행정		행정 전문관	행정 부전문관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직업상담전문	직업상담			직업상담 부전문관
세무전문	세무			세무 부전문관
관세전문	관세			관세 부전문관
사회복지전문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문관	사회복지 부전문관
통계전문	통계		통계 전문관	통계 부전문관
사서전문	사서		사서 전문관	사서 부전문관
감사전문	감사		감사 전문관	감사 부전문관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2] <개정 2026. 6. 30.>

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계급	수석전문관	전문관	부전문관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박사	4년	-	-
	석사	8년	4년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직무대리규정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5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 - 201 - 830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직무대리 ” 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 기관장 ” 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 중앙행정기관등 ” 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 “ 부기관장 ” 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 “ 사고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 6. 7.>]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1. 6. 7.>]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ㆍ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본부장ㆍ단장ㆍ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ㆍ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기관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제3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무대리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말한다)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2. 12. 27.>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을 말한다)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제2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된 공무원을 심사 예정 직위의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 12. 27.>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제2호 후단에 따라 통보된 직무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⑧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위임규정)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부칙 <제19736호,2006. 11.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대리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는 이 영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본다.

부칙 <제22956호,2011.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12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각각 " 인사혁신처장 " 으로 한다.

<23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8호,2015. 9. 25.>(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155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직무대리규정 [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3. 직무대리 기간:

「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직무분석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044 - 201 - 8334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의 직위
2.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3. "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1.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
2.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3. 다른 법령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로서 소속 장관이 직접 직무분석을 하기 곤란한 직위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①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한다.

②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기관 또는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제8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직무등급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직무 내용이나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 한다)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 또는 부령(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말한다. 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령·예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직제 제·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른 별도정원 협의 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의 결과를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2. 30.>
[본조신설 2014. 11. 19.]

부칙 <제19520호,2006. 6. 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위원회가 이 영의 시행 전에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분석은 이 영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14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등급 배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직무분석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배정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08호,2008. 12. 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17호,2009. 9. 8.>(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 ”을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소속장관 ”을 “ 소속 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 소속장관 ”을 각각 “ 소속 장관 ”으로 한다.

부칙 <제24425호,2013. 3. 2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 ”으로 한다.

<12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6호,2014. 1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36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3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58>부터 <176>까지 생략

인사법령

제 작 자 : 김성수
제작일자 : 2026. 10.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